



한화 개인용 자동차보험약관

한화 개인용 자동차보험약관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24시간 사고접수, 계약관련 문의

고객상담센터 1566-8000



공정거래위원회
CCM 인증차량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차량

모집철서확립 및 신고센터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모집철서 위반행위 신고센터_ 전화 :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 www.fss.or.kr

www.hwgeneralins.com



내일을 향한 금융
한화손해보험

본 약관은

자동차보험의 주요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도입부와
보통약관, 특별약관 전문으로 구성된 본문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입부의 내용은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을 요약, 정리한 것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본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화 개인용 자동차보험약관



내일을 향한 금융

한화손해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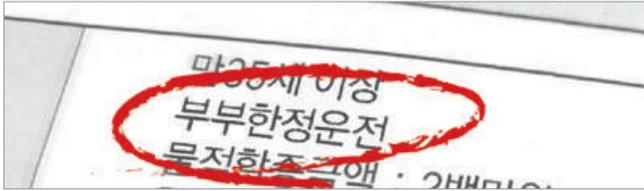
한화 개인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 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보험 가입 시
운전 가능자 범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가입하셨나요?



운전자 연령/범위 제한 특약은 사고 시
보장을 받게 될 대상을 한정하고
고객님의 자동차보험료를 구성하는데 있어
큰 차이가 날 수 있는 요소인 만큼 증권을 받으시면
반드시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보험증권에서 운전 가능 범위를 확인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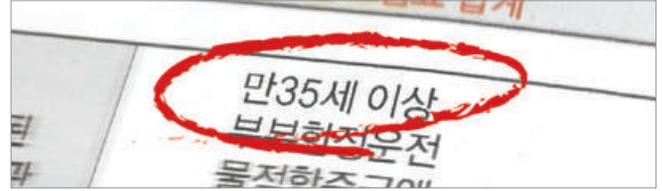


○ 운전자범위제한 특약별 운전 가능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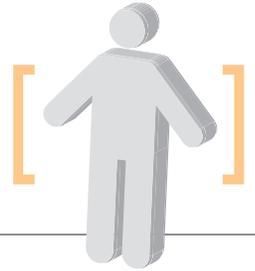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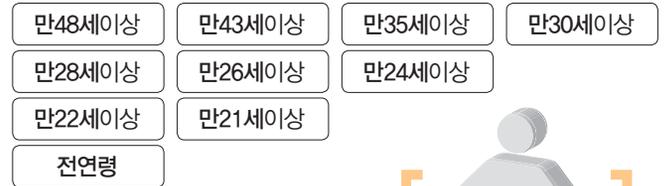
	본인 (기명피보험자)	배우자	부모/자녀 며느리/사위	배우자 부모	형제/ 자매	지정 1인
기명1인	○	×	×	×	×	×
기명1인+1인	○	×	×	×	×	○
부부	○	○	×	×	×	×
부부+1인	○	○	×	×	×	○
가족	○	○	○	○	×	×
가족+1인	○	○	○	○	×	○
가족+형제자매	○	○	○	○	○	×
누구나	○	○	○	○	○	○

※ 운전가능자 이외의 사람이 운전할 경우, 대인배상 I 을 제외한 나머지 담보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 증권에서 운전 가능 연령을 확인해 주세요.



○ 당사 판매 운전자연령한정특약



※ 운전 가능 연령이 아닌 사람이 운전할 경우,
대인배상 I 을 제외한 나머지 담보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운전가능자 또는 운전가능연령이 아닌 사람이 운전할 경우

대인배상 I 을 제외한 나머지 담보는
보상받을 수 없음을 꼭 명심하세요!



자동차보험료는

과거 계약 및 사고자료의 통계를 바탕으로 하여 산출된 기본보험료에 개별 가입 피보험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아래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기본보험료 × 특약요율 × 가입자특성요율(보험가입경력요율+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 특별요율 ×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등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내용

1.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6
2.보험 기간 중 유의사항	7
3.사고 발생 시 유의사항	8
4.보험 만기 시 유의사항	9

약관의 주요 내용 미리보기

1.자동차보험 주요 보장종목	10
- 상대방이 상해를 입은 경우 (대인배상 I, II)	10
- 상대방 차량/재물이 파손된 경우 (대물배상)	11
- 고객님이 상해를 입은 경우 (자기신체사고)	12
- 고객님의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자기차량손해)	13
- 고객님의 무보험 차량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 (무보험차 손해)	14
2.이러한 경우 보상처리가 되지 않아요	15
3.긴급출동서비스 안내	16

알아두면 유용한 주요 특별약관

자주 묻는 질문 (FAQ)

보통약관

특별약관

별표

별규해설집

여기서 잠깐

자동차보험료를 줄이려면?

운전자 연령이나 범위를 한정하거나 내 차에 장착되어 있는 ABS, 오토, 에어백 등 부속 등이 있는 경우라면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통법규 준수를 통한 안전운행만이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과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의 할인은 물론 보험료 절약 이상의 금액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청약서, 상품설명서, 보험증권상 다음의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1.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범위에 대해 확인하셨나요?
2. 계약관련 서류에 자필서명을 하셨나요?
3. 차량모델, 차량번호, 추가 장착 부속품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나요?
4. 고객님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이 정확하게 기재 되어 있나요?
5. 보상받을 수 있는 사고와 보상 받을 수 없는 사고에 대해 확인 하셨나요?
6. 주요담보 별 가입금액에 대해서 확인하셨나요?

고객님께서 알고 계신 내용과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
 담당 영업가족 또는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1566-8000)



[보험 기간 중 유의사항]

계약 관련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연락 주세요!

- **주소가 변경된 경우**
자동차보험 주요 우편물의 정확한 전달을 위해 변경된 주소지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 **기존 자동차를 팔고 새차를 구입하는 경우**
새로 구입한 자동차와 기존 자동차를 대체하여야 사고 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운전 가능 범위 이외의 분이 운전하는 경우**
추가로 운전하시려는 분의 연령/기명피보험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운전자한정운전특약을 변경하셔야 합니다.
- **추가로 장착한 부속품이 있는 경우**
블랙박스, 네비게이션 등 추가 장착한 부속품을 보상 받기 위해서는 보험 회사에 별도 통지하여 가입하여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유의사항]

사고 발생 시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 ① 즉시 정차하여 사고내용 확인 후 부상자를 구호해 주세요.
(필요 시 응급조치 후 119 신고)
- ② 사고정황 증거를 확보해 주세요.
(사고현장 촬영, 사고차량 위치 표시, 목격자 확보 등)
- ③ 2차사고 예방,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이동해 주세요.
- ④ 보험회사 및 경찰서에 신고해 주세요.

● 사고처리 절차



24시간 사고접수, 고객센터 1566-8000

[보험 만기 시 유의사항]

보험 만기 전 2회에 걸쳐 계약종료 예고 안내를 드립니다.

구분	안내시기	안내방법	안내대상
1차안내	만료일 75일~30일전	(일반)우편발송	기명피보험자
2차안내	만료일 30일~10일전	(일반)우편발송	기명피보험자

※ 보험기간이 1개월 미만의 단기계약은 만기안내장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 E-Mail 사용약정 특약에 가입하신 경우 당사에 고지한 전자우편으로 만기안내장이 발송 됩니다.

의무보험 [대인배상 I + 대물배상(2천만원)] 은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사업용자동차는 대인배상(1억 이상)까지 필수가입]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이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미가입 기간	자가용자동차		사업용자동차			이륜자동차	
	대인 I	대물	대인 I	대인 II	대물	대인 I	대물
10일 이내	1만원	5천원	3만원	3만원	5천원	6천원	3천원
10일 초과 1일 당	4천원	2천원	8천원	8천원	2천원	1천2백원	6백원
최고한도	60만원	30만원	100만원	100만원	30만원	20만원	10만원

상대방이 상해를 입은 경우 **대인배상 I, II**

보험에 가입한 차량의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고객님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대인배상 I 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의무보험으로써 자동차 보유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보장내용	지급한도
사망	사망자 1인당 실제손해액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지급	최저 2천만원 ~ 최대 1억5천만원
부상	부상등급별 실제손해액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지급	50만원(14급) ~ 3천만원(1급)
후유장애	장애등급별 실제손해액 (위자료, 상실수익액, 간호비)지급	1천만원(14급) ~ 1억5천만원(1급)

대인배상 II 는 계약체결 시 정한 가입금액을 한도로 「대인배상 I」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 보장 내용은 대인배상 I 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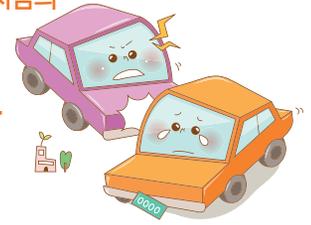
Tip

사망/중과실/중상해 사고로 인한 법률 비용까지 보장 받으세요!

「형사합의금/변호사 선임비용/벌금비용 지원 특약」에 가입하시면 해당 사고시 발생하는 형사적 책임과 관련된 법률비용까지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차량이나 재물이 파손된 경우 **대물배상**

보험에 가입한 차량의 사고로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고객님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대물배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의무보험(최소 가입금액 2천만원)으로써 자동차 보유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보장내용	지급한도
대물배상	수리비용, 교환가액, 렌트비(대차료), 자동차시세하락손해 등 보상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가입금액

대물배상 가입금액은 「2/3/5/7천만원, 1/2/3/5/10억원」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Tip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차량과의 사고에 대비하세요!

「외제차 충돌시 확대보상 특약」에 가입하거나 「대물배상 가입금액 한도」를 증액 하시면 고액 수리비 지급이 예상되는 차량과의 사고 시 보상금액 한도 초과 걱정 없이 안심하시고 보상처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외제차 충돌시 확대보상 특약은 대물배상 가입금액 1억원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고객님이 상해를 입은 경우 자기신체사고

보험에 가입한 차량의 사고로 고객님 또는 고객님의 가족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자기신체사고는 사고유형에 따라 보장내용이 달라지며, 보험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고객님의 신체에 발생한 상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의학적 소견(진단서 등)이 있는 경우에 계약체결 시 정한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장내용	지급한도
 차대차사고 (공제액 존재)	부상/후유장애는 급수별 가입금액 한도, 사망은 가입금액 한도 내 실제손해액에서 공제액 차감 후 지급	1인당 한도 적용
 단독사고 (공제액 없음)	부상:상해등급(1~14급)별 한도 내 실제 치료비 사망: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입금액 정액 지급 장애:장애등급(1~14급)별 가입금액 정액 지급	

- 주1) 공제액 : 상대차량 대인배상 등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 주2) 실제손해액 : 약관상 '대인배상 지급기준'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Tip

자기신체사고 부상 급수별 보장금액 한도가 너무 낮아 불안하십니까?

「자동차상해 특약」에 가입하시면 부상 급수별 한도가 아닌 대인배상 지급 기준에 따른 실제손해액(위자료+치료비)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 차량이 파손된 경우 자기차량손해

자동차 사고로 가입하신 자동차에 직접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자기차량손해(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 포함)는 다른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침수,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한 손해, 차량의 도난(부분도난 제외)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금 지급 고객님 차량에 생긴 직접 손해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차량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해 드립니다.

$$\text{차량에 발생한 직접손해액} - \text{고객님의 자기부담금} = \text{보험금}$$

※ 자기부담금: 자기차량손해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고객님이 부담하셔야 하는 금액 (최저~최고 한도내 에서 손해액의 20%를 부담)

● 자기부담금 산정예시 (물적할증기준금액 200만원 가입 시)

손해액	손해액의 20%	자기부담금 최저 ~ 최고 한도	고객님 자기부담금
200만원	40만원	20만원 ~ 50만원	40만원
400만원	80만원		50만원(최고한도)

* 자기부담금 최저값은 물적할증기준금액에 따라 변경됩니다.
(물적할증기준금액의 10%=자기부담금 최저한도)

Tip

'자기차량손해 확대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해 보세요.

고객님 차량이 파손되어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수리기간 동안의 교통비, 전손 시 새로 구입하는 차량의 등록비용, 원격지 사고 발생 시 차량 운반비용을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이 무보험 차량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고객님께서 뺑소니, 무보험자동차 등에 의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차량 탑승 여부를
불문하고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
신체사고 담보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무보험자동차란?

피보험자동차가 아니거나 고객님이 소유하지 않은 자동차이면서 다음 중
하나의 항목에 해당하면 무보험자동차로 봅니다.

- ① 대인배상이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 ② 고객님이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담보 가입금액보다 낮은 대인배상Ⅱ
(공제계약 포함)에 가입한 자동차
- ③ 뺑소니 자동차

Tip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하시면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자동가입 됩니다.

기명피보험자(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와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가 다른자동차를 운전 중 사고 발생 시 대인Ⅱ, 대물, 자손 담보에 대하여
보통약관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 ※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는 운전가능 범위/운전가능 연령 범위내 포함되어 있어야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서 보상 가능합니다.
- ※ 운전 가능한 다른자동차의 범위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주요 면책사항에 대해서 꼭 확인 바랍니다.

1.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경우
2.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운전가능 연령/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
3.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승객을 태우거나,
물건을 실어다 주는 행위를 하던 중 사고가 난 경우
(유상운송 면책)
4. 자동차를 시험용으로 운행하거나
경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담보별 보상하지 않는 손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의 해당 부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출동서비스 특별약관

(16개 서비스 항목)



보험기간 중 총 5회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를 모두 이용한 경우에는 추가로 긴급출동서비스 특별약관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

◎ 주요 서비스 내용

서비스 종류	내용
긴급견인	자동차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요청하는 곳 까지 10km한도로 견인(10km 초과 시 고객님 실비 부담)
비상급유	연료 소진으로 운행 불가 시 1일1회, 3리터 한도로 급유
배터리 충전	배터리 방전으로 시동이 불가능한 경우 배터리 충전
타이어 펑크수리 및 교체서비스	지면에 닿는 타이어 트레드부분(접지면)이 날카로운 것에 의해 구멍이 뚫려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펑크 수리 서비스 제공 (타이어펑크 1개당 서비스 1회 차감) 타이어 펑크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예비 타이어로 교체 서비스 제공
잠금장치 해제	자동차 열쇠를 분실하였거나 실내에 두고 차문을 잠근 경우 잠금장치 해제 서비스 제공
긴급구난 서비스	도로 이탈 또는 장애물로 인하여 자력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서비스 제공

- ※ 보험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서비스 횟수를 총 3회 제공합니다.
- ※ 약관에서 정한 서비스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거나 고객님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 각 서비스별 세부사항은 특별약관 본문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ip

- 1) 더 확장된 서비스를 원하신다면 「긴급출동 플러스 특별약관」 「긴급출동 플러스 특별약관」에 가입하시면 긴급견인서비스 30km, 비상급유 5리터, 차량진단서비스 등 보다 확장된 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 견인거리 확장을 원하신다면 「긴급견인 서비스 확대 추가 특별약관」 「긴급출동서비스 특별약관」 및 「긴급출동 플러스 특별약관」에 「긴급견인 서비스 확대 추가 특별약관」을 추가로 가입하시면 긴급견인서비스를 50km 한도로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주요 특별약관



1 보험료를 할인
받으실 수 있는
특별약관

2 운전가능자를
확대할 수 있는
특별약관

3 자기신체사고
확대 보상
특별약관

4 차량손해
확대 보상
특별약관

특별약관은 위와 같이
고객 니즈에 맞춰
크게 4가지로 구분합니다.



1. 보험료를 할인 받으실 수 있는 특별약관

■ ECO 마일리지 특별약관

① ECO 마일리지 할인형 특별약관

보험 가입 전 연평균 주행거리가 10,000km이하 이면 가입 시 우선 할인 받고, 만기 시 실제 주행거리를 정산하여 추가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② ECO 마일리지 특별약관 (후정산)

보험 만기 시점 실제 연간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즉시 할인받고
정산시 또 받고!

최대 40%

두 번 할인받는
자동차보험

ECO
마일리지 **할인형** 특별약관

■ 블랙박스 특별약관

사고발생 시 고객님의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블랙박스의 영상을 보험회사에 송부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보험료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블랙박스 특약에 가입하고 사고영상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이미 할인 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셔야 합니다.

■ 친환경 부품사용 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담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고객님의 차량을 수리 하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인증하는 중고부품 재생 업체의 부품을 사용하면 해당 새 부품 가격의 20%를 고객님의께 지급하여 드립니다.

■ 실버 안전운전자 우대 특별약관

만65세 이상 기명피보험자가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하여 드립니다.



■ 나눔 특별약관

기명피보험자가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1~3급)」등 특약에서 정하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하여 드립니다.

2. 운전가능자를 확대할 수 있는 특별약관

■ 명절임시운전 특별약관

고객님(기명피보험자)의 운전 승낙을 받은 누구나 설(구정) 또는 추석 당일 전후 3일간 고객님의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별약관

대리운전 기사가 고객님의 차량을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대리운전기사를 고객님의 차량의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담보의 피보험자로 보아 보상하여 드립니다.

■ 단기 운전자확대 특별약관

고객님이 가입한 운전가능범위 특약 이외의 사람들에게 운전 승낙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단기운전확대 특약에 가입하시면 지정한 기간동안 고객님의 운전 승낙을 한 사람을 피보험자로 보아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자기신체사고 확대 보상 특별약관

■ 간병비 지원 특별약관

고객님께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특별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간병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주말 사망 및 후유장애 확대보상 특별약관

고객님께서 피보험자동차를 주말 및 휴일에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자기신체사고 사망/후유장애 가입금액을 2배로 확대 하여 보상해 드립니다.



■ 주말 사망확대보상 특별약관

고객님께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 중 주말 및 휴일에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특별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 대중교통상해 특별약관

고객님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로 인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특별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리프레시 지원금 특별약관

고객님께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 중 사고로 인하여 자배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 7급 이상의 상해를 입었을 경우 「건강회복지원금」, 「물리치료지원금」, 「휘트니스 지원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 우리아이 스쿨존 안심 특별약관

고객님(기명피보험자)의 만14세 이하의 자녀가 스쿨존 보행중 다른 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사망위로금」, 「후유장애위로금」, 「학습능력회복지원금」, 「후유증검사지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 우리아이 성장판 안심 특별약관

피보험자동차 또는 다른자동차의 운행 중 사고로 기명피보험자의 만 12세 이하 자녀가 성장판과 관련된 골절이 발생되었을 경우 자배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 및 상해내용의 구분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선택진료비 · 상급병실료 차액 보상 특별약관

고객님께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 중 생긴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에 대해 특별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성형 및 치아보철 지원금 특별약관

고객님께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 중 생긴 사고로 상해를 입어 「안면부」, 「상지」, 「하지」부분에 성형수술 / 치아보철을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특별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비용을 보상해 드립니다.

■ 가족사랑 특별약관

고객님께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 중 생긴 사고로 상해를 입은 때 「사망위로금」, 「건강진단비용 지원금」, 「요양시설 이용지원금」을 특별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 자녀사랑 특별약관

고객님(기명피보험자)께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만18세 이하의 자녀가 상해를 입은 경우 「자녀성형지원금」, 「자녀 치아보철금」, 「자녀 간병지원금」을 보상해 드리며,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상해를 입어 중증후유장애가 남는 경우 또는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특별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4. 차량손해 확대 보상 특별약관

■ 자기차량손해 초과수리비 보상 특별약관

고객님 차량이 보험사고로 인하여 파손되어 사고 직전의 상태로 되돌리는데 소요되는 수리비가 사고발생 시점의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험가액의 150% 한도 내에서 초과되는 수리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담보 특별약관

고객님이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사고로 다른 자동차가 파손되었을 경우 피보험자동차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른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에 대해 보상하여 드립니다.

■ 차량 신가보상 특별약관

고객님 차량이 신차인 경우 보험기간 중 전부 손해가 발생하거나 수리비용이 보험가입금액의 70%이상으로 고객님의께서 차량 수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신차가액으로 보험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 레포츠용품 손해담보 특별약관

고객님 차량이 보험사고로 인하여 파손되어 200만원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차량에 적재되어 있는 레포츠 용품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100만원을 한도로 보상해 드립니다.



■ 자기차량손해 확대보상 특별약관

고객님 차량이 보험사고로 인해 파손되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대체교통비용」, 「전부손해 시 대체 차량의 등록비용」, 「원격지 사고 시 차량운반비용」을 특별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운전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운전 중 사고가 나는 경우 보상받지 못하나요?

운전자 연령/범위 특약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최소한의 피해자 구제 차원에서 대인배상 I 담보에서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2)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에서 가족의 범위에 「형제·자매」도 포함되나요?

자동차보험에서 가족의 범위는 기명피보험자를 기준으로 [배우자, 부모, 양부모, 계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 까지 한정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나 자동차보험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약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중 사고 시 보상처리 받을 수 있나요?

구분	대인 배상 I	대인 배상 II	대물 배상	자기신체 사고	자기차량 손해	무보험차 상해
음주	○	○	○	○	X	○
무면허	○	X	○	○	X	○

* 단, 대인배상은 300만원, 대물배상은 1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고객님께서 보험회사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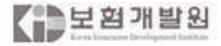
* 대물배상은 의무보험 가입년도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4) 보험증권상 기재된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로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적은 없는데, 보험 가입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관공서 및 법인체 등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한 기간 외국에서의 보험가입기간, 다른 자동차보험계약에서 「보험가입경력 추가 인정자(종(從) 피보험자)」로 등록되었던 이력을 제출하시면 해당 기간의 보험 가입경력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보험 가입 시 차량가액은 어떻게 산정 되나요?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산정하게 됩니다. 기준가액표상에 해당 차량이 없는 경우 시중거래가격 등을 참조하여 차량가액을 결정합니다.



* 보험사고 시 차량가액은 보험가입시점부터 사고시점까지 감가율을 적용한 최근 차량기준가액표상 가액을 적용하므로 가입시점 차량가액과 사고시점 차량가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6) 보험기간 중 자동차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고객님이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임의담보에 대해서 해지가 가능하며, 지배법에서 가입이 강제화 된 의무담보에 대해서는 약관에 정해진 「의무보험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지가 가능합니다.

* 기존 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된 담보에 대해서는 해지 환급보험료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7) 자동차보험 의무보험 가입대상 차량입니다. 장기간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을 계획인데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하나요?

자동차를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업무 관할 관청에 사유를 신고 후 승인을 받아 등록증과 번호판을 관청에 영치하면 보험 가입이 면제 될 수 있습니다.

* 지배법에서 정한 보험 가입 면제 사유

- ① 해외근무 또는 유학 등의 사유로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 ②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운전이 불가능 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 ③ 현역(상근 예비역 제외)으로 임명하거나 교도소/구치소에 수감되는 경우



8) 동일증권이란 무엇인가요?

2대 이상의 차량(개인승용 전차종, 개인소유 업무용 소형차종)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차량들의 보험종기를 일치시켜 동일한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것으로서, 보험 만기일 관리 및 사고 발생 시 개별 할인할증 등급 산정 측면에서 유리한 제도입니다.

9) 보험기간 1년 미만(단기계약)으로 가입했을 때, 동일한 조건의 1년 보험료를 가입일수로 계산한 것보다 비싸게 나오는데, 보험료 산정 방식이 다른가요?

1년 미만의 단기계약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 요율서 상에서 정한 「단기요율」표에 의해 보험료를 계산하여, 1년 정상계약의 가입일수에 따른 일할계산방법의 보험료 보다 보험료가 높게 책정됩니다.

보험기간	7일까지	15일까지	1월까지	2월까지	3월까지	4월까지	5월까지
단기요율	6%	10%	15%	20%	30%	40%	50%
보험기간	6월까지	7월까지	8월까지	9월까지	10월까지	11월까지	12월까지
단기요율	60%	70%	80%	85%	90%	95%	100%

※ 예시: 보험가입기간 : 70일 / 보험기간 1년 적용보험료= 100만원

일할계산: 100만원(70/365일) = 약19만원

단기요율: 100만원X30%(3월까지) = 30만원

10) 운전가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차량의 운전을 맡기고 싶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있나요?

특정기간 동안 운전가능 범위 외의 사람에게 운전을 맡기길 원하시면 계약담당자 또는 고객센터로 연락하시어 「단기 운전자확대 특약」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다만 운전범위 확대에 따른 추가보험료가 발생합니다.

한화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한화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1편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제1조(용어의 정의)	33
제2조(자동차보험의 구성)	36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제1장 배상책임

제1절 대인배상 I	38
제3조(보상하는 손해)	38
제4조(피보험자)	38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38
제2절 대인배상 II와 대물배상	39
제6조(보상하는 손해)	39
제7조(피보험자)	39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39
제3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41
제9조(피보험자 개별적용)	41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41
제11조(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관련 사고부담금)	42

제2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제1절 자기신체사고	42
제12조(보상하는 손해)	42
제13조(피보험자)	43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43
제15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43
제16조(지급보험금의 계산)	43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44
제17조(보상하는 손해)	44
제18조(피보험자)	45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45
제2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46

제3절 자기차량손해	46
제21조(보상하는 손해)	46
제22조(피보험자)	47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47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48

제3편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제1장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제25조(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50
제26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50
제27조(제출 서류)	51
제28조(가지급금의 지급)	52

제2장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제29조(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53
제30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53
제31조(제출 서류)	54
제32조(가지급금의 지급)	54

제3장 보험금의 분담 등

제33조(보험금의 분담)	55
제34조(보험회사의 대위)	55
제35조(보험회사의 불성실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56
제36조(합의 등의 협조·대행)	57
제37조(공탁금의 대출)	57

제4편 일반사항

제1장 보험계약의 성립

제38조(보험계약의 성립)	58
제39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58
제40조(보험안내자료의 효력)	59
제41조(청약 철회)	59
제42조(보험기간)	60
제43조(사고발생지역)	60

제1편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제1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지급금**: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회사 가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이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전에 그 비용의 일부를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단기요율¹⁾**: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말합니다.
3. **마약 또는 약물 등**: 「도로교통법」 제45조에서 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²⁾** 그 밖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4. **무면허운전(조종)**: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운전(조종)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운전(조종)을 말하며, 운전(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황이거나 운전(조종)이 금지된 상황에서 운전(조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5. **무보험자동차³⁾**: 피보험자동차가 아니면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하며,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를 제외합니다.
 - 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⁴⁾**이 없는 자동차
 - 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 다.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 다만,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2대 이상이고 각각의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서 보상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는 그 각각의 자동차라.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

- 1) **요율(料率)** 보험료 계산 시 가입조건에 따라 적용되는 보험료 수준 등을 말합니다.
- 2) **향정신성의약품**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 3) **무보험자동차 예시**
 - 가. 의무보험만 가입한 자동차
 - 나. 운전자 연령한정 특약 등 위배시
 - 다. 손해액이 대인배상Ⅱ 가입금액을 초과시
 - 라. 뺑소니에 의한 사고시
- 4) **공제계약** 공제조합이 각자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출자금을 자본으로 조합원의 자동차사고 시에 공제금을 지급하여 주는 공제사업에 의한 계약을 말합니다.
 - 예) 버스공제, 전세버스공제, 택시공제, 개인택시공제, 화물공제조합 등

제2장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60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60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61
제46조(사고발생 시 의무)	61
제3장 보험계약의 변동 및 보험료의 환급	62
제47조(보험계약 내용의 변경)	62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62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	63
제50조(보험계약의 취소)	64
제51조(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64
제52조(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해제)	64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65
제54조(보험료의 환급 등)	66
제4장 그 밖의 사항	67
제55조(약관의 해석)	67
제56조(보험회사의 개인정보이용 및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67
제57조(피보험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	68
제58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보험금 등의 지급보장)	68
제59조(보험사기행위 금지)	68
제60조(분쟁의 조정)	68
제61조(관할법원)	68
제62조(준용규정)	68

우 그 자동차

6.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

- 가. 부분품 :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자동차가 공장에서 출고될 때 원형 그대로 부착되어 자동차의 조성부분이 되는 재료를 말합니다.
- 나. 부속품 : 자동차에 정착^{(*)1} 또는 장비^{(*)2}되어 있는 물품을 말하며, 자동차 실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자동차에 고정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이나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3}를 포함합니다. 다만 다음의 물품을 제외합니다.
 - (1) 연료, 보디커버, 세차용품
 - (2) 법령에 의해 자동차에 정착^{(*)1}하거나 장비^{(*)2}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물건
 - (3) 통상 장식품으로 보는 물건
 - (4) 부속기계장치
- 다. 부속기계장치 : 의료방역차, 검사측정차, 전원차, 방송중계차 등 자동차 등록종상 그 용도가 특정한 자동차에 정착되거나 장비되어 있는 정밀기계장치를 말합니다.

(*)1 정착 :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2 장비 : 자동차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갖추어 두고 있는 상태 또는 법령에 따라 자동차에 갖추어 두고 있는 상태
 (*)3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 :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지급을 위해 고속도로 요금 소와 통행료 등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는 승수신장치(예 : 하이패스 단말기)

- 7. 운전(조종)^{(*)5} : 「도로교통법」상 도로(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 운전금지)·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항·제148조(벌칙) 및 제148조의2(벌칙)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에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8. 운행^{(*)6} :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 9. 음주운전(조종) : 「도로교통법」에 정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조종)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10. 의무보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 11. 자동차보유자 :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3호)
- 12. 자동차 취급업자 : 자동차정비업, 대리운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6})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을 말합니다.

5) 운전과 운행의 차이
 예) 차도리씨는 서울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에 도착 후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운전"이란 차도리씨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차량을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한 것을 말하고, "운행"이란 운전 종료 후 주차가 된 상황 및 이후 관리 상태까지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운행은 운전보다 넓은 개념에 해당합니다.
 6) 피용자(被傭者)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사업이나 사업장에 노동력 등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13. 피보험자 :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구체적인 피보험자의 범위는 각각의 보장종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가. 기명피보험자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자 중에서 보험계약자가 지정하여 보험증권의 기명피보험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 나. 친족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7}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 다. 승낙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 라. 사용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8} 또는 계약에 따라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합니다.
 - 마. 운전피보험자 : 다른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를 말함)을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전보조자^{(*)9})를 포함)을 말합니다.
- 14. 피보험자동차 :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말합니다.
- 15.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 가. 피보험자의 부모 : 피보험자의 부모, 양부모를 말합니다.
 - 나. 피보험자의 배우자 :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 다. 피보험자의 자녀 :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10}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
- 16. 휴대품 및 소지품^{(*)11}
 - 가. 휴대품 : 통상적으로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만년필, 소모품, 손목시계, 귀금속, 장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합니다.
 - 나. 소지품 : 휴대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정착^{(*)11}되어 있지 않고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2}

(*)1 정착 :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2 예 : 휴대전화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음성재생기(CD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 카세트테이프 플레이어 등),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채 등

7)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親族)
 기명피보험자와 동일가옥에 살거나, 또는 민법 제777조(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배우자)에 의해 생계를 같이하거나 부양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8) 사용자(使用者) 근로자(피용자)에 대하여 지휘명령을 하는 자로서 사업주, 경영담당자 등을 말합니다.
 9) 운전보조자 업무로서 운전자의 운전행위에 참여하여 그 지배 하에서 운전행위를 도와주는 자로서, 통상 조수나 차장 등이 이에 속합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선의의 보조행위(예 : 길 가던 행인의 일시적 보조행위 등)는 이에 속하지 않습니다.
 10) 사실혼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실제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며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단순 동거와는 구별됩니다.
 11) 휴대품과 소지품의 차이
 휴대품은 사고당시 휴대여부가 불명확하여 실제로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소지품은 파손에 대한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지품의 경우라도 도난, 분실에 대하여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예) 사고발생시 지갑 속에 있던 현금은 보상받을 수 없지만, 파손된 휴대폰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17. 보험가액 :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보험계약을 맺었을 때에는 사고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위 차량기준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보험계약을 맺었을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18. 물체 : 구체적인 형체를 지니고 있어 충돌이나 접촉에 의해 자동차 외부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엔진내부나 연료탱크 등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경우 물체로 보지 않습니다
19. 침수 :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하며,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습니다.
20. 전부손해 :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21. 정부보장사업 :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뺑소니차),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운행하던 자동차(무보험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
22. 경미한 손상 :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을 말합니다.

제2조(자동차보험의 구성)

- ①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손해」, 「자기차량손해」의 6가지 보장종목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② 보험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합니다.
 1. 의무보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해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자동차보유자는 「대인배상 I」과 「대물배상」(「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보상한도¹²⁾에 한함)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임의보험 : 의무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자는 의무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보장종목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③ 각 보장종목별 보상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배상책임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보장종목	보상하는 내용
가. 「대인배상 I」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에서 보상

1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장종목	보상하는 내용
나. 「대인배상 II」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 I」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
다.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2.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

보장종목	보상하는 내용
가.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상해 (*)를 입은 때에 보상
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상해 (*)를 입은 때에 보상
다.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

(*1)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④ 자동차보험료는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후 사용하는 '자동차보험 요율서'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예시>

$$\begin{matrix}
 \text{납입할 보험료} \\
 \times \\
 \text{특별요율} \\
 \times \\
 \text{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
 \times \\
 \text{사고건수별 특성요율}
 \end{matrix}
 =
 \begin{matrix}
 \text{기본보험료} \\
 \times \\
 \text{특약요율} \\
 \times \\
 \text{가입자특성요율 (보험가입경력요율 ±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end{matrix}$$

구분	내용
기본보험료	차량의 종류, 배기량, 용도, 보험가입금액,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기본적인 보험료
특약요율	운전자의 연령범위를 제한하는 특약, 가족으로 운전자를 한정하는 특약 등 가입시에 적용하는 요율
가입자특성요율	보험가입기간이나 법규위반경력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특별요율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실태가 같은 종류의 차량과 다른 경우 적용하는 요율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사고발생 실적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직전 3년간 사고유무 및 사고건수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 자동차보험료 계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 보험회사별로 일부 상이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제1장 배상책임

제1절 대인배상 I

제3조(보상하는 손해)

「대인배상 I」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4조(피보험자)

「대인배상 I」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다음에서 정하는 자 외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인배상 I」의 피보험자로 봅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친족피보험자
3. 승낙피보험자
4. 사용피보험자
5. 운전피보험자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¹³⁾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¹⁴⁾로 인한 손해는 「대인배상 I」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청구를 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다음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¹⁵⁾

- 13) 피보험자 고의로 손해발생시 피해자 구제를 위해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예) ① 피보험자 고의에 의한 사고로 보험회사는 손해배상금 미지급
②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자기부담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에 따라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
③ 피보험자의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지급
④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청구(3년 이내)
⑤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전액 지급
- 14) 고의(故意) 자기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생길 것을 알면서 그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고의로 인한 손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5) 예)



* 단, 손해배상금 지급 및 구상청구는 대인배상 I (책임)보험금 한도 금액 범위 내로 합니다.

제2절 대인배상 II와 대물배상

제6조(보상하는 손해)

- ① 「대인배상 II」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대인배상 I」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에 포함)를 보상합니다.
- ②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7조(피보험자)

「대인배상 II」와 「대물배상」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친족피보험자
3. 승낙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¹⁶⁾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4. 사용피보험자
5. 운전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인배상 II」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3.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¹⁷⁾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4.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5.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6.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임대차계약¹⁸⁾(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¹⁹⁾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6) 업무상 위탁
예)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정비를 위해 피보험자동차를 맡겨놓은 상태를 말합니다.
- 17) 사변(事變) 전쟁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나 경찰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어 무력을 사용하게 되는 난리 등을 말합니다.
폭동(暴動) 다수인이 집단 행동을 통해 사회의 안녕과 질서 등을 저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요(騷擾) 폭동과 유사한 행위이나 보다 소규모의 행위로서 소동, 시위를 말합니다.
- 18) 임대차계약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상대방에게 물건을 사용하게 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일정한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19) 임차인(賃借人) 임대차 계약에서 돈을 내고 물건을 빌려 쓰는 사람을 말합니다.

- 7. 피보험자가 제3자와 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²⁰⁾
- 8.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²¹⁾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한도에서는 보상합니다.
- 9.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 II」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2.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 3.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²²⁾

-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나 자녀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 2.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 3.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 4. 다른 사람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그 밖에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류나 휴대품에 생긴 손해
- 5. 탑승자와 통행인²³⁾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에 생긴 손해. 그러나 훼손된 소지품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 20) 피보험자가 제3자와 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
예) 피보험자인 차도리씨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한 승객에게 보험사고 발생 시 '일정한 금액'을 보상한다는 별도의 약정을 한 경우, 당사자간 개별 약정에 따른 '일정한 금액'에 대해서 보험회사는 지급책임이 없으며 자동차보험 약관에 의한 지급액만 부담합니다.
- 21) 명시적 승인은 내용이나 뜻을 분명하게 나타내어 해당 행위에 대해 승인하는 것을 말하고, 묵시적 승인은 직접적인 말 또는 행동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해당 행위에 대해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차도리씨(피보험자)는 무면허인 아들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해도 좋다고 직접적으로 허락하거나(명시적), 자동차 키관리 등을 소홀히 하여 아들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상태(묵시적)를 말합니다.
- 22) 예) 업무 중 등의 사고 시 "피용자"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만약, 해당 피용자가 입은 손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부분을 넘는 경우, 그 초과손해분에 한정하여 보상한다는 내용입니다.
- 23) 통행인(通行人) 보행인과 같은 의미로서 걸어다니는 사람을 말합니다.

- ④ 제1항 제2호와 관련해서 보험회사가 제9조(피보험자 개별적용) 제1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할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제3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제9조(피보험자 개별적용)²⁴⁾

- ① 이 장의 규정은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 제1호, 제6호, 제9호를 제외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정하는 보험금의 한도가 증액되지는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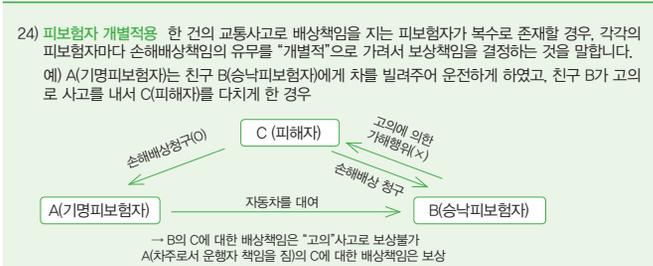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 ①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되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비용은 다음의 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1. 「대인배상 I」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 2.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지급 보험금	=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 ^(*) 에 따라 피보험자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 ²⁵⁾	+	비용	-	공제액
-------------------	---	---	---	----	---	-----

- ②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 판결 등^(*)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을 포함)을 제1항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봅니다.
- ③ 제1항의 '비용²⁶⁾'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25)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피보험자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소송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 금액이 법원에 의하여 결정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한 지급금액 대신 법원의 확정 판결 등에 따라 피보험자가 배상해야 할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지급합니다.
- 26) 비용 손해의 감소를 위해 타당하게 사용된 금액으로서 지급보험금 산출식에 의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비용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하여는 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에 드립니다.
예) 1. 사고발생 후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타당하게 지출된 비용
2. 사고의 과실여부를 증명해줄 블랙박스 영상 확보를 위해 타당하게 지출된 비용
3. 소송의 제기나 소모되는 비용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
2.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비용 또는 유익한 비용
3. 그 밖에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 ④ 제1항의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1. 「대인배상Ⅱ」: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Ⅰ」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2. 「대물배상」: 사고차량을 고칠 때에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부분품을 교체한 경우 교체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

(*1)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라 함은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결정, 중재판정 등을 말합니다.

제11조(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관련 사고부담금)

- ①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또는 「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1.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 1 사고당 「대인배상Ⅰ·Ⅱ」은 300만원, 「대물배상」은 100만원
 2.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 : 1 사고당 「대인배상Ⅰ」은 300만원, 「대물배상」은 100만원
- ②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이 사고부담금을 미납하였을 때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제1절 자기신체사고

제12조(보상하는 손해)

「자기신체사고」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1)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의 충돌
 - 나. 화재 또는 폭발
 -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1)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제13조(피보험자)

「자기신체사고」에서 피보험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7조(피보험자)의 「대인배상Ⅱ」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2. 제1호의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3.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합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5.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7.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다만,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15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부상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별표 5」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상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후유장애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남은 때에는 「별표 5」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2) 후유장애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16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자기신체사고」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자기신체사고」에서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사망, 부상, 후유장애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각각 계산합니다. 다만, '비용'은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²⁷⁾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text{지급보험금} = \text{실제손해액} + \text{비용} - \text{공제액}$$

가. '실제손해액'은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금액으로서 과실상계²⁸⁾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나. '비용'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2)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 (1)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대인배상 I (정부보장사업²⁹⁾ 포함) 및 「대인배상 II」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2)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다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 (3)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라. 다만,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 부상의 경우 실제 소요된 치료비(성형수술비 포함), 후유장애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을 각각 지급합니다.

2.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제17조(보상하는 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상해^(*)를 입은 때에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7) '비용'은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공제액'이 있는 경우 지급기준에 따라 '실제손해액'으로 산정하여 한도 내 지급하며, '공제액'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부상/후유장애에 대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금액을 한도내에서 지급합니다.(실제손해액 아닌) 따라서 실제 지출된 금액인 '비용'은 '공제액'이 있는 사고 시에만 지급됩니다.

28) 과실상계 사고발생시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확정할 경우 피해자의 과실 비율만큼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29) 정부보장사업(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정부에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1)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2) '배상의무자'라 함은 무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18조(피보험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피보험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이었던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2.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이었던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승낙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4. 제1호, 제2호, 제3호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5.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7.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다만,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8.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9.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10.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배상의무자^(*)일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이 무보험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경우로, 이들 이외에 다른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가.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나.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

는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

(*1) '배상의무자'라 함은 무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2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손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손해」에서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 보험금	=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	비용	-	공제액
-----------	---	-----------------------	---	----	---	-----

가. '지급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나. '비용'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2)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비용 또는 유익한 비용

다.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 (1) 「대인배상 I (책임공제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합니다)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 (2) 배상의무자(*1)가 가입한 「대인배상 II」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 (3) 피보험자가 탑승중이었던 자동차가 가입한 「대인배상 II」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 (4)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1)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 (5) 배상의무자(*1)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

(*1) '배상의무자'라 함은 무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3절 자기차량손해

제21조(보상하는 손해)

- ① 「자기차량손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릅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1)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2.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3. 일방과실사고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4. 경미한 손상(*2)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1) '보험가액'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보험계약을 맺었을 때에는 사고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위 차량기준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보험계약을 맺었을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2) '경미한 손상'이라 함은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 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을 말합니다.

- ②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는 사고는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1. 다른자동차(*1)와의 충돌 또는 접촉으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단, 전부도난이 아닌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다른자동차'라 함은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로서 그 자동차의 등록번호(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말함)와 사고발생시의 운전자 또는 소유자의 신분이 확인된 경우만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 자전거,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 기계 및 농업기계화 추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하며,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 중인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제22조(피보험자)

「자기차량손해」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입니다.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3.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5.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다만,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6.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7.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³⁰⁾, 파괴 등으로 인

30) 압류(押留) 채권자 등의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이 강제로 다른 사람의 재산처분이나 권리행사 등을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징발(徵發)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군사적행위 수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건물, 토지, 물자를 정상적인 수단으로는 군의 수요를 충족할 수 없을 때, 보상을 지급하고 국민에게 일정한 부담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몰수(沒收) 범죄 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나 범죄 행위의 결과로 얻은 물건 따위를 국가가 강제로 빼앗는 일을 말합니다.

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8.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흙, **마멸³¹⁾**, 부식, 녹, 그 밖에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9. 피보험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10.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
11.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12. 피보험자동차를 운송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
13. 피보험자동차가 주차차종일 때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합니다.(타이어나 튜브의 물리적 변형이 없는 단순 **오손³²⁾**의 경우는 제외)
 - 가. 다른 자동차가 충돌하거나 접촉하여 입은 손해
 - 나. 화재, 산사태로 입은 손해
 - 다.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1)**로 인한 손해

(*)1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타이어나 튜브를 훼손하거나 파손한 사고로, 경찰관서를 통하여 가해자(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의 신원이 확인된 사고를 말합니다.

14.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1)**을 하였을 때 생긴 손해
 - 가. 보험계약자, 기명피보험자
 - 나.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해 피보험자동차를 빌린 **임차인^(*)2)**.
 - 다.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1 '마약·약물운전'이라 함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감사 또는 피고용자(피고용자가 피보험자동차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함)를 포함합니다.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자기차량손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보험회사는 다음과 같이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 보험금	=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	비용	-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³³⁾
---------------	---	----------------	---	----	---	--------------------------------

31) **마멸(磨滅)** 갈려서 닳아 없어짐을 의미합니다.

32) **오손(汚損)** 더럽히고 손상된 상태를 말합니다.

33) **자기부담금**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수리비 등의 일부 손해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보험사가 아닌 고객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손해액의 20%가 자기부담금으로 설정되며,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정해집니다.

가.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은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 (1)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2) 피보험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만드는데 드는 수리비. 다만, **잔존물³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공제합니다.
- (3) 피보험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 비용을 합한 금액. 다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³⁵⁾**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 (4) 피보험자동차가 제함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가까운 정비공장이나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비용 또는 그 곳까지 운반하는 데 든 임시수리비용 중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나. '비용'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2)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비용 또는 유익한 비용

다.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동차에 전부손해가 생긴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2.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의 교부로서 보험금의 지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3. 보험회사가 보상한 손해가 전부손해일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계약은 사고 발생시에 종료합니다.
4.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동차의 전부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가 보험회사에 이전되지 않습니다.

34) **잔존물(殘存物)** 보험사고 처리 후 남아있는 피보험자동차 등 보험목적물을 말합니다.

35) **감가상각** "일정기간이 지나면 상실되는 물건의 가치감소분"을 빼는 것을 말합니다.

제3편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제1장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제25조(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장종목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1.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
2.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 (*)를 입은 때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3.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생긴 사고로 상해 (*)를 입은 때
4. 「자기차량손해」	사고가 발생한 때,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도난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보험자동차가 회수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 및 피보험자동차의 반환여부는 피보험자의 의사에 따릅니다.

(*1)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제26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³⁶⁾에 지급합니다.
-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1항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³⁷⁾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

36) 7일 이내 지급보험금이 최종 확정된 날(0시 기준)로부터 7일째 되는 날을 말합니다(주말 및 법정 공휴일을 포함) 단, 7일째 되는 날이 주말 또는 법정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인 평일로 합니다.
예) 보험금확정일('17.1.1일 0시)부터 7일째 되는날('17.1.7일 24시)까지

37) 연단위 복리 이자 계산 시 원금에 대한 이자를 원금에 가산시킨 후 이 합계액을 새로운 원금으로 계산하는 이자계산 방법입니다.
예) 원금 : 100원 / 이자율 : 연 10%
- 1년 후 : 100원 + (100원 X 10%) = 110원
- 2년 후 : 110원 + (110원 X 10%) = 121원

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³⁸⁾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을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³⁹⁾
-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와 경합할 때에는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우선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⁴⁰⁾
-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가 있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피해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그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기**⁴¹⁾의 지급 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 등을 통지합니다.

제27조(제출 서류)

피보험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 등	대인 배상	대물 배상	자기 차량 손해	자기 신체 사고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1. 보험금 청구서	○	○	○	○	○
2.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	○	○	○	○
3.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4.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관서			○		○
5. 배상 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차량번호					○
6. 배상 의무자의 「대인배상 II」 또는 공제계약의 유무 및 내용					○

38)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 예) 피보험자가 고의로 보험금 수령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를 말합니다.

39) 26조4항 자동차사고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10만원을 직접 지급하고 보험회사에 10만원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10만원을 초과해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도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0) 26조5항 피보험자와 피해자(손해배상청구권자)가 동시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우선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41) 자동차보험 진료수기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고 보험회사 등, 의료기관 및 교통사고환자 간의 진료비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진료비 기준금액을 말합니다.

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 등	대인 배상	대물 배상	자기 차량 손해	자기 신체 사고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손해
7.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대인배상 II」 또는 공제계약, 배상의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
8. 도난 및 전손사고 시 폐차증명서 또는 말소사실 증명서			○		
9.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 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 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	○	○	○	○

제28조(가지급금의 지급)

- ① 피보험자가 **가지급금**⁴²⁾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가지급금(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보험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회사는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가지급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③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제2항에서 정하는 지급기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대하여 드립니다.
- ④ 보험회사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⁴³⁾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 ⑤ 보험회사는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⁴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⑥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보험금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2) **가지급금**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이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전에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산출한 지급금액의 일부를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43) **갈음** 어떤 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 대신한다는 의미로써 서면을 대신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44)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 약관의 각 보험종목별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거나, 상대방의 일방과실인 경우(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후미추돌 등) 등 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⑦ 피보험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제27조(제출서류)에서 정하는 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장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제29조(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⁴⁵⁾

제30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 ①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증거확보, 권리보전 등에 협력하여야 하며, 만일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②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③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④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⑤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4항에서 정하는 지급기일 내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손해배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기간	지급이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 ⑥ 보험회사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45) **다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예) 자동차사고로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가진 권리(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배상 책임의 범위 등을 주장)와 동일한 권리를 피해자에게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 ⑦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손해배상금을 일정기간으로 정하여 정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정기금⁴⁶⁾의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제31조(제출 서류)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 필요 서류 등	대인배상 I · II	대물배상
1.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2. 손해배상청구서	○	○
3.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	○
4.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 견서를 수리개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	○

제32조(가지급금의 지급)

- ①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의해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가지급금(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회사는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가지급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③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제2항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 ④ 보험회사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46) 정기금 손해배상액(손해배상금) 등을 한 번에 지급받지 않고 기간을 정하여 나누어 받는 것을 말합니다.

- ⑤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령상 피보험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거나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는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⑥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손해배상액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⑦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제31조(제출서류)에 정한 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장 보험금의 분담 등

제33조(보험금의 분담⁴⁷⁾)

「대인배상 I · II」, 「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분담합니다.

- 1.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있는 경우⁴⁸⁾: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각각의 보험회사에 가입된 자동차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을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text{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2. 이 보험계약의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에서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보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의한 보상한도와 범위에 따른 보험금을 각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의 비율에 따라 분담⁴⁹⁾**하여 지급합니다.
-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34조(보험회사의 대위⁵⁰⁾)

- ①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47) 분담 나누어서 받을음을 의미합니다.
 48) 중복보험 시 보험금의 분담 예시
 · 피보험자동차 손해액: 100만원 / 계약 A: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 계약 B 보험가입금액 50만원
 -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A: 100만원, B: 50만원
 - 사고로 계약 A, B가 부담할 전체 손해액: 100만원
 - 계약 A, B의 부담금액
 A: 100만원 X 100만원/(100만원+50만원) = 666,667원
 B: 100만원 X 50만원/(100만원+50만원) = 333,333원
 49) 배상책임에 따른 분담 예시
 · 피보험자 A 배상책임 비율: 30% / 피보험자 B 배상책임 비율: 70%
 · 전체 대인배상책임 손해액: 100만원
 ⇒ 각 피보험자별 배상책임 A: 30만원 B: 70만원
 50) 대위(代位)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법률적 지위를 대신하여 피보험자가 가진 권리를 얻거나 행사하는 일을 말합니다.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⁵¹⁾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⁵²⁾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다음의 권리는 취득하지 않습니다.

1.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⁵³⁾. 다만, 보험금을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⁵⁴⁾에 의해 지급할 때⁵⁴⁾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2. 「자기차량손해」의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정당한 권리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 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또는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 나.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동안에 사고를 낸 경우
3. 피보험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하여 갖는 권리.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 ③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5조(보험회사의 불성실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①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②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⁵⁵⁾**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36조(합의 등의 협조·대행)

-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합니다.
- ②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 이하 같음)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 ③ 보험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때

제37조(공탁⁵⁶⁾금의 대출)

보험회사가 제36조(합의 등의 협조·대행)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에서 **가압류⁵⁷⁾**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출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비율로 정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의 **회수청구권⁵⁸⁾**을 보험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51) 지급한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예) 1차사고(B차량 → C차량) 및 2차사고(A차량 → B차량 → C차량)로 3중추돌사고 발생시 A차량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법률적 지위를 대신하여 B차량과 C차량의 손해배상금을 일괄 지급한 경우 B차량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52) 제3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회사가 지급한 일부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공제한 금액만큼은 여전히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남게 됩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즉,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피보험자를 대신(대위)하여 제3자에게 직접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

총손해액 : 1억 / 과실 : 피보험자 70%, 제3자 30% / 보험금지급 : 5천만원

① 보험금지급 후 남은 손해액 = 총손해액 - 보험금 = 1억 - 5천만원 = 5천만원

②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 = 제3자의 과실 = 3천만원

→ 보험회사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 = ① - ② = 5천만원 - 3천만원(피보험자의 권리) = 2천만원

53)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예를 들어 손해가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피보험자가 해당 제3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에게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대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여 행사합니다.

54)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⁵⁴⁾에 의해 지급할 때 사고 시 공제액이 있는 사고로 인하여 실제손해액으로 보험금을 계산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시〉 상대방이 있는 자동차사고로 상대방으로부터 대인배상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등

55)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경제적 어려움 등(곤궁), 경솔함, 그리고 보험자 및 정보가 부족함 등(무경험)을 이용하여 불공정한 합의를 하면 안 된다는 점을 나타낸 것으로, 공정한 보험금 합의에 대하여 명시한 내용입니다.

56) 공탁(供託) 채무자가 돈을 갚으려는데 채권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국가기관인 공탁소에 그 돈을 맡김으로써 돈을 갚은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 채무관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공탁이라고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 공탁금을 예치할 수 있습니다.

57) 가압류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액의 한도내에서 압류한 뒤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환기(매매, 양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전 처분을 말합니다.

58) 회수청구권 공탁금을 대출해준 보험회사가 갖는 권리로 공탁금(이자를 포함)에 대한 회수 권리를 말합니다.

제4편 일반사항

제1장 보험계약의 성립

제38조(보험계약의 성립)

- ① 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가 승낙을 하면 성립합니다.
- ②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할 때 '제1회 보험료(보험료를 분납하기로 약정한 경우)' 또는 '보험료 전액(보험료를 일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함)을 지급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 ③ 보험회사가 청약을 승낙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계약이 성립되면 보험회사는 제42조(보험기간)의 규정에 따라 보험기간의 첫 날부터 보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보험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 승낙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상합니다.⁵⁹⁾

제39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⁶⁰⁾)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② **통신판매 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1.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 사이버몰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 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보험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 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는 약관을 드리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보험계약자의 답변과 확인 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이나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를 **광기록매체**⁶¹⁾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전해 드릴 수 있으며, 전화를 이용하는 **통신판매 보험계약**^(*)

59) 38조 4항 피보험자가 2017년 1월 1일 24:00시부터 개시되는 자동차보험을 청약하고 보험회사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했으나 보험회사의 승낙이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예, 사고 후 보험계약 체결 등)가 없는 한 보상한다는 의미입니다.

60) 부분 원본과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말합니다.

61) 광기록매체 CD, DVD, SD카드 등 대용량 기록매체를 통해 영상, 음성, 데이터 등을 기록·재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 에서는 확인서를 제공하여 청약서 부분을 드리는 것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 ④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 제외합니다.
 1.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를 드리지 않은 경우
 2.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청약 시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3.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통신판매 보험계약'이라 함은 보험회사가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 자필서명에는 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제3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을 포함합니다.

제40조(보험안내자료의 효력)

보험회사가 보험모집과정에서 제작·사용한 보험안내자료(서류·사진·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를 포함)의 내용이 보험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⁶²⁾

제41조(청약 철회)

-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드린 것에 관해 다툼이 있으면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전문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
 2.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났을 때
 3.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
 4.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

(*) '전문보험계약자'라 함은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과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한국은행,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등을 말하며, 구체적인 범위는 「보험법」 제2조 제1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④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청약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62) 보험모집과정에서 사용된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보험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하므로,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합니다.

- ① 그 다른 내용이 약관에 비해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경우: 유리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적용
- ② 그 다른 내용이 약관에 비해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경우: 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적용

- ⑤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⑥ 보험회사가 제4항의 보험료 반환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42조(보험기간⁶³)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는 보험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보험기간
1. 원칙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의무보험(책임공제를 포함)의 경우 전(前) 계약의 보험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2. 예외 :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 ^(*) 및 의무보험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이전에 보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보험기간의 첫날 0시부터 시작합니다.

(*)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 판매업자 또는 그 밖의 양도인 등으로부터 매수인 또는 양수인에게 인도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음으로 그 매수인 또는 양수인을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신차 또는 중고차를 말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인이 맺은 보험계약을 양수인이 승계한 후 그 보험기간이 종료되어 이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를 제외합니다.

제43조(사고발생지역)

보험회사는 대한민국(북한지역을 포함) 안에서 생긴 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장종목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제2장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 ①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사항

63) 보험기간

예) '17.1.1일 1년만기 자동차보험 가입
보험개시일 : '17.1.1일/보험만료일 '18.1.1일



(예외)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김현화씨
1. '17.1.1일 15시에 보험료 납입한 경우
(보험개시일 납입)



2. '17.12.31일 15시에 납입한 경우
(보험개시일 이전 납입)



2. 피보험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
3.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연령 등 피보험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보험료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추가보험료를 더 내도록 청구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1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1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
2. 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 위험물을 싣게 된 사실
3. 그 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사실이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한 사실

②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에 알고 있는 최근의 주소로 알리게 되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46조(사고발생 시 의무)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지체 없이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쓰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공동불법행위에서 연대책무자 상호간의 구상권⁶⁴)을 포함하며 이하 같은)의 보전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다음 사항을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 가. 사고가 발생한 때, 곳, 상황 및 손해의 정도
 - 나. 피해자 및 가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사고에 대한 증인이 있을 때에는 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

64) 공동불법행위에서 연대책무자 상호간의 구상권 "공동불법행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연대책무자"란 위 공동불법행위를 통해 동일한 손해배상 책임을 가지는 여러 사람을 의미합니다. "상호간의 구상권"이란 만약 연대책무자 중 한 사람이 채무를 100%이행한 경우에, 대신하여 변제한 다른 연대책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 A차량(과실 20%)과 B차량(과실 80%)의 사고로 C차량에 피해를 주었다면 B차량 소유자가 C차량에 대해 100% 손해배상을 한 후 과실 2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A차량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 : A차량과 B차량의 자동차사고로 C차량에 피해
연대책무자 : A차량 및 B차량 운전자
상호간의 구상권 : B차량 운전자가 100% 선 손해배상 후 과실비율만큼 손해배상금 청구

3.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미리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응급치료, 호송 그 밖의 긴급조치는 보험회사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또는 제기 당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5.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6. 보험회사가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등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사고에 관해 조사하는 데 협력하여야 합니다.
-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던 금액을 보험금에서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장 보험계약의 변동 및 보험료의 환급

제47조(보험계약 내용의 변경)

- ① 보험계약자는 의무보험을 제외하고는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계약자. 다만,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의 권리·의무를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이전함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 따릅니다.
 2. 보험가입금액, 특별약관 등 그 밖의 계약의 내용
- ②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보험료가 변경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이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계약자의 권리·의무는 사망시점에서의 법정상속인에게 이전합니다.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⁶⁵⁾)

- ①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⁶⁶⁾의 권리와 의무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⁶⁷⁾에게 승계⁶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이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한 때부터 양수인

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을 적용합니다.

- ② 보험회사가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자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⁶⁹⁾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는 소유권을 유보한 매매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산 사람' 또는 대차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빌린 사람'이 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하고, 자신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 그 자동차를 '판 사람' 또는 '빌려준 사람'에게 반환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 경우 '판 사람' 또는 '빌려준 사람'은 양수인으로 봅니다.
- ④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적용되는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나는 경우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되기 전의 보험계약자에게 남은 보험료를 돌려드리거나,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후의 보험계약자에게 추가보험료를 청구합니다.
- ⑤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거절한 경우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여 법정상속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상속하는 경우 이 보험계약도 승계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종료되거나 자동차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

- ①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한 다음 그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을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시키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때부터 이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보험계약의 효력은 보험회사가 승인할 때에 상실됩니다.
- ② 보험회사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에 의한 승인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라 함은,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자동차 간에 교체한 경우를 말합니다.
- ④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하는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나는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남은 보험료를 돌려드리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말소등록한 날 또는 소유권을 이전등록한 날부터 승계를 승인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일괄로 계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 ⑤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거절한 경우 교체된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65)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피보험자동차 양도를 통지한 경우 보험회사는 10일 이내 승인여부를 피보험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양도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11일째 되는날에 자동으로 승인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단, 10일 이내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동차에 관하여 승인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인이 피보험자동차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하지 않습니다.

66) 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를 포함합니다.

67) 양수인. 타인의 권리, 재산 등을 넘겨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반대로 양도인은 권리, 재산 등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68) 승계(承繼). 다른 사람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는 일을 말합니다.

69)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통지한 상황에 대하여 "승인"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이후부터 승인되기 전까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시> 일할계산⁷⁰⁾의 사례

기납입보험료 총액	×	해당기간 365(윤년:366)
-----------	---	---------------------

제50조(보험계약의 취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기에 의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을 증명할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1조(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날부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3개월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효력을 상실합니다.

제52조(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해제⁷¹⁾)

- ①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임의로 보험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동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4항에 정한 자동차(의무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도로가 아닌 장소에 한하여 운행하는 자동차)로 변경된 경우
 2.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다만,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또는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양수인 또는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3. 피보험자동차의 말소등록으로 운행을 중지한 경우. 다만,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⁷²⁾
 4.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다만,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5.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과 보험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복되는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을 맺은 경우⁷³⁾
 6.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70) 일할보험료 계산방식

예) 보험기간 : '17.1.1~'18.1.1
 피보험자동차 대체일 : '17.12.1
 기납입보험료 : 30만원
 (계산) 30만원 × 30/365 = 24,658원

71) 해지와 해제 "해지"란 계속적인 계약관계를 해당시점부터 정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며, "해제"는 계약의 효력을 소급하여 과거부터 소멸시키는 것으로, 계약의 효력이 소멸시점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해지와 구별됩니다.

72) 52조 1항 3호 대체 전후의 차량을 동일차량으로 보기 때문에 보험계약의 내용이 교체된 자동차로 승계되어 의무보험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73) 52조 1항 5호 1대의 차량에 대해 의무보험을 포함한 자동차보험을 보험기간이 중복되도록 체결한 경우 하나의 계약 이외의 다른 의무보험 중복계약에 대하여 해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2에서 정하는 '보험 등의 가입의무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② 이 보험계약이 의무보험만 체결된 경우로서, 이 보험계약을 맺기 전에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이 유효하게 맺어져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다른 보험계약이 종료하기 전에 이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다른 보험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부터 보험기간이 개시되는 의무보험이 포함된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하여 이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③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⁷⁴⁾에서 보험계약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 ① 보험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의한 계약해지는 의무보험에 대해 적용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⁷⁵⁾로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항의 사항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 가. 보험계약을 맺은 때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 나.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청약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신청하여 보험회사가 이를 승인하였을 때
 - 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맺은 날부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6개월이 경과한 때
 - 라.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해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하게 알리도록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74) 52조 3항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예를 들어 A(계약자)가 자신의 친구 B(기명피보험자)를 위해서 자동차보험을 체결해준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만 약관에 따라 해지 또는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 ① 타인(기명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 ② 보험증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75) 고의와 중대한 과실에 대한 정의는 사안의 내용마다 해석되어야 합니다. 다만, 통상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의 과실과 달리 자기의 행위가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킬 것을 인식하고 또 이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대한 과실 과실은 민법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가 부족한 것을 말하며,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게 큰 경우를 '중대한 과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항이 보험회사가 위험을 측정하는 데 관련이 없을 때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지 않을 때

2.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 정한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이 뚜렷하게 위험을 증가시킨 것이 아닌 때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3. 보험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령에 정한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4. 보험회사가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2항,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제4항,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 제4항에 따라 추가보험료를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⁷⁶⁾에 보험계약자가 제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 가. 보험회사가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 나.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하는 사실을 통지받은 후 1개월이 지난 경우
5. 보험금의 청구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⁷⁷⁾**의 사기행위가 발생한 경우.
-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않으며, 이 경우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상합니다.
-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다른 보험의 가입내역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제54조(보험료의 환급 등)

- ①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보험료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 전 보험료와 변경 후 보험료의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 ② 보험회사의 고의·과실로 보험료가 적정하지 않게 산정되어 보험계약자가 적정보험료를 초과하여 납입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를 안 날 또는 보험계약자가 반환을 청구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적정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납입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에게 고의·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적정보험료를 초과한 금액만 돌려드립니다.

76) 제4호에서 언급한 "제44조 제②항, 제45조 제①항, 제48조 제④항, 제49조 제④항"은 계약 전/후 알릴의무 위반 또는 피보험자동차의 양도/교체로 인한 "추가보험료의 납입 또는 환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추가보험료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회사의 청구에 따라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77) **법정대리인** 위임을 받지 않고도 직접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권의 효력이 발생하는 재권자, 후견인을 말합니다.

78)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효력이 상실되거나 해지된 경우, 해당 날로부터 보험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시) 보험기간 1년, 해지일로부터 보험 만료일까지 남은기간 100일인 경우 ⇒ 1년 보험료 × 100/365일 =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때, 또는 그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제39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4항에 의해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보험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 상실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⁷⁸⁾**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3.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 ④ 제3항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의무보험의 해지는 제외)
 2. 보험회사가 제50조(보험계약의 취소) 또는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에 따라 보험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 ⑤ 보험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을 환급합니다.
- ⑥ 이 약관에 의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드리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생긴 날부터 3일 이내에 드립니다.
- ⑦ 보험회사가 제6항의 반환기일이 지난 후 보험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 기일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다만, 이 약관에서 이자의 계산에 관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4장 그 밖의 사항

제55조(약관의 해석)

- ① 보험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② 보험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보험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56조(보험회사의 개인정보이용 및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 ① 보험회사는 제27조(제출서류) 제5호, 제6호의 배상외무자의 개인정보와 제46조(사고발생 시 의무) 제2호 나목, 다목의 피해자, 가해자 및 증인의 개인정보를 보험사고의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의한 의무의 이행 및 관리를 위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내지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보험

회사 및 보험관계단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피보험자동차의 차량번호, 형식, 연식
2. 계약일시, 보험종목, 보장종목, 보험가입금액, 자기부담금 및 보험료 할인·할증에 관한 사항, 특별약관의 가입사항, 계약해지 시 그 내용 및 사유
3. 사고일시 또는 일자, 사고내용 및 각종 보험금의 지급내용 및 사유

제57조(피보험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설명 또는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이러한 조사 또는 요구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제58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보험금 등의 지급보장)

보험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⁷⁹⁾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59조(보험사기행위 금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피해자 등이 보험사기행위를 행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60조(분쟁의 조정)

이 보험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그 밖에 이해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61조(관할법원)

이 보험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보험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 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 내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62조(준용규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⁸⁰⁾

79)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보험계약자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되지 않습니다(개인 계약자에 한함, 법인 제외)

80) 약관은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간의 계약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상법, 민법 등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하여 적용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화 개인용자동차보험

특별약관

특별약관

제1편 보험료 납입방법

1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73
2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74
3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74
4 보험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	75

제2편 운전가능자 제한

제1장 운전자 연령제한	77
1 운전자연령 만21/22/24/26/28/30/35/43/48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77
제2장 운전자 범위제한	78
1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78
2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79
3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79
4 가족과 기명운전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80
5 가족과 형제·자매 한정운전 특별약관	81
6 기명피보험자 1인과 기명운전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82
7 부부운전자와 기명운전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82

제3편 운전가능자 확대

1 명절임시운전 특별약관	84
2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별약관	84
3 단기 운전자확대 특별약관	85

제4편 자기신체사고 보장 확대

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86
2 간병비지원 특별약관	88
3 자기신체사고 부상 실손보상 특별약관	88
4 주말 사망 및 후유장애 확대보상 특별약관	90
5 대중교통상해 특별약관	92
6 리프레쉬지원금 특별약관	93
7 우리아이 스쿨존안심 특별약관	95
8 우리아이 성장판안심 특별약관	96
9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차액보상 특별약관	98
10 WORSHIP 사망 및 후유장애 확대보상 특별약관	99
11 주일자녀케어 특별약관	100
12 교회버스 탑승중 상해 특별약관	102
13 수익자지정 추가 위로금 특별약관	104
14 성형 및 치아보철 지원금 특별약관	104
15 가족사랑 특별약관	105
16 주말 사망확대보상 특별약관	106
17 자녀사랑 특별약관	107

제5편 차량손해 보장 확대

1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	109
2 자기차량손해 초과수리비 보상 특별약관	110
3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담보 특별약관	111
3 -1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담보 부모 및 자녀 확대 추가 특별약관	113
4 차량 신가보상 특별약관	116
5 자기차량손해 대여자동차지원 특별약관 II	117
6 대여자동차 차량손해담보 특별약관	118
7 레포츠용품 손해담보 특별약관	120
8 자기차량손해 확대보상 특별약관	121

제1편 보험료 납입방법

1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분할납입)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보험증권 기재의 회수 및 금액(이하 '분할보험료'라 합니다)으로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인배상」, 「대물배상」 또는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에 대하여는 이 특별약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조(분할보험료의 납입방법)

보험계약자는 이 보험계약을 맺으면서 제1회 분할보험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부터는 약정한 납입일자 안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3조(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⁸¹⁾)

- ①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자로부터 30일간의 납입최고기간을 둡니다. 보험회사는 이 납입최고기간 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 ② 제1항의 납입최고기간 안에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 ③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이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주소를 보험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제4조(보험료의 환급)

이 특별약관 제3조(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제2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해지일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제5조(보험계약의 부활)

- ① 이 특별약관 제3조(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제2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30일안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당해 분할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로부터 당해 분할보험료를 영수한 날의 24시까지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81) 최고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를 하는 일을 말합니다.

제6편 사고처리시 필요 비용지원

1 형사합의금 지원 특별약관	123
2 변호사선임비용 지원 특별약관	125
3 벌금비용 지원 특별약관	126

제7편 긴급출동 서비스

1 한화 긴급출동 서비스 특별약관	129
1 -1 긴급 견인서비스 확대 추가 특별약관	133
2 한화 긴급출동 플러스 서비스 특별약관	134
2 -1 긴급 견인서비스 확대 추가 특별약관	138

제8편 녹색상품

1 승용차요일제 특별약관	140
2 친환경부품사용 특별약관	142
3 ECO 마일리지 특별약관(후정산)	144
4 ECO 마일리지 특별약관(선할인)	148
5 ECO 마일리지 할인형 특별약관	152
6 E-MAIL 사용약정 특별약관	154

제9편 기타

1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156
1 -1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부모 및 자녀 확대 추가 특별약관	157
2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159
3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	160
4 외제차 총돌시 확대보상 특별약관	160
5 기계장치에 관한[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161
6 나눔 특별약관	161
7 실버 안전운전자 우대 특별약관	163
8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특별약관	164
9 지정대리청구에 관한 특별약관	166
10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	167
11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추가 특별약관	168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신용카드회사(이하 '카드회사'라 합니다)의 카드회원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정의 신용카드 로서 보험료를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간주합니다.

제3조(사고카드 계약)

- ①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책임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 ② 제1항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를 받은 카드, 카드 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상이한 카드 등을 말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3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지정은행계좌를 통하여 자동이체납입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자동납입)

-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분할납입할 때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회수 및 금액으로 자동이체 분할납입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 「대물배상」 또는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② 보험료의 자동이체 납입일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체일자(이하 '약정이체일'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 ③ 제2항의 약정이체일은 보험청약서상에 열거된 이체가능일자 중에서 보험료 납입기일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이체일자를 말합니다. 다만, 초회보험료를 자동이체납입할 경우의 초회보험료 약정이체일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책임개시일자의 이전의 이체일자를 말합니다.
- ④ 지정은행계좌의 이체가능 금액이 보험회사가 청구한 보험료에 미달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이체납입되지 않습니다.

제3조(분할보험료의 납입유예 및 납입최고)

- ① 보험회사는 분할보험료가 약정이체일에 납입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약정이체일로부터 [첨부]의 **납입유예기간**⁸²⁾을 둡니다. 보험회사는 이 납입유예기간 안에 생긴 사고는 보상합니다. 다만, 초회보험료에 대해서는 납입유예기간이 없으며, 책임개시일자 이전까지 초회보험료의 납입이 없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② 보험회사는 약정이체일에 분할보험료가 이체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할보험료 납입유예기간 중에는 계속하여 이체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③ 보험회사는 제1항의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10일전까지 보험계약자에게 납입최고를 합니다.
- ④ 납입유예기간 말일까지 분할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납입유예기간 말일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을 해지됩니다.

제4조(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는 지정은행계좌의 번호가 변경되거나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첨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 미납입에 따른 납입유예기간

납입방법	미납입 보험료	2회 보험료	3회 보험료	4회 보험료	5회 보험료	6회 보험료
비연속 2회납						1개월
연속납	2회납	4개월				
	3회납	2개월	4개월			
	4회납	1개월	3개월	4개월		
	5회납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6회납	1개월	1개월	2개월	2개월	3개월

(주) 비연속 2회납의 납입유예기간 1개월은 2회보험료 미납입에 따른 납입유예기간을 말합니다.

4 보험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 보험기간 만료일(이하 '이 계약 만료일'이라 합니다)을 보험기간 시기로 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에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계약의 자동갱신)

- ① 갱신계약은 이 특별약관 제3조(갱신계약 보험료의 납입) 제2항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이 계약 만료일에 이미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82) 납입유예기간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채 그 계약의 효력이 존속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갱신계약의 조건은 이 계약 만료일 현재 유효한 계약조건과 동일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이 계약 만료일까지 보험계약자가 갱신계약 내용의 변경을 통지한 때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③ 보험회사가 보험 약관이나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 등을 개정할 경우, 갱신계약에 대해서는 갱신일 현재, 개정된 약관이나 제도 또는 보험료 등을 적용합니다.

제3조(갱신계약 보험료의 납입)

- ① 보험계약자는 이 계약 만료일로부터 30일(이하 '납입유예기간'이라 합니다) 안에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갱신계약 보험료의 납입유예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갱신계약의 책임개시일자로부터 소급하여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납입유예기간 안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③ 갱신계약 보험료는 보험회사에서 정한 보험료 분할납입 방법에 따라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인배상」, 「대물배상」 또는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초회보험료에 포함됩니다.

제4조(갱신계약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중의 사고)

- ① 보험회사는 갱신계약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다만, 사고발생일 현재 갱신계약 내용과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유효한 다른 자동차보험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지체없이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보험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5조(자동갱신 부적용 통지)

- ① 보험계약자가 이 계약을 자동갱신하지 아니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이 계약 만료일 20일전까지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보험회사가 이 계약을 자동갱신하지 아니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이 계약 만료일 30일 전까지 보험계약자의 증권상 주소로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이 계약의 자동갱신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2편 운전가능자 제한

제1장 운전자 연령제한

1 운전자연령 만21/22/24/26/28/30/35/43/48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만21/22/24/26/28/30/35/43/48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①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21/22/24/26/28/30/35/43/48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보험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또는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또는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의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⁸³⁾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21/22/24/26/28/30/35/43/48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21/22/24/26/28/30/35/43/48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83) 기명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에 한하여 보상합니다.(이하 같음)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2장 운전자 범위제한

1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와 그 가족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 I」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⁸⁴⁾이라 함은 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③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④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 ⑤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및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또는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의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 II」,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84) 가족의 정의에서 양부모, 양자녀, 사실혼, 계부모, 계자녀는 통상 다음과 같습니다.
 양부모 양자녀 입양에 의해 부모 또는 자녀의 자격을 얻은 사람
 사실혼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의 부부는 아니지만, 사실상 부부의 관계에 있는 성대 계부모 계부(어머니가 재혼하여 생긴 아버지)와 계모(아버지가 재혼하여 생긴 어머니)
 계자녀 재혼한 경우, 배우자가 재혼을 하면서 데리고 온 자녀

2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와 그 배우자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 I」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또는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의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 II」,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3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 1인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 I」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

지의 사이에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또는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의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 가족과 기명운전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와 그 가족 및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운전자 1인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라 함은 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③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④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 ⑤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및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를 말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운전자라 함은 계약 체결시 보험회사로 고지된 1인의 운전자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 및 그 가족,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운전자 1인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또는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의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

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5 가족과 형제·자매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와 그 가족과 형제·자매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라 함은 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③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④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 ⑤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및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를 말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형제·자매라 함은 기명피보험자와 부모(부모 중 1인이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동일한 기명피보험자의 형제·자매 및 그 부모의 양자, 양녀, 계자녀로 인한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 및 그 가족과 형제·자매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또는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의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6 기명피보험자 1인과 기명운전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와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운전자 1인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 I」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운전자라 함은 계약 체결시 보험회사로 고지된 1인의 운전자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 및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운전자 1인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 사이에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또는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의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 II」,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7 부부운전자와 기명운전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와 그 배우자 및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운전자 1인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 I」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운전자라 함은 계약 체결시 보험회사로 고지된 1인의 운전자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및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운전자 1인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 사이에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또는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의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 II」,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3편 운전가능자 확대

1 명절임시운전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명절임시운전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임시운전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를 명절기간 중 운전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제2편 운전가능자 제한 특별약관에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명절기간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명절인 설(구정) 또는 추석 당일의 전후 3일간, 각각의 명절마다 총 7일간(첫날 0시에서 시작되어 마지막날 24시에 끝 납니다)으로 합니다.

제3조(임시운전자)

이 특별약관에서 임시운전자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 가능 범위 이외의 자중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을 허락받은 자를 말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내용)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대리운전업자에게 일시적으로 운전대행을 의뢰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탑승한 상태에서 대리운전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해당 대리운전자를 보통약관의 피보험자로 간주하여 보통약관 「자기 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또는 특별약관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대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 이 특별약관에서 대리운전업자라 함은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운전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대리운전자라 함은 대리운전에 종사하는 자로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을 일시적으로 대리하는 사람을 말하며, 다음의 사람은 제외합니다.
 - 기명피보험자의 피용자

2. 피보험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운전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운전하는 자

- 위 제1항의 사고 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대리운전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 이외일지라도 그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보험회사가 보상할 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대리운전업자 또는 대리운전자에게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보험계약(대리운전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포함합니다)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발생한 손해가 위 다른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기명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가 요청한 목적에 반하여 통상적인 경로를 현저히 벗어나서 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 대리운전자의 신체에 생긴 손해
- 탑승자나 제3자의 교대운전 또는 임의대리운전으로 인한 손해⁸⁵⁾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3 단기 운전자확대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단기 운전자확대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 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운전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제2편 운전가능자 제한 특별약관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보상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선택한 기간에는 해당운전자를 피보험자동차가 가입한 보통약관의 피보험자로 간주하여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3조(책임기간)

이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회사의 책임기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의 첫날 24시에 시작되어 마지막날 24시에 끝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85) 탑승자 또는 탑승자가 아닌 다른사람과 교대로 운전하거나 대리운전업체(사업자)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대리운전 행위(속칭:길빵)를 하는 경우
예) 기명1인 한정특약에 가입한 기명피보험자가 동승자에게 교대로 운전의뢰를 하는 경우 등

제4편 자기신체사고 보장 확대

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되며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를 이 특별약관으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제2조(보상내용)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때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을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으로 간주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 나. 화재 또는 폭발
 -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상해라 함은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이 특별약관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text{지급 보험금} = \text{실제손해액} + \text{비용} - \text{공제액}$$

1. 실제손해액이라 함은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2. '비용'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합니다)
 - 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존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3.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 가.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대인배상 I」(정부보장사업 포함) 및 「대인배상 II」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나. 보통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다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 배상의무자 또는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배상의무자라 함은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의 「대인배상」과 「대인배상II」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포함하여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또한 지급하는 보험금은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의 「대인배상」 및 「대인배상II」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 ④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⑤ 다만, 보험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통약관 제13조(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5조(보험금의 청구시 제출서류)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
2.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3.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서
4. 배상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차량번호
5. 배상의무자의 「대인배상 II」 또는 공제계약의 유무 및 내용
6.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대인배상 II」 또는 공제계약, 배상의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 그 금액
7.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 간병비지원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을 가입하고 「간병비지원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국내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매 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간병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상해등급	간병지원금	상해등급	간병지원금
1급	200만원	8급	32만원
2급	176만원	9급	28만원
3급	152만원	10급	24만원
4급	128만원	11급	20만원
5급	56만원	12급	16만원
6급	48만원	13급	6만원
7급	40만원	14급	6만원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한.

제3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통약관 제13조(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3 자기신체사고 부상 실손보상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를 가입하고 「자기신체사고 부상 실손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내용)

-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때에는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을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으로 간주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 나. 화재 또는 폭발
 -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상해라 함은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조건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② 보험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부상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부상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후유장애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남은 때에는 「별표 5」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2) 후유장애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 급별 보험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4. 가정간호비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중 다. 후유장애 3. 가정간호비 인정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항의 지급기준에 따라 피보험자 1인당 1,500만원을 한도로 가정간호비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의 사망, 부상, 후유장애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각각 계산합니다. 다만, 「비용」은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text{지급 보험금} = \text{실제손해액} + \text{비용} - \text{공제액}$$

1. 「실제손해액」은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금액으로써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2. 「비용」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이여 드립니다.
 -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 가.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대인배상 I (정보보장사업 포함) 및 「대인배상 II」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나.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4.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의 경우 보험 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 부상의 경우 실제 소요된 치료비(성형수술비포함), 후유장애의 각 보험 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을 각각 지급합니다.
- ④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통약관 제13조(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 주말 사망 및 후유장애 확대보상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를 가입하고 『주말 사망 및 후유장애 확대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 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자기신체사고 보험가입금액 사망 1억원 · 후유장애 1억원 가입한 경우
2.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주말 및 휴일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후유장애를 입는 경우 보험 증권에 기재된 자기신체사고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보험가입금액을 [첨부] 주말 사망 및 후유장애 확대보상 보험가입금액표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주말은 금요일 18:00~월요일 06:00시를 말하며 휴일은

1. 법정공휴일(국가에서 정한 임시공휴일 포함)의 전일 18:00~익일 06:00시
2. 근로자의 날의 전일 18:00~익일 06:00시를 말합니다.

제3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통약관 제13조(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첨 부] 주말 사망 및 후유장애 확대보상 보험가입금액표

1. 사망 보험가입금액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주말 및 휴일사고 시	3,000만원	6,000만원	1억원

2.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표

	장애 등급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주말 및 휴일 사고시	1급	3,000만원	6,000만원	1억원
	2급	2,700만원	5,400만원	9,000만원
	3급	2,400만원	4,800만원	8,000만원
	4급	2,100만원	4,200만원	7,000만원
	5급	1,800만원	3,600만원	6,000만원
	6급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7급	1,200만원	2,400만원	4,000만원
	8급	900만원	1,800만원	3,000만원
	9급	720만원	1,440만원	2,400만원
	10급	540만원	1,080만원	1,800만원
	11급	420만원	840만원	1,400만원
	12급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3급	180만원	360만원	600만원
	14급	120만원	240만원	400만원

(주) 장애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애구분에 의함

5 대중교통상해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을 가입하고 「대중교통상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안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① 이 특별약관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1. 대중교통수단에 탑승중인 경우

운행중인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중, 탑승중인 대중교통 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2. 대중교통수단에 비탑승중인 경우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중 또는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내 대기중 대중교통 수단(적재를 포함)과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또는 대중교통 수단간 충돌, 접촉, 화재, 폭발로 인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② 제1항의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일반의 대중이 통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음의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1. 사망보험금

상해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당 1억원을 지급합니다.

2. 후유장애보험금

가.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한 그 직접결과로서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애'라 함)된 경우에는 「별표 6」 대중교통상해 특별약관 후유장애 지급률표의 각호에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 1억원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애 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나. '가'의 후유장애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애 지급률이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애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애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애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애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 「별표 6」 대중교통상해 특별약관 후유장애지급률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애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애 정도에 따라 「별표 6」 대중교통상해 특별약관 후유장애지급률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별표 6」 대중교통상해 특별약관 후유장애지급률표의 각 장애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애에 대하여는 후유장애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라.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애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가', '나', '다'를 적용하고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그 합계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별표 6」 대중교통상해 특별약관 후유장애지급률표의 7, 8, 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리과 발)의 후유장애에 대한 한쪽 각각의 후유장애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의 60%를 한도로 합니다.

3.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3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① 기명피보험자
-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 ③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동거중인 부모
- ④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동거중인 자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 보험금 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다만, 보험금 수익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고의를 저지른 보험금 수익자의 해당 보험금)
2.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손해
3. 경기(연습포함), 흥행(연습포함), 훈련, 또는 시운전을 위하여 운행중인 대중교통수단을 조종하거나 탑승 중 발생한 손해
4. 대중교통수단의 설치, 수리, 점검, 정비, 청소작업 등 업무를 수행 하던 중 발생한 손해
5. 대중교통수단에 화물을 싣거나 내리던 중 발생한 손해
6. 대중교통수단을 운반하던 중 발생한 손해
7. 대중교통수단에 탑승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자로서 업무상 대중교통수단에 탑승하던 중 발생한 손해
8.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6 리프레쉬지원금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을 가입하고 「리프레쉬지원금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

합자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등급 7급 이상의 상해를 입었을 경우,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건강회복지원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등급 7급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인당 상해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강회복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상해등급	건강회복지원금
1급	200만원
2급	200만원
3급	200만원
4급	100만원
5급	100만원
6급	50만원
7급	50만원

2. 물리치료지원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등급 7급 이상의 골절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인당 50만원을 물리치료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골절이라 함은 외력의 작용이 강하여 뼈가 부분적 또는 완전히 이단된 상태를 말합니다.

3. 휘트니스지원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등급 7급 이상의 상해를 입어, 최초 4주이상의 진단을 받고 국내의료기관에 30일 초과 입원 시 1인당 50만원을 휘트니스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제3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통약관 제13조(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7 우리아이 스쿨존 안심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을 가입하고 「우리아이 스쿨존 안심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스쿨존에서 보행중 운행중인 다른 자동차와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스쿨존(School Zone)이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유치원 및 초등학교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내에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말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다른 자동차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
2.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1. 사망위로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에 매 사고에 대하여 1인당 2,00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합니다.

2. 후유장애위로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장애등급 10급이상의 장애를 입은 경우에 매 사고에 대하여 1인당 다음과 같이 후유장애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장애등급	후유장애위로금
1급~3급	5,000만원
4급~6급	3,000만원
7급	2,000만원
8급~10급	1,000만원

3. 학습능력회복지원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등급 12급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 매 사고에 1인당 다음과 같이 학습능력회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상해등급	학습능력회복지원금
1급~7급	70만원
8급~9급	30만원
10급~12급	20만원

4. 후유증검사지원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등급 7급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 매 사고에 대하여 1인당 100만원의 후유증검사지원금을 지급합니다.

5. 제1호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제2호 후유장애위로금으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후유장애 위로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3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의 만14세이하의 자녀를 말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14세이하의 자녀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보험가입시점에서의 만14세이하의 자녀로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험회사는 다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보험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부모라 함은 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를 말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8 우리아이 성장판 안심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을 가입하고 「우리아이 성장판 안심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사고로 성장판과 관련된 골절 손상을 입은 경우, 매사고에 대해서 1인당 300만원을 한도로 [첨부] 성장판과 관련된 골절 항목 및 보상한도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장판 검사 및 치료비용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성장판과 관련된 골절 손상이라 함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첨부]성장판과 관련된 골절 항목 및 보상한도의 상해등급 항목'의 골절을 말합니다.

제3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의 만12세이하의 자녀를 말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12세이하의 자녀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보험가입시점에서의 만12세이하의 자녀로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첨부] 성장판과 관련된 골절 항목 및 보상한도

상해 등급	상해내용	보상금액
2급	10항 대퇴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00만원
	11항 대퇴골 경부 분쇄 골절, 전자하부 분쇄 골절, 과부 분쇄 골절, 경골 과부 분쇄 골절 또는 경골 원위 관절내 분쇄 골절	
	12항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급	11항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3항 대퇴골 또는 경골 골절(대퇴골 골두 골절은 제외한다)	
	16항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급	8항 상완골 경부 골절	
	10항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에 적용한다)	
	11항 요골 원위부 골절과 척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갈레이찌 골절을 말한다)	
	12항 척골 근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몬테지아 골절을 말한다)	
5급	14항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수근골간 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7항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항 대퇴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항 대퇴골 또는 근위 경골의 견열골절	
	18항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항 족관절의 양과 골절 또는 삼과 골절(내과, 외과, 후과를 말한다)	

상해 등급	상해내용	보상금액
6급	12항 상안골 대결절 견열 골절	300만원
	14항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항 요골간부 또는 원위부 관절의 골절	
	18항 요골 경부 골절	
	19항 척골 주두부 골절	
7급	9항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00만원
	13항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수근관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22항 비골 간부 골절 또는 골두 골절	
	24항 족관절 내과, 외과 또는 후과 골절	
8급	10항 상안골 과상부 또는 상안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 등을 말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주) 1. 상해등급 및 상해내용의 구분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규정에 의함
 2.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골절이 발생된 경우 상위등급 하나만을 적용

9 선택진료비 · 상급병실료 차액 보상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을 가입하고 「선택진료비 · 상급병실료 차액 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선택진료비 보험금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국내의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때에 지정한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 선택진료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1인당 300만원을 한도로 그 비용을 선택진료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2. 상급병실료 차액 보상 보험금

피보험자가 상급병실에 입원하여 일반병실(이하 '기준 병실'이라 합니다)과 상급병실이 사용료차액(이하 '병실료차액'이라 합니다)이 발생 하였을 경우에, 병실료차액 중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서 지급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한 금액을 병실료 차액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입원기간 30일 범위 내에서 300만 원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상급병실이라 함은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을 말합니다. 다만, 특실은 제외합니다.

제3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통약관 제13조(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0 WORSHIP 사망 및 후유장애 확대보상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를 가입하고 「WORSHIP 사망 및 후유장애 확대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자기신체사고 보험가입금액 사망 1억원 · 후유장애 1억원 가입한 경우
2.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주말 및 휴일, 수요일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후유장애를 입는 경우 보험 증권에 기재된 자기신체사고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보험가입금액을 [첨부] WORSHIP 사망 및 후유장애 확대보상 보험가입금액 표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용어풀이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주말은 금요일 18:00~월요일 06:00시를 말하며 휴일은
 1. 법정공휴일(국가에서 정한 임시공휴일 포함)의 전일 18:00~익일 06:00시
 2. 근로자의 날의 전일 18:00~익일 06:00시를 말합니다.
- ② 이 약관에서 수요일은 수요일 00:00~24:00시를 말합니다.

제3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통약관 제13조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첨 부] WORSHIP 사망 및 후유장애 확대보상 보험가입금액표

1. 사망 보험가입금액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주말 및 휴일, 수요일 사고 시	3,000만원	6,000만원	1억원

2.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표

	장애 등급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주말 및 휴일 사고 시	1급	3,000만원	6,000만원	1억원
	2급	2,700만원	5,400만원	9,000만원
	3급	2,400만원	4,800만원	8,000만원
	4급	2,100만원	4,200만원	7,000만원
	5급	1,800만원	3,600만원	6,000만원
	6급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7급	1,200만원	2,400만원	4,000만원
	8급	900만원	1,800만원	3,000만원
	9급	720만원	1,440만원	2,400만원
	10급	540만원	1,080만원	1,800만원
	11급	420만원	840만원	1,400만원
	12급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3급	180만원	360만원	600만원
	14급	120만원	240만원	400만원

(주) 장애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애구분」에 의함

11 주일 자녀케어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을 가입하고 『주일 자녀케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운행 중인 다른 자동차와의 주일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 또는 다른 자동차에 탑승 중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다른 자동차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

2.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주일이라 함은 일요일 당일(00시~24시)과 크리스마스 당일(00시~24시)을 말합니다.

1. 사망위로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에 매 사고에 대하여 1인당 2,00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합니다.

2. 후유장애위로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후유 장애가 남은 경우에 매 사고에 대하여 1인당 다음과 같이 후유장애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장애등급	후유장애위로금
1급~3급	5,000만원
4급~6급	3,000만원
7급	2,000만원

3. 학습능력회복지원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등급 12급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 매 사고에 1인당 다음과 같이 학습능력회복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상해등급	학습능력회복지원금
1~3급	200만원
4~7급	100만원
8~9급	50만원
10~12급	30만원

4. 물리치료지원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인당 50만원을 물리치료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골절이라 함은 외력의 작용이 강하여 뼈가 부분적 또는 완전히 이 단된 상태를 말합니다.

5. 제1호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제2호 후유장애위로금으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의 만5세 이상 만18세 이하의 자녀를 말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5세 이상 만18세 이하의 자녀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보험시기일 현재 만5세 이상 만18세 이하의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①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타락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합니다)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피보험자가 업무로서 수탁받은 자동차의 사용 또는 관리중 발생한 수탁 받은 자동차에 의한 보행중 사고로 그 본인 이 상해를 입은 때
 2. 피보험자가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상해를 입은 때
 3. 자동차의 수리,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때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때
- ② 보험회사는 다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보험자의 부모 및 피보험자인 경우에 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부모라 함은 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를 말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2 교회버스 탑승중 상해 특별약관**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을 가입하고 「교회버스 탑승중 상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종교행사를 위하여, 교회(성당을 포함합니다)버스에 탑승 중 발생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종교행사라 함은 다음의 행사를 말합니다.

1. 교회 주관으로 이뤄지는 통상의 예배 등의 종교행사
2. 교회 주관으로 이뤄지는 수련회, 기도회 등의 종교행사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교회버스에 탑승중 발생한 사고라 함은 운행중인 교회버스에 피보험자가 탑승중, 탑승중인 교회버스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교회버스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1. 교회 또는 성당 소유로 신도운송용으로 사용하는 승합자동차
2. 교회 또는 성당과 계약을 맺어 신도운송용으로 사용하는 승합자동차

1. 사망위로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에 매 사고에 대하여 5,00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합니다.

2. 후유장애위로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후유 장애가 남은 경우에 매 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후유장애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장애급별	후유장애위로금
1급~3급	5,000만원
4급~5급	3,000만원
6급~7급	2,000만원
8급~9급	1,000만원
10급~11급	500만원
12급~14급	100만원

3. 상해위로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상해급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해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상해급별	상해위로금
1급~3급	300만원
4급~5급	200만원
6급~7급	100만원
8급~9급	50만원
10급~11급	30만원
12급	10만원

4. 제1호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제2호 후유장애위로금으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위로금에서 후유장애위로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3조(피보험자)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3.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동거중인 부모
4.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동거중인 자녀

- ② 제1항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교회버스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본인 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3 수익자지정 추가위로금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을 가입하고 「수익자지정 추가위로금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자기신체사고 사망지급 보험금액의 10%를 기명피보험자가 보험 증권에 별도로 지정한 수익자(개인 또는 법인)에게 지급합니다. 단, 보험사고 발생시점에 피보험자가 별도로 지정한 수익자(개인 또는 법인)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금 수익자에게 일괄 지급합니다.

제3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4 성형 및 치아보철 지원금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을 가입하고 「성형 및 치아보철 지원금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때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성형지원금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 부분에 성형수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매 사고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00만 원을 한도로 1cm당 10만원의 성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안면부, 상지, 하지만 다음을 말합니다.

- ① 안면부란 이마를 포함하며 목까지의 얼굴부분을 말합니다.
- ② 상지란 **견관절** 이하의 팔부분을 말합니다.
- ③ 하지만 **고관절** 이하 **대퇴부**, **하퇴부**, **족부**를 의미하며, **둔부**, **서혜부**, **복부**⁸⁶⁾ 등은 제외합니다.

2. 치아보철지원금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치아보철을 요하는 경우 매 사고에 대하여 1대당 20만원 치아보철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통약관 제13조(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5 가족사랑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을 가입하고 「가족사랑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때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사망위로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에 매 사고에 대하여 사망위로금 2천만 원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건강진단비용 지원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강진단비용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상해구분	건강진단비용 지원금
1~7급	30만원
기타	20만원

86) **견관절**(肩關節) 어깨뼈와 위팔뼈 사이의 관절로 좁은 의미의 어깨라고 부릅니다.
고관절(股關節) 골반과 넓적다리(대퇴골)가 연결되는 관절로 엉덩관절이라고 부릅니다.
대퇴부(大腿) 무릎 윗부분 넓적다리라고 부릅니다.
하퇴부(下腿) 무릎 아래에서 발목 위까지를 말합니다.
족부(足) 발목 아래 부분을 말합니다. **둔부** 엉덩이 부분을 말합니다.
서혜부 넓적다리 부위 위쪽을 말합니다. **복부** 배 부위를 말합니다.

3. 요양시설 이용지원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의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1인당 2,000만원을 요양시설 이용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제3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6 주말 사망확대보상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을 가입하고 「주말 사망확대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주말 및 휴일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피보험자 1인당 5천만원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 이 약관에서 주말은 금요일 18:00~ 월요일 06:00시를 말하며 휴일은
- ① 법정공휴일(국가에서 정한 임시공휴일 포함)의 전일 18:00~익일 06:00시
 - ② 근로자의 날의 전일 18:00~익일 06:00시를 말합니다.

제3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통약관 제13조(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7 자녀사랑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을 가입하고 「자녀사랑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때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자녀 성형지원금

기명피보험자의 만 18세이하의 자녀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 부분에 성형수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매 사고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00만원을 한도로 1cm당 10만원의 자녀 성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 18세이하의 자녀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보험시 기일 현재 만 18세이하의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안면부, 상지, 하지란 다음을 말합니다.

- ① 안면부란 이마를 포함하여 목까지의 얼굴부분을 말합니다.
- ② 상지란 견관절 이하의 팔부분을 말합니다.
- ③ 하지란 고관절이하 대퇴부, 하퇴부, 족부를 의미하며, 둔부, 서혜부, 복부등은 제외합니다.

2. 자녀 치아보철지원금

기명피보험자의 만 18세이하의 자녀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치아보철을 요하는 경우 매사고에 대하여 1대당 20만원의 자녀 치아보철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치아가 유치로써 치아보철을 요하지 아니하나 파절, 탈구된 경우에는 1대당 10만원의 자녀 치아보철지원금을 지급합니다.

3. 자녀 간병지원금

기명피보험자의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국내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매 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자녀간병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상해급별	간병지원금	상해급별	간병지원금
1급	200만원	8급	32만원
2급	176만원	9급	28만원
3급	152만원	10급	24만원
4급	128만원	11급	20만원
5급	56만원	12급	16만원
6급	48만원	13급	6만원

상해급별	간병지원금	상해급별	간병지원금
7급	40만원	14급	6만원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4. 후유장애보험금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중증후유장애**가 남는 경우 매사고에 대하여 2,000만원의 후유장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중증후유장애**라 함은 피보험자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남는 경우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의 장애를 말합니다.

5. 사망보험금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매 사고에 대하여 2,000만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제4호의 후유장애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3. 기명피보험자의 만 18세이하의 자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5편 차량손해 보장 확대

1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내용)

-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릅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2.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의 단독사고(가해자 불명사고를 포함합니다) 또는 일방과실사고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4. **경미한 손상**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가액**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보험계약을 맺었을 때에는 사고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위 차량기준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보험계약을 맺었을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경미한 손상**이라 함은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사고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제21조(보상하는 손해) ②항에서 규정한 사고를 제외한 다음의 사고에 한합니다.
 1. 타 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2.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제3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입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보통약관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내용에 따릅니다.

제5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이 특별약관에서 지급보험금의 계산은 보통약관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내용에 따릅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 자기차량손해 초과수리비 보상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이 체결되고, 「자기차량손해 초과수리비 보상 특별약관」이 체결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보통약관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1호 가 (1)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 제2조 보상내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5조(보상한도)

피보험자동차가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고로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 사고 직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수리비가 사고발생 당시 보험기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수리를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고발생 당시 보험기액의 150% 한도 내에서 초과 수리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입당시의 차량기액보다 적은 경우 및 도난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3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담보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손해」,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이 체결되고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내용)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다른 자동차 (다른 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다른 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다른 자동차의 일부로 보지 않습니다)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1. 타차 또는 타 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2.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한 차체에 생긴 손해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다른 자동차라 함은

- ① 자기용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 [승용자동차(다인승1종·2종 승용자동차를 포함합니다), 경·3중승합 자동차 및 경·4중화물자동차 간에는 동일한 차종으로 봅니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2.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보험회사가 보통약관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승인을 한 때까지의 대체자동차
- ② 사업용자동차 중 승차정원 10인승 이하의 대여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대여사업자로부터 8일 이상 대여받은 자동차가 아닌 것
 2.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3. 대여시 소요되는 대차비용을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경우의 자동차가 아닌 것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고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동차에 적용되는 또 다른 보험계약이 있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다른자동차의 단독사고(가해자 불명사고를 포함합니다) 또는 일방과실사고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④ 다른자동차의 경미한 손상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경미한 손상이라 함은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을 말합니다.

제3조(피보험자)

①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 ②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 사용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가 소속한 법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합니다)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 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4. 다른 자동차가 <용어풀이>의 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피보험자가 요금 또는 대가를 지불하거나 받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5. 다른 자동차가 <용어풀이>의 ②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피보험자가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6.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5조(보상한도)

- ①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다른 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을 합친 금액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 ② 보험회사가 다른 자동차의 매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금액의 한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입금액보다 많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그러나, 이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한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을 위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은 보상한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보상합니다.

제6조(손해액의 결정)

- ①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기명피보험자가 가입한 차량의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합니다.
- ② 다른 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만드는 데 드는 수리비. 다만, 잔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공제합니다.
- ③ 다른 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 비용을 합한 금액. 다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준 부분품의 감가상각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 ④ 다른 자동차가 제함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가까운 정비공장이나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 데 든 비용 또는 그 곳

까지 운반하는 데 든 임시수리비용 중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7조(피해물에 대한 보험회사의 권리)

- ① 보험회사가 다른 자동차의 전부손해로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아니할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는 보험회사에 이전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입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입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제8조(현물보상)

보험회사는 다른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의 교부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3-1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담보 부모 및 자녀확대 추가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특별약관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담보 특별약관』이 체결된 경우
2.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에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또는 자녀가 포함된 경우

제2조(보상내용)

-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다른 자동차 (다른 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다른 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다른 자동차의 일부로 보지 않습니다)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1. 타차 또는 타 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2.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다른 자동차라 함은

- ① 자가용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 [승용자동차(다인승1종·2종 승용자동차를 포함합니다), 경·3종승합 자동차 및 경·4종화물자동차 간에는 동일한 차종으로 봅니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2.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보험회사가 보통약관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승인을 한 때까지의 대체자동차

- ② 사업용자동차중 승차정원 10인승 이하의 대여자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대여자업무로부터 8일 이상 대어받은 자동차가 아닌 것
 2.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3. 대여시 소요되는 대차비용을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경우의 자동차가 아닌 것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 아래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상할 금액이 아래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1. 다른 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
2. 다른 자동차를 운전한 피보험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
3. 다른 자동차를 운전한 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배우자라 함은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 ③ 다른자동차의 단독사고(가해자 불명사고를 포함합니다) 또는 일방과실사고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 ④ 다른자동차의 경미한 손상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경미한 손상이라 함은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을 말합니다.

제3조(피보험자)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2. 기명피보험자의 자녀
- ②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 ①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부모라 함은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를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자녀라 함은
 1.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2.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를 말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 사용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가 소속한 법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합니다)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 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4. 다른 자동차가 <용어풀이>의 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피보험자가 요금 또는 대가를 지불하거나 받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5. 다른 자동차가 <용어풀이>의 ②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피보험자가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6.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5조(보상한도)

- ①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다른 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을 합친 금액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 ② 보험회사가 다른 자동차의 매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금액의 한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입액보다 많은 때에는 보험가입액을 한도로 합니다. 그러나, 이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한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을 위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은 보상한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보상합니다.

제6조(손해액의 결정)

- ①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기명피보험자가 가입한 차량의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합니다.
- ② 다른 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만드는 데 드는 수리비, 다만, 잔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공제합니다.
- ③ 다른 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 비용을 합친 금액, 다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 ④ 다른 자동차가 제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가까운 정비공장이나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 데 든 비용 또는 그 곳까지 운반하는 데 든 임시수리비용 중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7조(피해물에 대한 보험회사의 권리)

- ① 보험회사가 다른 자동차의 전부손해로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아니할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는 보험회사에 이전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입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입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제8조(현물보상)

보험회사는 다른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응품의 교부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 차량 신가보상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이 체결되고, 「차량 신가보상 특별약관」이 체결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보험기간 개시일이 피보험자동차의 **최초차량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자동차는 보험기간 개시일이 최초 차량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면서, **최초출고년도**와 보험기간 시작년도가 같은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최초차량등록일**⁸⁷⁾이라 함은 차량출고 이후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로 처음 등록된 일자를 말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최초출고년도**라 함은 자동차 제작회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신조자동차를 출고한 년도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한 번의 사고로,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의한 손해가 전부손해이거나, 그 수리비용이 보험가입금액의 70%이상이고 피보험자가 수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신가보상 보험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1. 신가보상 보험금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과 다른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을 공제한 금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입당시의 **차량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입당시의 차량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차량가액을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차량가액**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산출한 해당 차량의 기준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차량의 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의 구입당시 차량가액으로 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87) **최초차량등록일**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신규로 등록된 일자를 말합니다. 다만, 말소 등록된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한 경우에는 말소등록 이전에 최초로 신규 등록된 일자를 말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동차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5 자기차량손해 대여자동차지원 특별약관II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이 체결되고, 「자기차량손해 대여자동차지원 특별약관」이 체결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된 때에는 피보험자동차의 대체교통수단으로 **피보험자동차와 동종의 국내산 자동차**를 대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하 '대여차비용'이라 합니다)을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동차와 동종의 국내산 자동차**라 함은 대한민국 내에서 생산된 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와 연식, 배기량, 법정승차정원, 차의 구조 등이 유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소유, 관리하는 대여자동차를 말합니다.

제3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5조(대여차비용의 지급)

보험회사가 매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대여차비용은 다음의 대여차비용 인정기간을 한도로 대여차비용 인정기간액에 의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1. 대여차비용 인정기간
 - 가. 수리가 가능한 경우 : 최대 30일을 한도로 실제수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하며, 외국산자동차로서 부품조달에 소요되는 기간과 부당한 수리 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인정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 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 10일을 한도로 실제로 차량을 대여한 기간
 - 다. 도난의 경우 : 경찰관서에 신고한 날로부터 30일을 한도로 실제로 차량을 대여한 기간으로 하며, 30일 이내에 도난 자동차를 찾은 때에는 도난 자동차를 발견한 날까지를 한도로 실제 차량을 대여한 기간으로 함

니다.

2. 대여차비용 인정기준액

가. 실제로 대여자동차를 대차한 경우: 차량만을 대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첨부] 1일당 차종별 대여차비용 한도금액 내에서 실제로 소요된 비용. 다만,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동차와 동종의 국내산 자동차를 대여하여 제공한 때에는 [첨부] 1일당 차종별 대여차비용 한도금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 대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보험자동차와 동종의 국내산 자동차를 대여하는데 소요되는 통상 요금의 30%에 실제수리기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1일 지급한도는 [첨부] 1일당 차종별 대여차비용 한도금액의 30%로 합니다.

3.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의해 보상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첨부] 1일당 차종별 대여차비용 한도금액

소형 (배기량 1,600cc이하)	중형 (배기량 1,600cc초과 ~2,000cc이하)	대형 (배기량 2,000cc초과 ~3,000cc이하)	대형 (배기량 3,000cc초과)	다인승 (법정승차정원 7인이상~10인 이하)
74,000원	121,000원	216,000원	304,000원	137,000원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6 대여자동차 차량손해 담보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자기차량손해 대여자동차지원 특별약관 II」에 가입한 경우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내용)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대여자동차를 운전 중(주차 또는 정차중을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대여자동차(대여자동차에 통상적으로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대여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대여자동차의 일부로 보지 않습니다)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 타차 또는 타 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대여자동차라 함은 「자기차량손해 대여자동차지원 특별약관 II」에 의해 피보험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대여시 소요되는 대여차 비용을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경우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 제1항에 해당하는 사고에도 불구하고 대여자동차에 적용되는 또 다른 보험계약이 있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대여자동차의 단독사고(가해자 불명사고를 포함합니다) 또는 일방과실사고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 대여자동차의 경미한 손상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경미한 손상이라 함은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을 말합니다.

제3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를 대여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제1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대여자동차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대여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피보험자가 대여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 이외의 자가 대여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대여자동차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제5조(보상한도)

-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대여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을 합친 금액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 보험회사가 대여자동차의 매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금액의 한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의 보험가입금액(다만,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과 대여자동차의 보험가액 중 낮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그러나, 이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한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을 위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은 보상한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보상합니다.

제6조(손해액의 결정)

-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기명피보험자가 가입한 차량의 보험가입금액과 대여자동차의 보험가액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합니다.
- 대여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만드는 데 드는 수리비. 다만, 잔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공제합니다.
- 대여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품품을 쓴 경우에는, 그 부품품의 값과 그 부착 비용을 합한 금액. 다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품품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품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합니다.

- ④ 대여자동차가 제함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가까운 정비공장이나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 데 든 비용 또는 그 곳 까지 운반하는 데 든 임시수리비용 중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7조(피해물에 대한 회사의 권리)

- ① 보험회사가 대여자동차의 전부손해로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아니할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는 보험회사에 이전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제8조(현물보상)

보험회사는 대여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응품의 교부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7 레포츠헬품 손해담보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을 가입하고 『레포츠헬품 손해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고로(피보험자동차 도난(레포츠헬품 포함) 및 가해자가 불명한 자기차량손해 사고)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적재하고 있던 레포츠헬품의 직접적인 손해를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에 의한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동차의 손해액(손해액 산정시 이 특별약관에서 담보하는 레포츠헬품의 손해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이 200만원을 초과하거나, 전부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가해자가 불명한 자기차량손해사고란 주차가 허용된 장소에 주차 중 발생한 관리상 과실이 없는 자기차량손해 사고를 말합니다.

용어풀이

- ① 이 특별약관에서 레포츠헬품이란 등산, 캠핑, 여행, 낚시 장비, 스포츠용 운동장비(골프채, 자전거, 테니스, 볼링, 인라인 스케이트, 스키 등)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합니다. 단, 착용 중인 의류, 휴대품 및 전자기기(휴대전화기, PC, 노트북, 게임기, PMP, MP3, 전자사전 등)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에서 휴대품이란 통상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지갑, 만년필, 라이터, 손목시계, 귀금속, 기타 장신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합니다.

제3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4조(손해액의 결정)

- ①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곳과 때의 레포츠헬품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합니다.
- ② 레포츠헬품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만드는데 드는 수리비를 손해액으로 합니다. 다만, 잔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공제합니다.
- ③ 레포츠헬품을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 비용을 합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합니다.
- ④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보상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5조(보상한도)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레포츠헬품은 매사고당 100만원을 한도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제6조(피해물에 대한 회사의 권리)

보험회사가 레포츠헬품의 전부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가 보험회사에 이전되지 않습니다.

제7조(현물보상)

보험회사는 레포츠헬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응품의 교부로서 보험금의 지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8 자기차량손해 확대보상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이 체결되고, 「자기차량손해 확대보상 특별약관」이 체결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간접손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다른 차량의 일방과실로 인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는 보상하

지 않습니다.

1.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간접손해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대체교통비용 보험금

(1)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대체교통비용 보험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 보험금	=	보험증권에 기재된 1일 대체교통비용 보험금	×	대체교통비용 인정기간
-----------	---	----------------------------	---	----------------

(2) 위 '대체교통비용 인정기간'은 총 30일을 한도로 다음의 기간을 말합니다.

(가) 수리가 가능한 경우

최대 30일을 한도로 실제수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하며, 외국 산자동차로서 부품조달에 소요되는 기간과 부당한 수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인정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 10일

(다) 도난의 경우

경찰관서에 신고한 날로부터 30일을 한도로 하며, 30일 이내에 도난 자동차를 찾은 때에는 도난 자동차를 발견한 날까지로 합니다.

나. 전손시 대체차량 등록비용 보험금

직접손해에 의한 전부손해가 발생하여 차량을 대체하는 경우 100만원을 한도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의 7%내에서 실제로 차량을 대체하는데 소요된 등록세 및 취득세 비용을 지급합니다.

다. 원격시 사고시 차량운반비용 보험금

피보험자동차가 주행불능 되었을 때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영수증 등을 제출받아 보험회사가 그 지출목적, 금액, 기타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 인정한 다음의 필요타당한 비용을 20만원을 한도로 실비 지급합니다.

(1) 주행불능된 피보험자동차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의 주소지 근처의 정비공장이나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장소에 운반하는데 소요된 비용

(2) 사고발생지 근처의 정비공장 등에서 수리를 종료한 후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 주소지 근처의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장소까지 견인차 등에 의해 운반하는데 소요된 비용

제3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6편 사고처리시 필요 비용지원

1 형사합의금 지원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대인배상Ⅱ」를 가입하고 『형사합의금 지원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형사상 책임을 지거나,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중상해를 입혀 발생된 손해에 대해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3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위의 자를 말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대인배상Ⅱ」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4.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5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① 이 특별약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고로 피보험자가 형사합의를 한 경우, [첨부] 형사합의금 지급기준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보상합니다. 다만, 법원에 공탁한 경우에는 실제 공탁금액을 보상한 도액 내에서 지급하고, 향후 피보험자가 공탁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형사합의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가 타인을 사망케 한 사고
2. 피보험자가 <별표 7>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고(다만 이 단서 중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은 제외합니다)를 일으켜 타인을 다치게 한 사고로 피해자가 42일이상 치료(입원 및 통원을 포함합니다)를 요한다는 최초 진단(추가진단은 인정하지 않습니다)을 받은 사고
3.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중상해를 입힌 사고로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사고

[첨부] 형사합의금 지급기준

구 분		일반형	고급형
1인당 지급한도	사망	2,000만원	3,000만원
	상해 등급	1~3급	3,000만원
		4~7급	500만원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한.

- 제1항의 타인 사망에 따른 형사합의금을 지급함에 있어 부상으로 지급한 형사합의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이 특별약관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에,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게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text{형사합의금} =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특별약관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text{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타인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합의금을 배상책임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액을 별도로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형사합의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용어풀이

- 이 특별약관에서 타인이라 함은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운전보조자를 포함합니다)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사람을 말합니다.
- 제1항에서 부모라 함은 부모와 양부모를 말하며,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며, 자녀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시 제출서류)

-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 등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나 증거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 검찰에 의해 기소⁸⁸⁾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생한 공소⁸⁹⁾장
 -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 명시)
- 보험금 청구서

- 법원에 공탁한 경우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한 공탁(확인)서 및 공탁금 회수제한 신고서
 - 기타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
- ② 이 특별약관 제5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제5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합의금액을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보험금(형사합의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보험회사 양식)
 -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또는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상해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그 밖에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7조(피보험자동차 운전자 이외의 자의 보험금 청구)

-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 사망, 구속, 형집행 등으로 보험금의 청구가 곤란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 운전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의 순위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 변호사선임비용 지원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대인배상II」를 가입하고, 「변호사선임비용 지원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3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위의 자를 말합니다.

88) 기소(起訴) 검사가 범죄사실을 확인한 후 범죄 심리를 법원에 넘기기 위해 정식 서면고발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공판기소와 약식기소가 있습니다. 공판기소는 직접피의자가 재판청에 나가서 판사에게 재판받는 것이며 약식기소는 사건을 정리해 놓은 서류만으로 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89) 공소(公訴) 검사가 특정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재판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대인배상II」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자동차의 운전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피보험자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 피보험자자동차의 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4.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5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 ① 이 특별약관은 다음의 사고에 대하여 [첨부] 변호사선임비용 지급기준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1. 피보험자자동차의 운전자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다만, 약식기소는 제외합니다)된 경우
 2.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의거,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또는 동법 제453조에 의거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첨부] 변호사선임비용 지급기준

구분	일반형	고급형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300만원	500만원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약식기소라 함은 「형사소송법」 제449조 규정에 의한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에,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text{변호사선임비용} =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특별약관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text{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제6조(보험금의 청구시 제출서류)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 등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나 증거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보험금 청구서
3.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소장, 판결문, 선임한 변호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

서 등)

4. 기타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

제7조(피보험자자동차 운전자 이외의 자의 보험금 청구)

- ① 피보험자자동차의 운전자가 사망, 구속, 형집행 등으로 보험금의 청구가 곤란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자동차 운전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의 순위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보험자자동차의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3 벌금비용 지원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대인배상II」를 가입하고 「벌금비용 지원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함으로써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3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위의 자를 말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대인배상II」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자동차의 운전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피보험자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 피보험자자동차의 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4.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5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 ① 이 특별약관은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자동차의 운전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사고마다 2천만원을 한도로 드립니다.
- ② 제1항의 벌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각각의 보험계약에 의

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을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text{보험비용} =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특별약관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text{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 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용어풀이

- 이 특별약관에서 타인이라 함은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운전보조자를 포함합니다)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사람을 말합니다.
- 제1항에서 부모라 함은 부모와 양부모를 말하며,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며, 자녀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시 제출서류)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 등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나 증거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보험금 청구서
3.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4. 법원의 판결문 사본
5. 기타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

제7조(피보험자동차 운전자 이외의 자의 보험금 청구)

- ①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사망, 구속, 형집행 등으로 보험금의 청구가 곤란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 운전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의 순위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7편 긴급출동서비스

1 한화 긴급출동 서비스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한화 긴급출동 서비스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긴급출동 서비스를 요청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해당하는 긴급출동 서비스를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업체를 통하여 제공합니다.

제3조(긴급출동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이 특별약관에서 제공하는 긴급출동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견인 서비스
 - 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피보험자동차의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현장조치 또는 10km 범위 내에서 가까운 정비공장까지 견인하여 드립니다. 다만, 10km를 초과하여 긴급견인을 하는 경우 1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하는 비용은 피보험자가 실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나. 차량의 구조변경 또는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 비상급유 서비스
 - 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연료의 소진으로 운행이 정지된 경우 긴급급유용으로 1일당 1회에 한하여 3ℓ를 한도로 연료를 주유하여 드립니다. 다만, 3ℓ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량에 대하여 실비를 받고 주유하여 드립니다.
 - 나.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이 연료의 소진으로 운행이 정지된 경우는 10km 범위 내에서 가까운 가스충전소까지 견인하여 드리며, 1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하는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다.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어 운행이 정지된 경우에 한하여 10km 범위 내에서 가까운 충전소까지 견인하여 드리며, 1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하는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3. 배터리 충전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배터리의 방전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임시적으로 배터리를 충전하여 드리며, 배터리 교환을 요청하는 경우 실비를 받고 교환하여 드립니다. 다만,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4. 타이어 펑크수리 및 교체서비스
 - 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피보험자동차 타이어의 지면에 닿은 타이어트레드 부분(접지면)에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구멍이 뚫

린 단순펍크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타이어 펍크를 수리하여 드립니다.

이 서비스는 타이어펍크 1개당 서비스 1회를 차감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야간, 눈 또는 비가 내리는 경우 등 펍크 위치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2) Run-flat형 타이어, 튜브형 타이어 등의 펍크와 같이 펍크 수리 시 특수장비가 필요한 경우
- (3) 타이어의 측면에 구멍이 뚫린 경우
- (4) 자연 마모로 인한 펍크 또는 타이어가 찢어진 경우
- (5) 기타 현장에서 타이어펍크 수리가 곤란한 경우

나. 위 '가'목에 의해 타이어펍크 수리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예비타이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타이어를 예비타이어로 교체하여 드립니다. 다만, 차량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5. 잠금장치해제 서비스

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차량의 열쇠를 분실하였거나 자동차 실내에 열쇠를 두고 차문을 잠근 경우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서비스를 요청하는 사람이 피보험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2) 트렁크 잠금장치 해제

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잠금장치 해제가 불가능한 차량의 경우 잠금장치해제 서비스는 제공되지 아니하며 별도의 전문업체에 잠금장치 해제를 의뢰하여 드립니다. 다만, 전문업체의 서비스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하며, 보험회사는 잠금장치 해제서비스 전문업체의 서비스 제공 지연 또는 미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 잠금장치 해제를 위하여 부득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파손된 부분의 원상회복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잠금장치 해제가 불가능한 차량이라 함은 외산차량 및 최근 출시된 국산 차량으로 특수 잠금장치(스마트키, 이모빌라이저 등)가 장착되어 있거나 사이드에어백의 장착 등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잠금해제가 불가능한 차량을 말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추가비용이라 함은 잠금장치해제 전문업체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통상적인 방법의 잠금장치 해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6. 브레이크액 / 엔진오일 / 파워오일보충 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브레이크액, 엔진오일, 파워오일의 부족으로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부족분을 보충하여 드립니다. 다만, 브레이크액은 1ℓ 이내, 엔진오일은 2ℓ 이내, 파워오일은 1ℓ 이내로 하고, 기준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량에 대하여 실비를 받고 보충하여 드립니다. 다만,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파워오일 보충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7. 라디에이터캡⁹⁰⁾ 교환 서비스

피보험자동차의 주행 중 라디에이터캡의 파손 및 불량으로 엔진과열시 라디에이터캡을 교환하여 드립니다. 다만, 특수 캡의 경우 실비를 받고 교환하여 드립니다.

8. 브레이크등 / 전조등 교환 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브레이크등, 전조등의 고장으로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하는 전구를 교환하여 드립니다. 다만, 특수등의 경우에는 실비를 받고 교환하여 드립니다.

9. 윈도우브러쉬 고무교환 서비스

우천시 또는 눈이 오는 때에 윈도우브러쉬 불량으로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피보험자동차의 앞쪽 운전석 윈도우브러쉬 고무부분을 새부품으로 교환하여 드립니다. 다만, 윈도우브러쉬 고무부분만 교환할 수 없는 경우 실비를 받고 윈도우브러쉬를 교환하여 드립니다.

10. 휴즈 교환 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휴즈단락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때에는 휴즈를 교환하여 드립니다. 다만, 엔진룸의 휴즈는 실비를 받고 교환하여 드립니다.

11. 현장응급조치 서비스

피보험자동차의 주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현장에서 응급조치가 가능한 차량 고장에 대해서는 응급조치를 하여 드립니다. 다만, 부품의 정비 또는 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12. 부동액보충 서비스

피보험자동차의 부동액 부족으로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부족분을 보충하여 드립니다.

13. 벨트 교환 서비스

피보험자동차의 도로상 주행 중 각종 벨트(팬벨트, 파워벨트)류의 절단 및 파손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벨트를 교환하여 드립니다. 다만, 현장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DOHC차량, 2000cc이상 차량 및 외산차량은 긴급견인 서비스로 대체하여 제공합니다.

14. 긴급구난 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도로를 이탈하거나, 장애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자력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긴급 구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별도의 구난장비 없이 구난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특수한 구난을 한 경우에는 실비를 받고 구난하여 드립니다. 또한 차량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특수한 구난을 한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 1. 2.5톤을 초과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한 경우
- 2. 2대 이상의 구난형 특수자동차가 구난한 경우

90) 라디에이터캡 자동차의 엔진 냉각기의 냉각수 주입구 마개를 의미합니다.

- 3. 구난작업을 시작하여 견인고리 연결 직전까지 소요된 시간이 30분을 초과하는 경우
- 4. 외산차량 및 2500cc 이상의 국산차량을 구난한 경우
- 5. 기타 별도의 구난장비(세이프티 로더 등)를 사용하여 구난하는 경우
- 6. 특수지역(산간, 해안, 갯벌 등)으로 일반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이 불가능하여 특수장비(포크레인, 크레인, 트랙터, 사륜구동자동차 등)를 사용하는 경우

15. 무료점검 서비스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을 목적으로 무료점검(엔진, 하체, 전기부분을 말함니다)을 받고자 할 때에는 한화 긴급출동 서비스 지정 정비업체에 1~2일전 에 예약 방문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검받을 수 있습니다.

16. 검사대행 및 폐차대행 서비스

피보험자동차의 정기검사대행서비스, 폐차대행서비스를 실비를 받고 대행하여 드립니다.

제4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위의 자를 말합니다.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이 특별약관에서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긴급출동 서비스의 요청자가 통신교환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 2. 도서 또는 산간지방인 경우
 - 3. 기타 보험회사에서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제1호, 제2호, 제3호의 사유로 인해 긴급출동서비스의 지연 또는 미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간접손해
 - 5.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동의하에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손해(적재물의 손상, 멸실 등)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 보험회사에서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 1. 폭설, 폭우, 해일,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출동이 불가능한 경우
- 2. 대리운전을 요청하는 경우
- 3. 활어차, 적재정량이 초과된 화물차 등 이와 유사한 차량의 적재물의 중량으로 인하여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4. 제1호, 제2호, 제3호 이외에 통상적으로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서비스의 한도)

- 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횟수는 보험기간 중 총 5회까지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그 횟수를 아래와 같이 정합니다.
 - 1. 보험기간이 1년이며, 피보험자동차가 당사에 과거 직전 2년 동안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을 가입하고, 직전 2년 동안 이 특별약관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 : 7회
 - 2. 보험기간이 1년이며, 피보험자동차가 당사에 과거 직전 1년 동안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을 가입하고, 직전 1년 동안 이 특별약관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 : 6회

- 3. 보험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계약의 경우 : 3회
- ② 제1항에서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에는 횟수를 각각 산정합니다.
- ③ 제1항에서 이 특별약관 제3조(긴급출동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제16호는 횟수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자동해지)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 이 특별약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종료됨과 동시에 특별약관도 자동해지 됩니다.

- 1. 보험약관 「대인배상 1」이 종료된 때
- 2.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정해진 횟수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모두 제공한 때

제8조(특약보험료의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보험회사가 제공할 서비스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특별약관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 -1 긴급 견인서비스 확대 추가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추가특별약관은 한화긴급출동 서비스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한화긴급출동 서비스 특별약관의 제3조(긴급출동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의 1.긴급견인서비스를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구분	내용
고급형 (50km 한도)	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피보험자동차의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현장조치 또는 50km 범위내에서 가까운 정비공장까지 견인하여 드립니다. 다만, 50Km를 초과하여 긴급견인을 하는 경우 5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하는 비용은 피보험자가 실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차량의 구조변경 또는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2 한화 긴급출동 플러스 서비스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한화 긴급출동 플러스 서비스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긴급출동 서비스를 요청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해당하는 긴급출동 서비스를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업체를 통하여 제공합니다.

제3조(긴급출동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이 특별약관에서 제공하는 긴급출동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견인 서비스

- 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피보험자동차의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현장조치 또는 30km 범위 내에서 가까운 정비공장까지 견인하여 드립니다. 다만, 30km를 초과하여 긴급견인을 하는 경우 3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하는 비용은 피보험자가 실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나. 차량의 구조변경 또는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 비상급유 서비스

- 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연료의 소진으로 운행이 정지된 경우 긴급운행용으로 1일당 1회에 한하여 5ℓ를 한도로 연료를 주유하여 드립니다. 다만, 5ℓ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량에 대하여 실비를 받고 주유하여 드립니다.
- 나.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이 연료의 소진으로 운행이 정지된 경우는 30km 범위 내에서 가까운 가스충전소까지 견인하여 드리며, 3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하는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다.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어 운행이 정지된 경우에 한하여 30km 범위 내에서 가까운 충전소까지 견인하여 드리며, 3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하는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3. 배터리 충전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배터리의 방전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임시적으로 배터리를 충전하여 드리며, 배터리 교환을 요청하는 경우 실비를 받고 교환하여 드립니다. 다만,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4. 타이어 펑크수리 및 교체서비스

- 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피보험자동차 타이어의 지면에 달은 타이어트레드 부분(접지면)에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구멍이 뚫린 단순펑크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타이어 펑크를 수리하여 드립니다. 이 서비스는 타이어펑크 1개당 서비스 1회를 차감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아간, 눈 또는 비가 내리는 경우 등 펑크 위치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2) Run-flat형 타이어, 튜브형 타이어 등의 펑크와 같이 펑크 수리 시 특수장비가 필요한 경우
 - (3) 타이어의 측면에 구멍이 뚫린 경우
 - (4) 자연 마모로 인한 펑크 또는 타이어가 찢어진 경우
 - (5) 기타 현장에서 타이어펑크 수리가 곤란한 경우
- 나. 위 '가'목에 의해 타이어펑크 수리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예비타이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타이어를 예비타이어로 교체하여 드립니다. 다만, 차량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5. 잠금장치해제 서비스

- 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차량의 열쇠를 분실하였거나 자동차 실내에 열쇠를 두고 차문을 잠근 경우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서비스를 요청하는 사람이 피보험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2) 트렁크잠금장치 해제
- 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잠금장치 해제가 불가능한 차량의 경우 잠금장치해제 서비스는 제공되지 아니하며 별도의 전문업체에 잠금장치 해제를 의뢰하여 드립니다. 다만, 전문업체의 서비스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하며, 보험회사는 잠금장치해제서비스 전문업체의 서비스 제공 지연 또는 미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다. 잠금장치 해제를 위하여 부득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파손된 부분의 원상회복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잠금장치 해제가 불가능한 차량이라 함은 외산차량 및 최근 출시된 국산 차량으로 특수 잠금장치(스마트키, 이모빌라이저 등)가 장착되어 있거나 사이드어어백의 장착 등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잠금해제가 불가능한 차량을 말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추가비용이라 함은 잠금장치해제 전문업체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통상적인 방법의 잠금장치 해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6. 브레이크액 / 엔진오일 / 파워오일보충 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브레이크액, 엔진오일, 파워오일의 부족으로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부족분을 보충하여 드립니다. 다만, 브레이크액은 1ℓ 이내, 엔진오일은 2ℓ 이내, 파워오일은 1ℓ 이내로 하고, 기준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량에 대하여 실비를 받고 보충하여 드립니다. 다만,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파워오일 보충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7. 라디에이터캡 교환 서비스

피보험자동차의 주행 중 라디에이터캡의 파손 및 불량으로 엔진과열시 라디에이터캡을 교환하여 드립니다. 다만, 특수 캡의 경우 실비를 받고 교환하여 드립니다.

8. 브레이크등 / 전조등 교환 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브레이크등, 전조등의 고장으로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하는 전구를 교환하여 드립니다. 다만, 특수등의 경우에는 실비를 받고 교환하여 드립니다.

9. 윈도우브러쉬 고무교환 서비스

우천시 또는 눈이 오는 때에 윈도우브러쉬 불량으로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피보험자동차의 앞쪽 운전석 윈도우브러쉬 고무부분을 새부품으로 교환하여 드립니다. 다만, 윈도우브러쉬 고무부분만 교환할 수 없는 경우 실비를 받고 윈도우브러쉬를 교환하여 드립니다.

10. 휴즈 교환 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휴즈단락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때에는 휴즈를 교환하여 드립니다. 다만, 엔진룸의 휴즈는 실비를 받고 교환하여 드립니다.

11. 현장응급조치 서비스

피보험자동차의 주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현장에서 응급조치가 가능한 차량 고장에 대해서는 응급조치를 하여 드립니다. 다만, 부품의 정비 또는 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12. 부동액보충 서비스

피보험자동차의 부동액 부족으로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부족분을 보충하여 드립니다.

13. 벨트 교환 서비스

피보험자동차의 도로상 주행 중 각종 벨트(팬벨트, 파워벨트)류의 절단 및 파손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벨트를 교환하여 드립니다. 다만, 현장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DOHC차량, 2000cc 이상 차량 및 외산차량은 긴급견인 서비스로 대체하여 제공합니다.

14. 긴급구난 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도로를 이탈하거나, 장애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자력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긴급 구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별도의 구난장비 없이 구난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특수한 구난을 한 경우에는 실비를 받고 구난하여 드립니다. 또한 차량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특수한 구난을 한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1. 2.5톤을 초과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한 경우
2. 2대 이상의 구난형 특수자동차가 구난한 경우
3. 구난작업을 시작하여 견인고리 연결 직전까지 소요된 시간이 30분을 초과하는 경우
4. 외산차량 및 2500cc 이상의 국산차량을 구난한 경우
5. 기타 별도의 구난장비(세이프티 로더 등)를 사용하여 구난하는 경우
6. 특수지역(산간, 해안, 갯벌 등)으로 일반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이 불가능하여 특수장비(포크레인, 크레인, 트랙터, 사륜구동자동차 등)를 사용하는 경우

15. 검사대행 및 폐차대행 서비스

피보험자동차의 정기검사대행서비스, 폐차대행서비스를 실비를 받고 대행하여 드립니다.

16. 차량진단 서비스

피보험자동차의 차량진단을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정비업체에 예약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30가지 주요항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차량진단 내역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다만, 차량진단서비스는 보험기간중 1회에 한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30가지 주요항목이라 함은 엔진오일, 미션오일, 파워오일, 브레이크액, 타이밍 벨트, 팬벨트, 배터리, 스탠트모터, 알터네이터, 플러그배선, 점화플러그, 클러치, 클러치실린더, 배기파이프, 소음기, 부동액(냉각수), 라디에이터호스, 주차브레이크, 브레이크패드(라이닝), 에어컨 벨트, 타이어공기압, 타이어마모, 예비타이어, 에어컨(히타), 헤드램프(안개등), 브레이크등, 워셔액, 와이퍼브레이드, 경음기, 실내등을 말합니다.

17. 정비이력관리 서비스

보험회사가 지정한 정비업체에서 정비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리내역, 소모품 교환주기, 차량사항 등을 기록한 정비이력통장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드립니다.

18. 수리차량운반 서비스

고장으로 인해 피보험자동차를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정비업체에서 수리할 경우, 작업시간이 1시간이상 소요될 때에는 수리완료 후 고객이 지정하는 장소로 운반하여 드립니다. 수리 차량운반 서비스는 보험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소모품 교환 등 단순 수리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다만, 운반거리가 10km를 초과하는 경우 1km당 2,000원의 초과비용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하며, 운반거리는 50km를 한도로 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작업시간이 1시간이상 소요란 정비작업장에서 수리가 시작된 후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시간으로, 차량진단서비스에 소요되는 시간은 제외합니다.

제4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위의 자를 말합니다.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 특별약관에서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긴급출동 서비스의 요청자가 통신교환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2. 도서 또는 산간지방인 경우
3. 기타 보험회사에서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1호, 제2호, 제3호의 사유로 인해 긴급출동서비스의 지연 또는 미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간접손해
5.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동의하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손해(적재물의손상, 멸실 등)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 보험회사에서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1. 폭설, 폭우, 해일,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출동이 불가능한 경우
2. 대리운전을 요청하는 경우
3. 활어차, 적재정량이 초과된 화물차 등 이와 유사한 차량의 적재물의 중량으로 인하여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4. 제1호, 제2호, 제3호 이외에 통상적으로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서비스의 한도)

- 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횟수는 보험기간 중 총 5회까지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그 횟수를 아래와 같이 정합니다.
 1. 보험기간이 1년이며, 피보험자동차가 당사에 과거 직전 2년 동안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을 가입하고, 직전 2년 동안 이 특별약관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 : 7회
 2. 보험기간이 1년이며, 피보험자동차가 당사에 과거 직전 1년 동안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을 가입하고, 직전 1년 동안 이 특별약관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 : 6회
 3. 보험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계약의 경우 : 3회
- ② 제1항에서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에는 횟수를 각각 산정합니다.
- ③ 제1항에서 이 특별약관 제3조(긴급출동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제15호 ~ 제18호는 횟수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자동해지)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 이 특별약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종료됨과 동시에 특별약관도 자동해지 됩니다.

1. 보험약관 「대인배상 I」이 종료된 때
2.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정해진 횟수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모두 제공한 때

제8조(특약보험료의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보험회사가 제공할 서비스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특별약관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한화 긴급출동 플러스 특별약관의 제3조(긴급출동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의 1.긴급견인서비스를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구분	내용
고급형 (50km 한도)	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피보험자동차의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현장조치 또는 50km 범위내에서 가까운 정비공장까지 견인하여 드립니다. 다만, 50Km를 초과하여 긴급견인을 하는 경우 5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하는 비용은 피보험자가 실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차량의 구조변경 또는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2 -1 긴급 견인서비스 확대 추가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추가특별약관은 한화 긴급출동 플러스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8편 녹색상품

1 승용차요일제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정보(이하 '운행정보'라 합니다)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하 '운행정보 확인장치'라 합니다)를 장착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의무보험의 보험기간 동안 비운행 약정요일에 운행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고 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보험의 보험기간 중도에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중도 가입 이전에 이 특별약관을 해지한 가입자로서 특약 가입기간 동안의 운행정보를 송부하지 않은 경우
 - 중도 가입 이전에 이 특별약관을 해지한 가입자로서 특약 가입기간 동안 비운행 약정요일에 1회 이상 운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중도 가입 이전에 이 특별약관을 3회 이상 해지한 가입자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운행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가 주행하여 거리 이동이 있는 경우로 당해 비운행 약정요일 당일에 주행한 총 거리의 합이 1km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운행정보 확인장치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의 요일별 운행여부를 포함한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그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장치로서 보험개발원 부설 자동차기술연구소의 기술인증을 부여받은 장치를 말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비운행 약정요일이라 함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하루로서 이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운행하지 않기로 약정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요일(07:00부터 22:00까지만 해당됩니다)을 말합니다. 다만, 운행하지 않는 요일이 법정공휴일(국가에서 정한 임시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포함합니다)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2조(특별약관 계약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부착하고 책임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피보험자동차의 차량정보, 운행정보 확인장치의 모델명, 제품식별번호 및 기타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전송하여야 합니다.
- 책임개시일로부터 15일 이전까지 제1항의 정보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3조(운행정보의 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에 전체 운행정보가 정상적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보험기간 첫날로부터 만료일까지의 운행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운행정보 확인장치 부착일이 보험기간 첫날 이후인 경우에는 부착일로부터 만료일까지의 운행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가 교체(대체)된 경우에는 교체(대체)된 날(보통약관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가 승인한 날을 말합니다)로부터 7일 이내에 이 특별약관 제2조(특별약관 계약전 알릴 의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 보험기간 중에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교체할 경우에는 교체 이전에 기존 운행정보 확인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하며, 기존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분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체한 운행정보 확인장치의 정보를 이 특별약관 제2조(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송하여야 합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비운행 약정요일에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운행정보의 전송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보를 송부하여야 하며, 운행정보를 송부하지 않는 경우 운행중 사고로 간주합니다.

제4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자가 이 특별약관 제3조(운행정보의 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2항의 정보를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의 정보를 송부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됩니다.

제5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3조(운행정보의 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하여야 하는 운행정보를 기한 내에 송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6조(보험료 정산 환급 등)

-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3조(운행정보의 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 받은 운행정보를 지체 없이 확인하여야 합니다.
 - 비운행 약정요일에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한 일수가 3일 이하인 경우에는 운행정보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계약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첨부]의 보험료 정산금액을 송금하여 드립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한 일수는 이 특별약관 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일 이하,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2일 이하로 합니다.
 - 의무보험 가입기간 중도에 이 특별약관 해지 후 보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운행정보를 송부한 경우에는 의무보험 가입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1호에 따라 보험료 정산금액을 송금하여 드립니다.
- 비운행 약정요일에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한 일수가 4일 이상(단, 이 특별약관 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2일 이상,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3일 이상으로 합니다)인 경우에는 보험료 정산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 가입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비운행 약정요일

에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한 일수에 무관하게 보험료 정산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비운행 약정요일에는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1. 이 특별약관 제3조(운행정보의 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 사항) 제3항,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7일 기간 동안
 - 2. 보험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운행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확인이 불가능한 당해 기간
- ④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비운행 약정요일에는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1. 운행정보의 미전송 또는 지연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운행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확인이 불가능한 당해 기간
 - 2. 운행정보 확인장치의 불량·오작동, 운행정보의 훼손 등에 따라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확인이 불가능한 당해 기간
 - 3. 비운행 약정요일에 운행정보 확인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경우
 - 4. 이 특별약관 제3조(운행정보의 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 사항) 제3항,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일을 초과하여 정보를 전송한 경우 초과한 날로부터 정보를 전송한 날까지의 기간 중 운행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당해 기간
- ⑤ 보험계약자는 제1항의 은행계좌 번호가 변경되거나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7조(비운행 약정요일의 변경)

비운행 약정요일은 보험기간 중 2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7일 이전에 보험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첨부] 보험료 정산금액

$$\text{정산금액} = \text{이 특별약관 가입기간의 적용보험료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 제외)} \times \text{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

(주) 보험회사는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 운행정보를 제공받은 날(보험기간 만료일 이전에 운행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료를 정산하여 드립니다. 다만,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 동안의 이차금액(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예금이율)까지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2 친환경부품사용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합니다.

제2조(보상내용)

- ①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1호 가의 (3)을 다음으로 대체합니다.

- 1. 피보험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비용을 합한 금액. 다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합니다.
- 2. 제1호의 경우에서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부품(중고부품 또는 재제조부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새 부분품가격의 20%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부품(중고부품 또는 재제조부품)을 사용한 경우와 합은 보험개발원이 인정한 업체로부터 다음의 친환경부품을 공급받아 자동차를 수리한 경우를 말합니다.

- (1) 중고부품 : 사이드 미러, 프론트 팬더, 본넷, 라디에이터 그릴, 프론트 도어, 리어 도어, 트렁크 판넬, 프론트 범퍼, 리어 범퍼, 백 도어, 리어 피니셔, 쿨러 콘덴서, 테일 램프, 헤드 램프, 안개등, 룸미러(하이패스 기능), 전후방 센서
- (2) 재제조부품 : 교류발전기, 등속조인트 등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해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부품

용어풀이

새 부분품 가격이란 AOS(Arecom Online System)내등록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AOS내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 제작사에서 권장하는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AOS란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수리비견적 시스템을 말합니다)

- ②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4항 제2호를 다음으로 대체합니다.
 - 1. 「대물배상」 또는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 : 사고차량을 고칠 때에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부분품을 교체한 경우 교체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
 - 2. 제1호의 경우에서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부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새 부분품가격의 20%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다음을 말합니다.

- 1. 이 특별약관 제2조(보상내용) 제1항 제2호의 경우 기명피보험자
- 2. 이 특별약관 제2조(보상내용) 제2항 제2호의 경우 대물배상 대상차량의 소유자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①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대물배상」에 해당하는 사항,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2. 보험개발원이 인정하지 않은 업체로부터 친환경부품을 공급받아 피보험자동차 또는 대물배상 대상차량을 수리한 경우 새 부분품 가격과의 차액
 - 3.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친환경부품을 공급받아 피보험자동차를 수리한 경우 새 부분품 가격과의 차액

제5조(보험금의 환입)

- ① 보통약관 「대물배상」 또는 「자기차량손해」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청구포기 등의 사유로 보통약관 「대물배상」 또는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금을 전액 회사에 돌려줄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한 금액도 동시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부품을 사용하였으나 친환경부품의 하자 등으로 이미 사용된 친환경부품을 새 부품으로 다시 교체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서 지급한 금액을 보험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제6조(적용배제)

보험개발원의 인정 업체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친환경부품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3 ECO 마일리지 특별약관 (후정산)

제1조(적용대상)

- ① 이 특별약관은 보험기간이 1년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유지 중인 자동차보험 계약에 이 특별약관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잔여 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면서 다른 자동차보험 계약과의 보험기간 만료일을 일치시키기 위한 계약으로 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③ 위 '①' 또는 '②'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1. 「승용차요일제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
 -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주행거리 정보를 위조, 변조한 경력이 있거나 「ECO 마일리지 특별약관」을 가입하고 보험료 정산 방법에 따라 산출된 정산보험료를 회사로 반환하지 않은 경우

제2조(특별약관 계약전 알릴 의무)

- ① **운행정보 확인장치(OBD)로 운행정보를 확인하는 경우**
 -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운행정보 확인장치(OBD)를 부착하고, 책임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피보험자자동차의 차량정보, 운행정보 확인장치(OBD)의 모델명, 제품식별번호 및 기타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전송하여야 합니다.
 - 2. 책임개시일로부터 15일 이전까지 제1호의 정보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운행정보 확인장치(OBD)**라 함은 피보험자자동차의 주행거리를 포함한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그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장치로서 보험개발원 부설 자동차기술연구소의 기술인증을 부여받은 장치를 말합니다.

- ② **주행거리표시장치 계기판으로 운행정보를 확인하는 경우**

-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피보험자자동차의 주행거리표시장치 계기판의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및 기타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전송하여야 합니다.
- 2. 책임개시일로부터 7일 이전까지 제1호의 정보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3조(운행정보의 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만료일 전후 1개월 이내에 피보험자자동차의 1년간 주행거리 확인을 위하여 다음의 방법에 따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1. 운행정보 확인장치(OBD)로 운행정보를 확인하는 경우
보험기간 첫날로부터 만료일까지의 운행정보를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송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운행정보 확인장치(OBD) 부착일이 보험기간 첫날 이후인 경우에는 부착일로부터 만료일까지의 운행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 2. 주행거리표시장치 계기판으로 운행정보를 확인하는 경우
피보험자자동차의 1년간 주행거리 확인을 위하여 보험회사가 지정한 주행거리 확인 관리업체를 방문하거나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운행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 ②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자동차가 교체(대체)된 경우에는 교체(대체)된 날(보통약관 제49조(피보험자자동차의 교체)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가 승인한 날을 말함)로부터 3일 이내에 다음의 방법에 따라 운행정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1. 운행정보 확인장치(OBD)로 운행정보를 확인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3일 이내에 운행정보 확인장치(OBD)를 부착하고, 피보험자자동차의 차량정보, 운행정보 확인장치(OBD)의 모델명, 제품식별번호 및 기타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전송하여야 합니다.
 - 2. 주행거리표시장치 계기판으로 운행정보를 확인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3일 이내에 교체(대체) 이전 차량과 교체(대체) 이후 차량의 주행거리표시장치 계기판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및 기타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전송하여야 합니다.
- ③ **보험기간 중에 운행정보 확인장치(OBD)를 교체할 경우에는 교체 이전에 기존 운행정보 확인장치(OBD)에 저장된 정보를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3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존 운행정보 확인장치(OBD)를 분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교체한 운행정보 확인장치(OBD)를 부착하고, 운행정보 확인장치(OBD)의 모델명, 제품식별번호 및 기타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전송하여야 합니다.**
- ④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 특별약관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의 방법에 따라 운행정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1. 운행정보 확인장치(OBD)로 운행정보를 확인하는 경우
보험기간 첫날부터 해지시점까지의 운행정보를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송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운행정보 확인장치(OBD) 부착일이 보험기간 첫날 이후인 경우에는 부착일로부터 해지시점까지의 운행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2. 주행거리표시장치 계기판으로 운행정보를 확인하는 경우

보험기간 첫날부터 해지시점까지 주행거리 확인을 위하여 보험회사가 지정한 주행거리 확인 관리업체를 방문하거나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제4조(운행정보 확인에 관한 일반사항)

- ① 보험회사는 보험가입 기간중 사고 처리 및 긴급출동 서비스 제공시 피보험자 동차의 총주행거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② 운행정보 확인장치(OBD)로 운행정보를 확인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될 때에는 1시간 초과시 시간당 60km(1일 최고한도 500km)를 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1. 보험기간 동안 운행정보 확인장치(OBD)가 부착되지 아니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로 운행정보 확인장치(OBD)를 탈착한 경우
 - 2. 운행정보 확인장치(OBD)의 불량·오작동, 운행정보의 훼손 등에 따라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③ 주행거리표시장치 계기판으로 운행정보를 확인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될 때에는 1년간 주행거리가 1만8천km를 초과하여 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1.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 또는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표시장치 계기판 주행거리가 확인이 안되는 경우
 - 2.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표시장치 계기판의 불량·오작동 및 조작·교체 등에 따라 정확한 1년간 주행거리 확인이 안되는 경우
 - 3.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 표시장치 계기판 사진의 총 주행거리가 누락되어 1년간 주행거리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제5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됩니다.

-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3조(운행정보의 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2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하여야 하는 운행정보를 기한 내에 송부하지 않은 경우
-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제1항의 정보 및 제3조(운행정보의 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의 정보 송부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의 정보를 송부하는 경우
 - 나. 주행거리표시장치 계기판의 주행거리 정보를 임의로 조작하는 경우
 - 다. 주행거리표시장치 계기판 촬영사진의 원본을 임의로 조작하는 경우
 - 라. 운행정보 확인장치(OBD)의 전송 정보를 임의로 조작하는 경우

제6조(특별약관 계약의 취소)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가입제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성립한 경우,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7조(보험료 정산 환급 등)

- ①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3조(운행정보의 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1항,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 받은 운행정보를 지체 없이 확인하여 운행정보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회사에 고지한 보험계약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첨부1]의 보험료 정산금액을 송금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운행정보를 송부한 경우에는 의무보험 가입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료 정산금액을 송금하여 드립니다.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 동안의 이자금액(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에금이율)까지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의 은행계좌 번호가 변경되거나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을 제외하고 이 특별약관을 해지하여 이 특별약관의 가입기간이 3개월 미만일 때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정산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첨부1] 보험료 정산금액 계산

$$\text{보험료 정산금액} = \text{이 특별약관 가입기간의 적용보험료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 제외)} \times \text{1년간 주행거리별 할인율}$$

1년간 주행거리	적용보험료의
2,000km 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인율
2,000km 초과 3,000km 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인율
3,000km 초과 5,000km 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인율
5,000km 초과 7,000km 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인율
7,000km 초과 10,000km 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인율
10,000km 초과 12,000km 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인율
12,000km 초과 15,000km 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인율
15,000km 초과 18,000km 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인율
18,000km 초과	0%

[첨부2] 1년간 주행거리 계산

$$\text{1년간 주행 거리} = (\text{보험기간 만료시 고지된 주행거리} - \text{보험가입시 고지된 주행거리}) \times \frac{365(\text{윤년:366})}{\text{주행거리 계산 기간 (주)}}$$

(주) 주행거리 계산 기간이란 보험 가입시 주행거리를 고지한 날에서 보험기간 만료시 주행거리를 고지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4 ECO 마일리지 특별약관 (선택인)

제1조(적용대상)

- 이 특별약관은 『ECO 마일리지 특별약관(선택인)』을 가입하고, 보험기간이 1년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 보험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가입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승용차요일제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
 - 이 특별약관을 보험기간 중도에 가입하는 경우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주행거리 정보를 위조, 변조한 경력이 있거나 『ECO 마일리지 특별약관(선택인)』을 가입하고 보험료 정산 방법에 따라 산출된 정산보험료를 회사로 반환하지 않은 경우
-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의 연간 평균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확인된 피보험자동차의 연간 평균주행거리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자가 선택 가능한 약정주행거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2조(특별약관 계약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만료 후 보험료의 정산 환입을 위한 보험계약자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또는 신용카드 정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운행정보 확인장치(OBD)로 운행정보를 확인하는 경우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책임개시일 이전까지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표시장치 계기판의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및 기타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전송하여야 하며, 책임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운행정보 확인장치(OBD)를 부착하고, 책임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피보험자동차의 차량정보, 운행정보 확인장치(OBD)의 모델명, 제품식별번호 및 기타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전송하여야 합니다.
 - 제1호의 정보를 정해진 기한 내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운행정보 확인장치(OBD)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를 포함한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그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장치로서 보험개발원 부설 자동차기술연구소의 기술인증을 부여받은 장치를 말합니다.

- 주행거리표시장치 계기판으로 운행정보를 확인하는 경우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책임개시일 이전까지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표시장치 계기판의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및 기타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전송하여야 합니다.
 - 책임개시일 이전까지 제1호의 정보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3조(운행정보의 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만료일 전후 1개월 이내

에 피보험자동차의 1년간 주행거리 확인을 위하여 다음의 방법에 따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운행정보 확인장치(OBD)로 운행정보를 확인하는 경우
보험기간 첫날로부터 만료일까지의 운행정보를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송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운행정보 확인장치(OBD) 부착일이 보험기간 첫날 이후인 경우에는 부착일로부터 만료일까지의 운행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 주행거리표시장치 계기판으로 운행정보를 확인하는 경우
피보험자동차의 1년간 주행거리 확인을 위하여 보험회사가 지정한 주행거리 확인 관리업체를 방문하거나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운행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가 교체(대체)된 경우에는 교체(대체)된 날(보통약관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가 승인한 날을 말함)로부터 3일 이내에 다음의 방법에 따라 운행정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운행정보 확인장치(OBD)로 운행정보를 확인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3일 이내에 운행정보 확인장치(OBD)를 부착하고, 피보험자동차의 차량정보, 운행정보 확인장치(OBD)의 모델명, 제품식별번호 및 기타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전송하여야 합니다.
 - 주행거리표시장치 계기판으로 운행정보를 확인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3일 이내에 교체(대체) 이전 차량과 교체(대체) 이후 차량의 주행거리표시장치 계기판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및 기타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전송하여야 합니다.
 - 보험기간 중에 운행정보 확인장치(OBD)를 교체할 경우에는 교체 이전에 기존 운행정보 확인장치(OBD)에 저장된 정보를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3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존 운행정보 확인장치(OBD)를 분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교체한 운행정보 확인장치(OBD)를 부착하고, 운행정보 확인장치(OBD)의 모델명, 제품식별번호 및 기타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전송하여야 합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 특별약관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의 방법에 따라 운행정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운행정보 확인장치(OBD)로 운행정보를 확인하는 경우
보험기간 첫날부터 해지시점까지의 운행정보를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송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운행정보 확인장치(OBD) 부착일이 보험기간 첫날 이후인 경우에는 부착일로부터 해지시점까지의 운행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 주행거리표시장치 계기판으로 운행정보를 확인하는 경우
보험기간 첫날부터 해지시점까지 주행거리 확인을 위하여 보험회사가 지정한 주행거리 확인 관리업체를 방문하거나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제4조(운행정보 확인에 관한 일반사항)

- ① 보험회사는 보험가입 기간중 사고 처리 및 긴급출동 서비스 제공시 피보험자 동차의 총주행거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② 운행정보 확인장치(OBD)로 운행정보를 확인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될 때에는 1시간 초과시 시간당 60km(1일 최고한도 500km)를 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1. 보험기간 동안 운행정보 확인장치(OBD)가 부착되지 아니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로 운행정보 확인장치(OBD)를 탈착한 경우
 - 2. 운행정보 확인장치(OBD)의 불량·오작동, 운행정보의 훼손 등에 따라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③ 주행거리표시장치 계기판으로 운행정보를 확인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될 때에는 1년간 주행거리가 1만8천km를 초과하여 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1.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 또는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표시장치 계기판의 주행거리가 확인이 안되는 경우
 - 2.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표시장치 계기판의 불량·오작동 및 조작·교체 등에 따라 정확한 1년간 주행거리 확인이 안되는 경우
 - 3.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 표시장치 계기판 사진의 총 주행거리가 누락되어 1년간 주행거리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제5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됩니다.

-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3조(운행정보의 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2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하여야 하는 운행정보를 기한 내에 송부하지 않은 경우
-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제1항의 정보 및 제3조(운행정보의 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의 정보 송부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의 정보를 송부하는 경우
 - 나. 주행거리표시장치 계기판의 주행거리 정보를 임의로 조작하는 경우
 - 다. 주행거리표시장치 계기판 촬영 사진의 원본을 임의로 조작하는 경우
 - 라. 운행정보 확인장치(OBD)의 전송 정보를 임의로 조작하는 경우

제6조(특별약관 계약의 취소)

보험회사는 제1조(적용대상)의 가입제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성립한 경우,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7조(보험료 정산 환입 등)

-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동안 주행한 거리가 보험 가입시 약정한 주행거리를 초과할 경우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운행정보를 송부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6조(특별약관 계약의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 [첨부1] 보험료 정산금액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보험료 정산

금액이 '양수(+)' 값인 경우 보험회사는 운행정보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다만, 보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운행정보를 송부한 경우에는 의무보험 가입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계약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보험료 정산금액을 송금하여 드립니다. 다만, 10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 동안의 이차금액(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까지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④ 이 특별약관 [첨부1] 보험료 정산금액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보험료 정산금액이 '음수(-)' 값인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운행정보를 송부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산금액을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회사에 반환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회사에 고지한 보험계약자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또는 신용카드를 통하여 납입할 보험료를 자동 정산합니다.
- ⑥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5항의 은행 계좌번호 또는 신용카드 정보가 변경되거나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⑦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할 보험료 및 보험금에서 환입보험료를 상계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⑧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3조(운행정보의 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하여야 하는 운행정보를 기한 내에 송부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만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운행정보 등을 송부하여, 실제 주행거리가 보험료 할인대상임을 입증한 때에는 보험회사는 운행정보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환급할 보험료를 송금하여 드립니다.
- ⑨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을 제외하고 이 특별약관을 해지하여 이 특별약관의 가입기간이 3개월 미만일 때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첨부1] 보험료 정산금액 계산

$$\text{보험료 정산금액} = \left[\begin{array}{c} \text{이 특별약관 가입기간의} \\ \text{적용보험료} \\ \text{(긴급출동 서비스 특약 제외)} \end{array} \right] \times \left[\begin{array}{c} 1 - \text{정산시 할인율(주1)} \\ 1 - \text{보험가입시 할인율} \end{array} \right]$$

(주) 1. 정산시 할인율 = (영수보험료 / 적용보험료) × 정산시 할인율
 2. 보험기간 중 운행정보의 확인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정산시 할인율은 보험기간 만료시 운행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의 할인율을 따릅니다.

1년간 주행거리	적용보험료의
2,000km 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인율
2,000km 초과 3,000km 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인율
3,000km 초과 5,000km 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인율

1년간 주행거리	적용보험료의
5,000km 초과 7,000km 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인율
7,000km 초과 10,000km 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인율
10,000km 초과 12,000km 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인율
12,000km 초과 15,000km 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인율
15,000km 초과 18,000km 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인율
18,000km 초과	0%

[첨부2] 1년간 주행거리 계산

$$1\text{년간 주행거리} = \left(\text{보험기간 만료시 고지된 주행거리} - \text{보험가입시 고지된 주행거리} \right) \times \frac{365(\text{윤년} \cdot 366)}{\text{주행거리 계산 기간(주)}}$$

(주) 주행거리 계산 기간이란 보험 가입시 주행거리를 고지한 날에서 보험기간 만료시 주행거리를 고지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5 ECO 마일리지 할인형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 이 특별약관은 보험기간이 1년이고, 가입 전 연평균 주행거리가 1만km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유지 중인 자동차보험 계약에 이 특별약관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위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주행거리 정보를 위조, 변조한 경력이 있거나 주행거리 연동 상품을 가입하고 보험료 정산 방법에 따라 산출된 정산보험료를 회사로 반환하지 않은 경우
 - 이 특별약관 가입 시 보험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해 가입 전 연평균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용어풀이

- 이 특별약관에서 가입 전 연평균 주행거리라 함은 [첨부1] 가입 전 연평균 주행거리 계산에 따라 피보험자동차가 기명피보험자 소유로 등록된 이후의 총 주행거리를 연간 평균 주행거리로 환산한 것입니다. 다만, 1년 이상 가입한 주행거리 연동상품을 책임개시일 이전 3개월 이내에 정산한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정산 계약의 연간 주행거리를 가입 전 연평균 주행거리로 정합니다.
- 가입 전 연평균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경우
 - 피보험자동차가 기명피보험자 소유로 등록된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기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첨부1] 가입 전 연평균 주행거리 계산

$$\text{가입 전 연평균 주행거리} = \frac{\text{기명피보험자 소유기간의 총 주행거리}}{\text{기명피보험자 소유기간(주)}} \times 365 (\text{윤년} \cdot 366)$$

(주) 기명피보험자 소유기간이란 피보험자동차가 기명피보험자 소유로 등록된 날로부터 보험 가입 시 주행거리를 고지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제2조(특별약관 계약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에서 할인받은 보험료의 반환 사유 발생 시 환입을 위한 보험계약자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또는 신용카드 정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의 가입 전 연평균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를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전송하여야 합니다.
 - 책임개시일 이전 3개월 이내에 자동차보험 주행거리 연동 상품의 정산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계약의 정산 내역을 통해 가입 전 연평균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정보
 -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 소유로 등록된 이후 피보험자동차의 가입 전 연평균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정보
 - 기타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서류나 정보
- 제2항의 정보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혹은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3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혹은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2조(특별약관 계약전 알릴 의무)의 정보 송부 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의 정보를 송부하는 경우
 - 주행거리표시장치 계기판의 주행거리 정보를 임의로 조작하는 경우
 - 주행거리표시장치 계기판 촬영 사진의 원본을 임의로 조작하는 경우
 - 운행정보 확인장치(OBD)의 전송 정보를 임의로 조작하는 경우

제4조(특별약관 계약의 취소)

보험회사는 제1조(적용대상)의 가입제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성립한 경우,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혹은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5조(자동가입)

이 특별약관 가입시 「ECO 마일리지 특별약관(후정산)」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제6조(할인보험료의 계산)

① 보험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하는 보험료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text{할인 보험료} = \text{이 특별약관 가입기간의 적용보험료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 제외)} \times \text{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할인율}$$

② 보험회사는 『ECO 마일리지 특별약관(후정산)』에 의한 보험료 정산금액이 있는 경우 『ECO 마일리지 특별약관(후정산)』에도 불구하고, [첨부2] 보험료 정산금액 계산에 따라 위 '①'의 할인보험료를 차감하여 『ECO 마일리지 특별약관(후정산)』의 보험료 정산금액을 계산합니다.

[첨부2] 보험료 정산금액 계산

$$\text{보험료 정산금액} = \text{이 특별약관 가입기간의 적용보험료(주)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 제외)} \times \text{(ECO마일리지 특별약관(후정산)의 할인율) - (이 특별약관의 할인율)}$$

(주) 이 특별약관 가입기간의 적용보험료는 이 특별약관의 할인 보험료가 감안되지 않은 적용보험료를 말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6 E-MAIL 사용약정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료를 E-MAIL 또는 보험회사의 전자청약을 통하여 직접 수령하기로 약정하고 『E-MAIL 사용약정 특별약관』을 가입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계약자료라 함은 보험회사가 이 보험계약의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보험증권, 보험약관, 만기, 분납보험료 안내문 등의 자료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계약자의 알릴 의무)

-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기 위하여 청약을 할 때 보험계약자료를 수령받을 E-MAIL 주소를 지정하여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지정한 E-MAIL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이 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지정한 E-MAIL 주소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마지막 E-MAIL 주소로 보험계약자료를 교부함으로써 인해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보험회사는 잘못된 E-MAIL 주소로의 보험계약자료 교부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3조(보험계약자료의 교부)

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성립되면 보험계약자가 지정한 E-MAIL 주소를 통하여 보험계약자료를 지체 없이 교부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자료를

를 보험회사의 전자청약을 통하여 직접 수령하는 경우 E-MAIL 주소를 통하여 별도 교부하지 않습니다.

-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E-MAIL을 통해 교부된 보험계약자료를 계약사항 변경 등의 이유로 재교부 요청할 경우, 지정한 E-MAIL 주소를 통하여 재교부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자료를 보험회사의 전자청약을 통하여 직접 수령하는 경우 E-MAIL 주소를 통하여 별도 교부하지 않습니다.
-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E-MAIL을 통해 교부된 보험계약자료를 교부된 날로부터 1개월내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해당 보험계약자료를 E-MAIL을 통해 재교부합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에 의해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 중에 각종 보험계약자료를 E-MAIL 또는 보험회사의 전자청약을 통하여 직접 수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료를 인쇄물로 요청할 경우에는 특별약관이 자동 소멸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가입시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9편 기타

1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가입한 경우에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내용)

-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생긴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 또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또는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보험회사가 보상할 제1항 또는 제2항의 손해에 대하여 다른 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상할 금액이 다른 자동차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다른 자동차라 함은 자가용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 [승용자동차(대인승1·2종 승용자동차를 포함합니다), 경·3종승합자동차 및 경·4종화물자동차⁹¹⁾] 간에는 동일한 차종으로 봅니다]이므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보험회사가 보통약관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승인을 한 때까지의 대체자동차

제3조(피보험자)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91)	차량종류	세부내용
	대인승 승용차	법정승차정원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승용자동차
	경승합 자동차	배기량 1,000cc 미만이고, 법정승차정원이 10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종 승합자동차	법정승차정원 11인 이상 16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경화물 자동차	배기량 1,000cc 미만의 화물자동차
	4종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기명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 ②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 사용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피보험자가 소속한 법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합니다)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 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피보험자가 요금 또는 대가를 지불하거나 받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시험용 또는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 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 -1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부모 및 자녀 확대 추가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특별약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 체결된 경우
-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에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또는 자녀가 포함된 경우

제2조(보상내용)

-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생긴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 또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또는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③ 보험회사가 보상할 제1항 또는 제2항의 손해에 대하여 아래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상할 금액이 아래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1. 다른 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
 2. 다른 자동차를 운전한 피보험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
 3. 다른 자동차를 운전한 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다른 자동차라 함은 자기용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 [승용자동차(다인승 1종 · 2종 승용자동차를 포함합니다), 경 · 3종승합자동차 및 경 · 4종화물자동차 간에는 동일한 차종으로 봅니다]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2.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보험회사가 보통약관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승인을 한 때까지의 대체자동차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배우자라 함은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제3조(피보험자)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2. 기명피보험자의 자녀
- ②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 ①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부모라 함은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를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자녀라 함은 1.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2.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를 말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 사용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가 소속한 법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합니다)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 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4. 피보험자가 요금 또는 대가를 지불하거나 받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5.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6.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7.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시험용 또는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 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대인배상」, 「대물배상」 또는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내용)

-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와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통약관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대물배상」의 경우 보험회사가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은 1사고당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② 보험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양도된 피보험자동차가 양수인 명의로 이전 등록된 이후에 발생한 손해
 2. 양도된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양수인 명의로 유효한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에 가입한 이후에 발생한 손해
 3. 보통약관 제42조(보험기간)의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 계약 성립시 설정된 보험기간의 마지막 날 24시 이후에 발생한 손해
 4. 「대물배상」에서 양도인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③ 제1항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보상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요율서에서 정한 불량할증을 양수인에게 적용합니다.

제3조(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서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의 기간동안은 그 자동차를 보통약관 「대인배상 I」 및 「대물배상」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봅니다.

제4조(보험료의 청구 및 납입)

- ①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2조(보상내용)에 의해 보험회사가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에 대하여는 단기요율로 계산한 해당 보험료를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양수인은 제1항의 보험료의 납입을 청구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3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가 다인승 1종·2종 승용자동차로서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보통약관 「대인배상 I」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6호,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7호,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7호,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5호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 외제차 충돌시 확대보상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대물배상」 또는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에 가입하고, 「외제차 충돌시 확대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보통약관의 「대물배상」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고로 인하여 외국산자동차에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생긴 때에는 「대물배상」 또는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의 가입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대물배상」 또는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의 가입금액을 2배로 확대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외국산자동차라 함은 외국 자동차 제조회사에 의해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되어 수입, 판매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제3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는 보통약관 제7조(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대물배상」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5 기계장치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가 다인승1종, 다인승2종 승용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에 장착 또는 장비되어 있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계장치]에 대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량과 동시에 입은 손해는 보상합니다.

6 나눔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거한 기초생활 수급자인 경우
2.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의 자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의 배기량이 1,600cc 이하 승용차이거나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인 경우 (단, 기명 피보험자가 보유한 자동차는 반드시 1대여야 함)
 - 나. 피보험자동차가 최초등록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된 경우
 - 다. 기명피보험자의 연령이 만30세 이상인 경우
 - 라.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연간 합산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 마. 기명피보험자에게 만20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 바. 예외조항 : 기명피보험자의 연령이 만65세 이상이면서 기명피보험자와 배우자의 연간 합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마의 사항은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OO세라 함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가입시점에서 만OO세인 사람을 말합니다.

3.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상 1~3급 장애인의 경우로 다음의 각 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 피보험자동차의 배기량이 1,600cc 이하 승용차이거나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인 경우 (단, 기명피보험자가 보유한 자동차는 반드시 1대여야 함)
 - 나. 피보험자동차가 최초등록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된 경우
 - 다.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연간 합산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동거가족이라 함은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를 말합니다.

4.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연간 합산 소득이 4,000만원 이하로서 피보험자동차가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리프트나 슬로프가 설치되어 출고되거나 구조 변경된 차량인 경우

제2조(제출서류)

이 특별약관 가입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시군구(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2. 이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소득관계 증명서
 - (1) 제출대상 :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 (2) 소득증빙기간 : 이 특별약관 가입시점 이전 발급가능한 직전년도 1년
 - (3) 예외조항 : 기명피보험자의 나이가 만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가) 근로소득자인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서
(나) 사업등록자인 경우	소득금액 증명서
(다) 사업자 등록이 없는 인적용역 제공자인 경우	소득금액증명서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라) 무소득자인 경우	사실증명원 (세무서 발급)
(마) 기타	그 밖에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예: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기명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서 정하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그 밖에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서류)

- 나. 기명피보험자 및 부양자녀가 명기된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다.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이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의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단,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급수를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나. 기명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기명피보험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다. 제2호 가 목의 소득요건 증빙서류
4. 이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 리프트나 슬로프가 설치되어 출고되거나 구조 변경된 차량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차량등록증
 - 나. 제2호 가 목의 소득요건 증빙서류

제3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가입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및 기타 가입대상임을 증명하는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되며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7 실버 안전운전자 우대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기명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연령이 만65세 이상인 경우
2.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또는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3.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운전 인지·지각 평가'가 포함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4. 제3호의 '운전 인지·지각 평가' 결과의 점수가 42점 이상인 경우. 단, '운전 인지·지각 평가'검사일로부터 보통약관을 가입하는 날까지의 경과기간이 2년을 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65세라 함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특별약관 가입시점에서 만65세인 사람을 말합니다.

제2조(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이 특별약관을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의 제3호 및 제4호의 조건이 만족됨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운전 인지·지각 평가'의 결과가 포함된 교통안전교육 교육필증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3조(특별약관 계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 할인)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개시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 인지·지각 평가' 검사일이 보통약관 보험기간 첫날 이전인 경우 : 보통약관의 보험기간 첫날
 - '운전 인지·지각 평가' 검사일이 보통약관 보험기간 첫날 이후인 경우 : '운전 인지·지각 평가'의 검사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가입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보통약관의 보험기간 종료시점과 동일하게 종료됩니다.
-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 가입기간 동안의 해당 보험료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할인하여 드립니다.

제4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기형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가입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입대상임을 허위로 고지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되며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8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에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를 장착하고,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란 합은 영상기록장치를 통해 영상정보 등을 기록하고 해당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치로 차량에 고정 장착된 전용 기기를 말합니다. 다만, 휴대전화 및 태블릿 PC 등에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을 탑재하여 사용되는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일부터 과거 3년 이내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4조(특별약관 계약의 취소), 제5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로 인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험료를 보험회사로 반환하지 않은 경우
 - 보험회사가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의 장착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청한 사항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조작하여 제출하는 경우

제2조(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 가입 시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의 제조사, 모델명, 제조번호, 연식, 부속품가액 등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장착여부를 보험회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가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사진 및 기타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험회

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전송하여야 합니다.

제3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에 영상기록정보가 정상적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를 피보험자동차에 상시 고정 장착해 놓고 작동시켜야 합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회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사고와 관련된 영상 기록 정보를 보험회사가 요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의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제2조(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제1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의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남은 보험기간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할인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4조(특별약관 계약의 취소)

-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제2항의 가입제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성립한 경우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시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3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시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가 파손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5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2조(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되며,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시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9 지정대리청구에 관한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 중 하나가 체결되고, 「지정대리청구에 관한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2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 ① 보험계약자는 제3항 또는 제4항에서 정하는 자를 지정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합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은 각 피보험자별로 지정되며, 해당 피보험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합니다.
- ② 제1항의 피보험자에게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사망보험금을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의식불명상태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이 있으면서 대리인도 없는 때에는 제3항 또는 제4항에서 정하는 각 피보험자의 지정대리청구인이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지정대리청구인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 제1003조에서 정한 상속순위에 따릅니다.
- ④ 제3항에서 정한 동일한 순위의 지정대리청구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동일한 순위의 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은 1인에 한하여 지정대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취소)

- ① 보험계약자는 이 특별약관 제2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제1항에 의하여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피보험자의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② 보험계약자는 지정대리청구인을 취소하기 위하여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취소신청서(회사양식)
 2. 해당 피보험자의 동의서(회사양식)
 3. 보험계약자 및 해당 피보험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기타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보험금 청구 등)

-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2. 지정대리청구인과 피보험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보험금지급청구서(회사양식)

4. 지정대리청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5. 동일순위의 지정대리청구권자가 있는 경우, 이 특별약관 제2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제3항에서 정한 동일순위의 다른 지정대리청구권자들로부터 지정(동의)을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6. 기타 보험회사가 지정대리청구인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 ② 제1항에 의해서 보험회사가 지정대리청구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피보험자 등으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보험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5조(지정대리청구권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이 특별약관 제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취소)에 의하여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을 취소한 경우 해당 지정대리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0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되며 보통약관 「대물배상」을 이 특별약관으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대물배상」과 동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이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 의무보험과 관련하여 보통약관 「대물배상」에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제2조(보상 내용)

이 특별약관의 대물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2절 대물배상」과 「제3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3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는 보통약관 제7조(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1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추가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또는 「대물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기신체사고 부상 실손보상 특별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 가입 시 해당 담보에 한하여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 내용)

-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대차를 운전 중(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대차를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또는 「대물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기신체사고 부상 실손보상 특별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 또는 해당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보험회사가 보상할 제1항의 손해 중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의 보험가액과 보험대차의 사고가 발생한 곳과 때의 보험대차 가액 중 낮은 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③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제1항의 사고로 인한 보험대차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대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한 해당 대여사업자의 타당한 영업손해에 대해서는 보통약관 <별표 2> 대물배상 지급기준의 '4. 휴차료' 항목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합니다.
- ④ 제3항의 영업손해의 경우 해당 보험대차 대여요금의 50%를 한도로 보상합니다.
- ⑤ 보험회사가 보상할 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대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공제계약 포함)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3항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⑥ 제1항의 보험대차의 사고는 대여사업자로부터 보험대차를 인수한 때부터 보험대차 인정기간 마지막날의 24시를 한도로 보험대차를 반납할 때까지의 사고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보험대차 인정기간 만료일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료일까지의 사고만으로 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대차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그 피보험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대물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다른 자동차를 대차 받은 경우 그 자동차를 말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①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 제14조, 제19조, 제23조 및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의 제4조, 「자기신체사고 부상 실손보상 특별약관」의 제4조, 「대물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의 제4조,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의 제4조에서 정하는 사항(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

하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 범위 이외의 자가 보험대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가 보험대차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보험대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4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위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한화 개인용자동차보험

별표와 붙임

별표와 붙임

※ 별표와 붙임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173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	184
〈별표 3〉 과실상계 등	187
〈별표 4〉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188
〈별표 5〉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	189
〈별표 6〉 대중교통상해 특별약관 후유장애 지급률표	191
〈별표 7〉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198
(붙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1〉	199
(붙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	211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른 "나이(연령)"는 사고발생일 기준 만 나이(연령)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 사망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항목	지급 기준
1. 장례비	지급액 : 5,000,000원
2. 위자료	<p>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p> <p>(1)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0세 미만인 경우 : 80,000,000원</p> <p>(2)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0세 이상인 경우 : 50,000,000원</p> <p>나. 청구권자의 범위 및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민법상 상속규정에 따름</p>
3. 상실 수익액	<p>가. 산정방법⁹²⁾ : 사망한 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공제)에서 본인의 생활비(월평균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을 곱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⁹³⁾를 곱하여 산정</p> <p>산식</p> <p>(월평균현실소득액 - 생활비) × (사망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 + 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⁹⁴⁾</p> <p>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p> <p>(1) 유직자</p> <p>(가) 산정대상기간</p> <p>① 급여소득자 : 사고발생 직전 또는 사망 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차등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p> <p>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 사고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p> <p>(나) 산정방법</p> <p>1) 현실소득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p> <p>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p> <p>가) 급여소득자</p> <p>피해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인상된 금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p>

항목	지급 기준
	<p><용어 풀이></p> <p>① 급여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일용근로자 이외의 자를 말함</p> <p>② 근로의 대가로 받은 보수라 함은 본봉, 수당, 성과급,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을 말하며,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진 대가는 제외함</p> <p>③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라 함은 사고발생 전에 신고하거나 납부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말함. 다만, 신규취업자, 신규사업개시자 또는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세법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하거나 납부(신고 또는 납부가 지체된 경우는 제외함)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포함함</p> <p>나) 사업소득자</p> <p>①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수입액에서 그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 및 제세액을 공제하고 본인의 기여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p>
	<p>산식</p> <p>[연간수입액 - 주요경비⁹⁵⁾] - (연간수입액 × 기준경비율⁹⁶⁾ - 제세공과금] × 노무기여율 × 투자비율</p> <p>(주) 1. 제 경비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위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⁹⁷⁾을 적용하지 않고 그 증명된 경비를 공제함 2. 소득세법 등에 의해 단순경비를 적용대상자는 기준경비율 대신 그 비율을 적용함 3. 투자비율은 증명이 불가능할 때에는 '1/동업자수'로 함 4. 노무기여율은 85/100를 한도로 타당한 율을 적용함</p> <p>②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①의 산식에 따르지 않고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p> <p>③ 위 ①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p>
3. 상실 수익액	<p><용어 풀이></p> <p>① 이 보험계약에서 사업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를 말함.</p> <p>② 이 보험계약에서 일용근로자 임금이라 함은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 지정기관(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중 공사부room은 보통인부, 제조부room은 단순노무종사원의 임금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함.</p>
	<p>산식</p> <p>(공사부room 보통인부임금+제조부room 단순노무종사원임금)/2</p> <p>※ 월 임금 산출 시 25일을 기준으로 산정</p> <p>다) 그 밖의 유직자(이자소득자, 배당소득자 제외)</p> <p>세법상의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다만, 부동산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하며, 이 기준에서 정한 여타의 증명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과 일용근로자 임금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p>

항목	지급 기준
	<p>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 지정기관(공사부room: 대한건설협회, 제조부room: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 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다만, 사고발생 직전 1년 이내 해당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던 음을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에 한함.</p>
	<p><용어 풀이></p> <p>기술직 종사자가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라 함은 자격증, 노무비 지급확인서 등의 입증 서류를 보험회사로 제출한 것을 말함.</p>
	<p>2) 현실소득액을 증명하기 곤란한 자</p> <p>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p> <p>가) 급여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p> <p>나)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p> <p>다) 그 밖의 유직자 일용근로자 임금</p> <p>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 지정기관(공사부room: 대한건설협회, 제조부room: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 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다만, 사고발생 직전 1년 이내 해당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던 음을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에 한함.</p> <p>3) 미성년자로서 현실소득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자 : 19세에 이르기까지는 현실소득액, 19세 이후는 일용근로자 임금</p> <p>(2) 가사종사자 : 일용근로자 임금</p> <p>(3) 무직자(학생 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p> <p>(4)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p> <p>(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함.</p> <p>(나)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과 증명 곤란한 소득이 있는 때 혹은 증명이 곤란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 이 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소득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p> <p>(5) 외국인</p> <p>(가) 유직자</p> <p>① 국내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그 증명이 가능한 자 : 위 1)의 현실소득액의 증명이 가능한 자의 현실소득액 산정방법으로 산정한 금액</p> <p>② 위 ① 이외의 자 : 일용근로자 임금</p>

항목	지급 기준										
	<p>(나) 무직자(학생 및 미성년자 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p> <p>다. 생활비율 : 1/3</p> <p>라. 취업가능월수</p> <p>(1) 취업가능연한을 60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하며 피해자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농어업인일 경우 (피해자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 한함)에는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p> <p>(2) 피해자가 사망 당시(후유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노동능력상실일) 56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56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에 의하되, 사망일 또는 노동능력상실일부터 정년에 이르기까지는 월현실소득액을, 그 이후부터 취업가능월수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p> <p style="text-align: center;">[56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피해자의 나이</th> <th>취업가능월수</th> </tr> </thead> <tbody> <tr> <td>56세부터 59세 미만</td> <td>48월</td> </tr> <tr> <td>59세부터 67세 미만</td> <td>36월</td> </tr> <tr> <td>67세부터 76세 미만</td> <td>24월</td> </tr> <tr> <td>76세 이상</td> <td>12월</td> </tr> </tbody> </table> <p>(3) 취업가능연한이 사회통념상 60세 미만인 직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해당 직종에 타당한 취업가능연한 이후 60세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소득액은 사망 또는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p> <p>(4) 취업시기는 19세로 하되 군복무 해당자는 그 기간을 감안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군복무 중인 경우에는 잔여 복무기간을 감안하여 적용함.)</p> <p>(5) 외국인</p> <p>(가) 적법한 일시체류자^(*)1)인 경우 생활 본거지인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만 적법한 일시체류자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한 경우 아래 (다)를 적용함.</p> <p>(나) 적법한 취업활동자^(*)2)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적법한 체류기간 동안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적법한 체류기간 종료 후에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만, 사고당시 남은 적법한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고일부터 3년간 국내의 소득기준을 적용함.</p> <p>(다) 그 밖의 경우 사고일부터 3년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그 후부터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p> <p>(*)1 적법한 일시체류자라 함은 국내 입국허가를 득하였으나 취업활동의 허가를 얻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p> <p>(*)2 적법한 취업활동자라 함은 국내 취업활동 허가를 얻은 자를 말합니다.</p>	피해자의 나이	취업가능월수	56세부터 59세 미만	48월	59세부터 67세 미만	36월	67세부터 76세 미만	24월	76세 이상	12월
피해자의 나이	취업가능월수										
56세부터 59세 미만	48월										
59세부터 67세 미만	36월										
67세부터 76세 미만	24월										
76세 이상	12월										

3. 상실수익액

항목	지급 기준						
	<p>마. 라이프니츠 계수 : 법정이율 월 5/12%, 복리에 따라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는 방법</p> <p style="text-align: center;">3. 상실수익액</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산식</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frac{1}{1+i}$</td> <td style="text-align: center;">$+$ $\frac{1}{(1+i)^2}$</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dots\dots\dots$</td> <td style="text-align: center;">$+$ $\frac{1}{(1+i)^n}$</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i=5/12\%, n=\text{취업가능월수}$</p>	산식		$\frac{1}{1+i}$	$+$ $\frac{1}{(1+i)^2}$	$+$ $\dots\dots\dots$	$+$ $\frac{1}{(1+i)^n}$
산식							
$\frac{1}{1+i}$	$+$ $\frac{1}{(1+i)^2}$						
$+$ $\dots\dots\dots$	$+$ $\frac{1}{(1+i)^n}$						

92) 상실수익액 산정방법

예) 사망자 연령 만65세, 월현실소득액 300만원
 취업가능월수 36개월, 라이프니츠계수 33,3657
 $\Rightarrow 300\text{만원} \times (1 - \frac{1}{3}) \times (33,3657) = 66,731,400$

93) 라이프니츠 계수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었을 때 미래소득을 현재소득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별표1] 취업가능개월수에 대응하는 라이프니츠 계수 준용)

94) 라이프니츠 계수의 계산 (월미만 일자의 처리)

월미만 일자는 모두 합산하여 30일을 초과할 경우에만 라이프니츠 계수 산출 시 1개월을 가산합니다. (30일 이하는 미반영)

〈예시〉 ① 사망일 2015.1.1
 ② 생년월일 : 1984. 5. 20
 ③ 보험금지급일 2015. 7. 20
 ④ 취업가능연한 : 2044. 5. 19 (생년월일 + 60세)
 - 사망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③ - ①) : 2015. 7. 20 - 2015.1. 1 = 6개월 19일
 - 보험금 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④ - ③) : 2044. 5. 19 - 2015. 7. 20 = 345개월 29일
 \Rightarrow 최종월수 = '6개월' + '(345개월 + 19일 + 29일)의 라이프니츠 계수' = '6개월' + '346개월의 라이프니츠 계수' = '6개월' + 183,0617 = 189,0617

상실수익액 구하기

월현실소득액 X (1-1/3) X 라이프니츠 계수

〈예시〉 ① 월현실소득액 : 300만원
 ② 라이프니츠 계수 : 189,0617
 $\Rightarrow 300\text{만원} \times (1-1/3) \times 189,0617 = 378,123,400\text{원}$

95) 주요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 매입비용 : 재화의 매입(식자재구입 비용 등), 외주공급, 운송업의 운반비 등
 - 인건비 : 종업원의 임금, 퇴직급여 등
 - 임차료 : 사업용 고정자산(건물, 기계 등)에 대한 임차료

96) 기준경비율

장부를 기재하지 않는 사업자의 직전년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 등에 적용하는 경비율을 말합니다.

97) 단순경비율

장부를 기재하지 않는 사업자의 직전년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등에 적용하는 경비율을 말합니다.

나. 부 상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 I」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별표 1〉에서 정한 상해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항목	지급 기준																																							
1. 적극손해	<p>가. 구조수색비 :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필요타당한 실비</p> <p>나. 치료관계비 : 의사의 진단 기간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다만,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으로 하되,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를 포함함.</p> <p>(1) 입원료</p> <p>(가)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이하 '기준병실'이라 함)의 입원료를 지급함.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 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p> <p>(나)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만약, 입원일수가 7일을 넘을 때에는 그 넘는 기간은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p> <p>(다)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p> <p>(2)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술 포함),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실비</p> <p>(3) 치아보철비 :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p>																																							
	<p>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p> <p>나. 지급기준 :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별로 인정함.</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만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급별</th> <th>인정액</th> <th>급별</th> <th>인정액</th> <th>급별</th> <th>인정액</th> <th>급별</th> <th>인정액</th> </tr> </thead> <tbody> <tr> <td>1</td> <td>200</td> <td>5</td> <td>75</td> <td>9</td> <td>25</td> <td>13</td> <td>15</td> </tr> <tr> <td>2</td> <td>176</td> <td>6</td> <td>50</td> <td>10</td> <td>20</td> <td>14</td> <td>15</td> </tr> <tr> <td>3</td> <td>152</td> <td>7</td> <td>40</td> <td>11</td> <td>20</td> <td></td> <td></td> </tr> <tr> <td>4</td> <td>128</td> <td>8</td> <td>30</td> <td>12</td> <td>15</td> <td></td> <td></td> </tr> </tbody> </table> <p>다. 과실상계 후 후유장애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후유장애 보험금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상보험금 한도 내에서 부상 위자료를 지급함.</p>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1	200	5	75	9	25	13	15	2	176	6	50	10	20	14	15	3	152	7	40	11	20			4	128	8	30	12	15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1	200	5	75	9	25	13	15																																	
2	176	6	50	10	20	14	15																																	
3	152	7	40	11	20																																			
4	128	8	30	12	15																																			
2. 위자료																																								

항목	지급 기준
3. 휴업손해	<p>가. 산정방법 :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함.</p> <p><용어 풀이>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세법상 관계 서류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 등을 통해 증명한 경우를 말함</p>
	<p style="text-align: center;">산식</p> $1\text{일 수입감소액} \times \text{휴업일수} \times \frac{85}{100}$
	<p>나. 휴업일수의 산정</p> <p>(1) 휴업일수의 산정: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 기간의 범위에서 인정함.</p> <p>(2) 사고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취업가능연한을 초과한 경우, 휴업일수를 산정하지 아니함. 다만, 위 가.에 따라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p> <p>(3) 취업가능연한: 60세를 기준으로 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며 피해자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농어업인일 경우(피해자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 한함)에는 65세로 함.</p> <p>다. 수입감소액의 산정</p> <p>(1) 유직자</p> <p>(가)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 감소액을 산정함</p> <p>(나) 실제의 수입감소액이 위 (가)의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수입 감소액으로 함.</p> <p>(2) 가사종사자</p> <p>(가)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함.</p> <p><용어 풀이> 가사종사자라 함은 사고당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활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주민등록 관계 서류와 세법상 관계서류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증명한 사람을 말함</p> <p>(3) 무직자</p> <p>(가) 무직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p> <p>(나)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p> <p>(4) 소득이 두가지 이상의 자</p> <p>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p> <p>(5) 외국인</p> <p>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p>

항목	지급 기준							
4. 간병비	<p>가. 청구권자의 범위: 피해자 본인</p> <p>나. 인정 대상</p> <p>(1) 책임보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p> <p>(2)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5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p> <p>(3) 의료법 제4조의2에 따른 비용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비용 및 기간에 관계없이 인정하지 않음.</p> <p style="background-color: #F5DEB3;"><용어 풀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라 함은 진단서, 진료기록, 입원기록,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험회사가 상해등급과 신분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함</p>							
	<p>다. 지급 기준</p> <p>(1) 위 인정대상 (1)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상해등급별 인정일수를 한도로 하여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함.</p> <p>(2) 위 인정대상 (2)에 해당하는 자는 최대 60일을 한도로하여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함.</p> <p>(3)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함.</p> <p>(4) 위 (1)과 (2)의 간병비가 피해자 1인에게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상해등급</th> <th>인정일수</th> </tr> </thead> <tbody> <tr> <td>1급~2급</td> <td>60일</td> </tr> <tr> <td>3급~4급</td> <td>30일</td> </tr> <tr> <td>5급</td> <td>15일</td> </tr> </tbody> </table>	상해등급	인정일수	1급~2급	60일	3급~4급	30일	5급
상해등급	인정일수							
1급~2급	60일							
3급~4급	30일							
5급	15일							
5. 그 밖의 손해 배상금	<p>위1. 내지 3. 외에 그 밖의 손해배상금으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p> <p>가.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한 끼당 4,030원(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p> <p>나.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p>							

다. 후유장애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 I」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애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항목	지급 기준																		
1. 위자료	<p>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p> <p>나. 지급기준 :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1)항 또는 (2)항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함.</p> <p>(1)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p> <p>(가) 후유장애 판정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0세 미만인 경우: 45,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p> <p>(나) 후유장애 판정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0세 이상인 경우: 4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p> <p>(다) 상기 (가), (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 약관에 따른 가정간호비 지급 대상인 경우에는 아래 기준을 적용함</p> <p>① 후유장애 판정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0세 미만인 경우: 8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p> <p>② 후유장애 판정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0세 이상인 경우: 5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p> <p style="background-color: #D3D3D3;">(*1) 후유장애 판정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최초 후유장애 판정 시점의 피해자 연령을 기준으로 후유장애 위자료를 산정합니다.</p> <p>(2)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 만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노동능력상실률</th> <th>인정액</th> </tr> </thead> <tbody> <tr> <td>45% 이상 50% 미만</td> <td>400</td> </tr> <tr> <td>35% 이상 45% 미만</td> <td>240</td> </tr> <tr> <td>27% 이상 35% 미만</td> <td>200</td> </tr> <tr> <td>20% 이상 27%미만</td> <td>160</td> </tr> <tr> <td>14% 이상 20% 미만</td> <td>120</td> </tr> <tr> <td>9% 이상 14% 미만</td> <td>100</td> </tr> <tr> <td>5% 이상 9% 미만</td> <td>80</td> </tr> <tr> <td>0 초과 5% 미만</td> <td>50</td> </tr> </tbody> </table> <p>다. 후유장애 상실수익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후유장애 위자료를 지급함. 다만, 부상 위자료 해당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후유장애 위자료로 지급함.</p>	노동능력상실률	인정액	45% 이상 50% 미만	400	35% 이상 45% 미만	240	27% 이상 35% 미만	200	20% 이상 27%미만	160	14% 이상 20% 미만	120	9% 이상 14% 미만	100	5% 이상 9% 미만	80	0 초과 5% 미만	50
	노동능력상실률	인정액																	
45% 이상 50% 미만	400																		
35% 이상 45% 미만	240																		
27% 이상 35% 미만	200																		
20% 이상 27%미만	160																		
14% 이상 20% 미만	120																		
9% 이상 14% 미만	100																		
5% 이상 9% 미만	80																		
0 초과 5% 미만	50																		

항목	지급 기준
	<p>가. 산정방법 :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함. 다만, 소득의 상실이 없는 경우에는 치아보철로 인한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함.</p>
	<p>산식</p> <p>월평균현실소득액×노동능력상실률×(노동능력상실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보험금지급일로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계수)</p>
	<p>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p> <p>(1) 유직자</p> <p>(가) 산정대상기간</p> <p>① 급여소득자 : 사고발생 직전 또는 노동능력 상실 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 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p> <p>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 사고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그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p> <p>(나) 산정방법</p> <p>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p> <p>(2) 가사종사자</p> <p>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p> <p>(3) 무직자(학생포함)</p> <p>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p> <p>(4)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p> <p>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p> <p>(5) 외국인</p> <p>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p> <p>다. 노동능력상실률</p> <p>맥브라이드 식 후유장애 평가방법⁹⁸⁾에 따라 일반의 육내 또는 육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부상 치료 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진단·판정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며, 그 판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p> <p>라. 노동능력상실기간</p> <p>사망한 경우 취업가능월수와 동일</p> <p>마. 라이프니츠 계수</p> <p>사망한 경우와 동일</p>

2. 상실수익액

항목	지급 기준
	<p>가. 인정 대상</p> <p>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요하는 자⁹⁹⁾</p> <p>(1) 식물인간상태의 환자</p> <p>뇌손상으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상태에 있는 자</p> <p>(가) 스스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p> <p>(나) 자력으로는 식사가 불가능하다.</p> <p>(다)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이다.</p> <p>(라) 안구는 겨우 물건을 쫓아가는 수가 있으나, 알아보지는 못한다.</p> <p>(마) 소리를 내도 뜻이 있는 말은 못한다.</p> <p>(바) '눈을 떠라', '손으로 물건을 쥐어라'하는 정도의 간단한 명령에는 가까스로 응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p> <p>(2)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p> <p>척수손상으로 인해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마비된 환자로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자</p> <p>(가) 생존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동작(식사, 배설, 보행 등)을 자력으로 할 수 없다.</p> <p>(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의자로 옮기거나 집안에서 걷기 등의 자력이동이 불가능하다.</p> <p>(다)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켜야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한다.</p> <p>나. 지급 기준</p> <p>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가정간호비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함.</p>

3. 가정간호비

98) 맥브라이드 식 후유장애 평가방법

미국 오클라호마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수였던 맥브라이드(Earl D. McBride)가 1936년에 만든 노동능력상실평가방법으로, 직업과 장애부위의 관련표로 신체의 장애를 백분율(%)로 평가하는 방법(예 : 식물인간의 경우 100% 장애율입니다. 280여종의 직종별 계수 및 각종 신체부위 등이 연관되어 수천가지 이상의 상실을 평가를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99) 개호를 요하는 자

사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곁에서 돌보아 줌"을 의미하는 용어로서, 신체장애나 질병 등으로 인해 중증의 후유장애(노동능력상실률 100%)가 남아 스스로 일상생활을 꾸려 나가지 못하고 남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의 사람을 말합니다.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

항목	지급 기준
1. 수리비용	<p>가. 지급대상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수리하는 경우</p> <p>나. 인정기준액</p> <p>(1) 수리비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 다만, 경미한 손상^(*)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함</p> <p>(*) 경미한 손상이라 함은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을 말합니다.</p> <p>(2) 열처리 도장⁽¹⁰⁰⁾ 수리시 열처리 도장을 한 경우 차량연식에 관계없이 열처리 도장료 전액</p> <p>(3) 한도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은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의 120%를 한도로 지급함. 다만, 피해물이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30%를 한도로 함</p> <p>(가) 내용연수^(*)가 지난 경우</p> <p>(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제2항에 의한 차량총당연한을 적용받는 승용자동차나 승합자동차</p> <p>(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차량총당연한을 적용받는 화물자동차</p> <p>(*) 내용연수라 함은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표」에서 정하는 내용 연수를 말합니다.</p>
2. 교환가액 ⁽¹⁰¹⁾	<p>가. 지급대상 피해물이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p>(1)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 직전가액을 초과하여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p> <p>(2)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p> <p>나. 인정기준액</p> <p>(1)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 상당액</p> <p>(2)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동종의 대응품을 취득할 때 실제로 소요된 필요타당한 비용</p>
3. 대차료 ⁽¹⁰²⁾	<p>가. 대상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p> <p>나. 인정기준액</p> <p>(1) 대차를 하는 경우</p>

항목	지급 기준
3. 대차료 ⁽¹⁰²⁾	<p>(가) 대여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 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²⁾. 다만, 피해차량이 사고시점을 기준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차량과 동일한 규모⁽³⁾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기준으로 함.</p> <p>(*) 동급이라 함은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말합니다.</p> <p>(2) 통상의 요금이라 함은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 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말합니다.</p> <p>(3) 규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별 세부기준(경형, 소형, 중형, 대형)에 따른 자동차의 규모를 말합니다.</p> <p>(나)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차종(사업용 해당차종의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사용방법이 유사한 차종으로 하며, 이하 같음) 휴차료 일람표 범위에서 실임차료. 다만, 5톤 이하 또는 밴형 화물자동차 및 대형 이륜자동차(260cc 초과)의 경우 중형승용차급 중 최저요금 한도로 대차 가능</p> <p>(*)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외의 차종을 말합니다.</p> <p>(2)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p> <p>(가) 동급의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 해당 차량과 동급의 최저요금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0% 상당액</p> <p>(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 : 위(1)-(가) 단서에 따라 대차를 하는 경우 소요되는 대차료의 30% 상당액</p> <p>(다)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30% 상당액</p> <p>다. 인정기간</p> <p>(1) 수리가능한 경우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다만,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p> <p>(*) 통상의 수리기간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트기간과 작업시간 등과의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산출한 수리기간(범위)을 말합니다.</p> <p>(2) 수리 불가능한 경우: 10일</p>

항목	지급 기준
4. 휴차료	<p>가. 지급대상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p> <p>나. 인정기준액</p> <p>(1)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p> <p>(2)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p> <p>다. 인정기간</p> <p>(1) 수리가 가능한 경우</p> <p>(가)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p> <p>(나) 「여행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부상으로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된 후에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행하지 못한 기간으로 함.</p> <p>(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p>
5. 영업손실	<p>가. 지급대상 소득세법령에 정한 사업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함으로써 상실된 이익</p> <p>나. 인정기준액</p> <p>(1)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p> <p>(2)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p> <p>다. 인정기간</p> <p>(1)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함. 그러나 합의지연 또는 부당한 복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휴업기간에 넣지 아니함.</p> <p>(2) 영업손실의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함.</p>
6.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	<p>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함.</p>

- 100) 열처리 도장
도장 재료의 표면을 보호 혹은 미화하기 위해서 페인트나 래커 등의 도료를 바르거나 뿜어서 도막(塗膜)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 101) 교환가액
사고 직전의 피해물과 같은 종류의 대용품 가액(예 : 같은 종류의 차량)과 이를 교환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을 말합니다.
- 102) 대처료
차를 대처하는 비용 즉, 렌트비용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약관상 인정기준액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별표 3〉 과실상계 등

항목	지급 기준
1. 과실상계	<p>가. 과실상계의 방법</p> <p>(1) 이 기준의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하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손해」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p> <p>(2) 「대인배상 I」에서 사망보험금은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하면 2,000만원을 보상하며, 부상보험금의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입원 환자 식대를 포함)와 간병비를 보상함.</p> <p>(3) 「대인배상 II」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손해」에서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및 후유장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하며, 「대인배상 I」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와 간병비를 보상함.</p> <p>나. 과실비율의 적용기준</p> <p>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고, 사고유형이 그 기준에 없거나 그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p>
2. 손익상계	<p>보험사고로 인하여 다른 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상계하여 보험금을 지급함.</p>
3. 동승자에 대한 감액	<p>피보험자동차에 동승한 자는 〈별표 4〉의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에 따라 감액함.</p>
4. 기왕증	<p>가. 기왕증^(*)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함. 다만, 당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기왕증이 악화된 경우에는 기왕증이 손해에 관여한 정도(기왕증 관여도)를 반영하여 보상함.</p> <p>나. 기왕증은 해당과목 전문의가 판정한 비율에 따라 공제함. 다만, 그 판정에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p> <p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1 기왕증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으로 특이체질 및 병적 소인 등을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p>

〈별표 4〉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1. 기준요소

동승의 유형 및 운행 목적	감액비율 ^(*)
동승자의 강요 및 무단 동승	100%
음주운전자의 차량 동승	40%
동승자의 요청 동승	30%
상호 의존합의 동승	20%
운전자의 권유 동승	10%
운전자의 강요 동승	0%

(*) 다만, 교통소통 대책의 일환으로 출·퇴근(자택과 직장 사이를 순로에 따라 진행한 경우로서 관례에 따름) 시 '승용차 함께 타기' 실시차량의 운행 중 사고의 경우에는 위 동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수정요소

수정요소	수정비율
동승자의 동승과정에 과실이 있는 경우	+10 ~ 20%

〈별표 5〉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상해등급	보험가입금액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급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2급	800만원	1,600만원	2,700만원
3급	750만원	1,500만원	2,500만원
4급	700만원	1,400만원	2,300만원
5급	500만원	1,000만원	1,700만원
6급	400만원	800만원	1,300만원
7급	250만원	500만원	800만원
8급	180만원	360만원	600만원
9급	140만원	280만원	470만원
10급	120만원	240만원	400만원
11급	100만원	200만원	330만원
12급	60만원	120만원	200만원
13급	40만원	80만원	130만원
14급	20만원	40만원	70만원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별표 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2) 후유장애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장애 등급	보험가입금액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1급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2급	1,350만원	2,700만원	4,500만원	9,000만원
3급	1,200만원	2,400만원	4,000만원	8,000만원
4급	1,050만원	2,100만원	3,500만원	7,000만원
5급	900만원	1,800만원	3,000만원	6,000만원
6급	750만원	1,500만원	2,500만원	5,000만원
7급	600만원	1,200만원	2,000만원	4,000만원
8급	450만원	900만원	1,500만원	3,000만원
9급	360만원	720만원	1,200만원	2,400만원
10급	270만원	540만원	900만원	1,800만원
11급	210만원	420만원	700만원	1,400만원
12급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13급	90만원	180만원	300만원	600만원
14급	60만원	120만원	200만원	400만원

(주) 장애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 에서 정한 후유장애구분에 의함

<별표 6> 대중교통상해 특별약관 후유장애 지급률표

후유장애의 종류	지급률
1. 눈(眼)의 장애	
1) 두 눈이 멀었을 때	100
2) 한 눈이 멀었을 때	60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34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26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20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로 된 때	5
7) 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조절기능장애나 뚜렷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	10
8) 한 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정상시야의 60%이하) 반맹증 또는 시야 협착을 남긴 때	5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때	15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	10
2. 귀(耳)의 장애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3) 한 귀의 청력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때	20
4) 한 귀의 청력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때	5
5)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3. 코(鼻)의 장애	
1) 코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20
4. 씹거나 말하는 기능의 장애	
1) 씹거나 말하는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00
2)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35
3)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장애를 남긴 때	15
4) 이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20
5) 이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
6) 이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5. 외모(얼굴, 머리, 목)의 추상장애	
1) 외모에 뚜렷한 추상(흉한 상처)을 남긴 때	15
2) 외모에 추상(흉한 상처)을 남긴 때	5

(주) 지급률 :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비율(%).임.

후유장애의 종류	지급률
6. 등뼈의 장애	
1) 등뼈에 고도의 기형이나 고도의 운동장애를 남긴 때	40
2) 등뼈에 중등도의 운동장애를 남긴 때	30
3) 등뼈에 중등도의 기형을 남긴 때	20
4) 등뼈에 경도의 기형이나 경도의 운동장애를 남긴 때	10
5)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5
6)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0
7) 고도의 추간반탈출증	20
8) 중등도의 추간반탈출증	15
9) 경도의 추간반탈출증	10
7. 팔 또는 다리의 장애	
1) 두 팔의 손목 이상이나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 팔의 손목 이상이나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60
3)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00
4)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50
5)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 이상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50
6)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7)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 이상의 기능에 고도의 장애를 남긴 때	40
8)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고도의 장애를 남긴 때	20
9)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 이상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애를 남긴 때	20
10)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애를 남긴 때	10
11)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경도의 장애를 남긴 때	10
12)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경도의 장애를 남긴 때	5
13) 한 팔 또는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40
14) 한 팔 또는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장애를 남긴 때	30
15)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10
16)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34
17)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20
18)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7

(주) 지급률 :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비율(%).임.

후유장애의 종류	지급률
8. 손가락의 장애	
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100
2) 한 손의 5 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52
3) 한 손의 첫째손가락의 손가락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20
4) 한 손의 첫째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둘째마디관절 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1 손가락마다)	8
5) 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에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30
6) 한 손의 첫째손가락의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10
7) 한 손의 첫째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에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1 손가락마다)	5
9. 발(가락)의 장애	
1) 한 발의 리스프링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42
2) 한 발의 5 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0
3) 한 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10
4) 한 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둘째마디관절 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1 발가락마다)	5
5) 한 발의 5 개 발가락 모두에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20
6) 한 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8
7) 한 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에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1 발가락마다)	3
10. 흉·복부장기의 장애	
1)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극심한 장애가 남아 평생토록 항상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100
2)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심한 장애가 남아 평생토록 수시로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75
3)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애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된 때	50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된 때	25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았을 때	10
6)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잃었을 때	42
7) 비장 또는 한쪽 콩팥을 잃었을 때	34
8)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26

(주) 지급률 :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비율(%).임.

후유장애의 종류	지급률
11. 정신·신경계통의 장애	
1)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극심한 장애가 남아 혼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동작·기능을 전혀 할 수 없어 항상 간호를 요하거나 지속적인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할 때	100
2) 사지, 반신 또는 하반신이 완전 마비된 때	100
3)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심한 장애가 남아 혼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동작·기능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간호 내지는 감시를 요할 때	75
4)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애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및 기능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때	50
5)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경도-중등도의 장애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혹은 기능은 할 수 있으나 고등 정신기능 혹은 정교한 작업을 하는데는 상당한지장이 있게 된 때	25
6)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경도의 장애가 남아 통상적인 생활은 할 수 있으나 고등정신기능 혹은 정교한 작업을 하는데 다소의 지장이 있게 된 때	10

- (주) 1. 위 후유장애의 종류 및 지급률에 관한 세부사항은 특별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해석되지 않는 한 「상해보험 후유장애 산정기준」에 따릅니다.
2. 이 특별약관의 후유장애 지급률은 산재보험 등 타 보험 및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에서 적용하는 후유장애 지급률과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3. 각 관절운동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은 미국의학협회(A.M.A)의 「연구적 신체장애 평가지침」의 규정에 따릅니다.
4. 지급률 :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비율(%임).

〈용어풀이〉

1. 컷바퀴의 대부분의 결손

컷바퀴의 연골부의 1/2 이상 결손된 경우

2. 이의 결손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 이상 파절된 경우

3. 외모(얼굴, 머리, 목)의 추상장애

추상장애란 성형수술후에도 영구히 남게되는 상태의 추상을 말합니다.

가. 외모의 뚜렷한 추상

1) 얼굴

- ① 손바닥 반 크기 이상의 추상
- ②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
- ③ 직경 5cm 이상의 조직함몰

2) 머리

-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 및 모발결손
- ② 두개골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

나. 외모의 추상

1) 얼굴

- ① 손바닥 1/4크기 이상의 추상
- ② 길이 5cm 이상의 추상 반흔
- ③ 직경 2cm 이상의 조직함몰

2) 머리

- ① 손바닥 1/2크기 이상의 반흔 및 모발결손
- ② 두개골의 손바닥 1/2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1/2크기 이상의 추상

4. 등뼈의 장애

등뼈의 장애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만 보상합니다.

1) 고도의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35° 이상의 전만증 또는 20° 이상 측만 변형된 경우

2) 중등도의 기형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15° 이상의 전만증 또는 10° 이상 측만 변형된 경우

3) 경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로 인한 경도의 전만증 또는 측만 변형된 경우

4) 고도의 운동장애

척추체에 2분절 이상의 척추고정술을 시행하고 척추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때

5) 중등도의 운동장애

① 척추체에 2분절 이상의 척추고정술을 시행하고 척추운동범위가 정상 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때

② 두개골과 상위경추(제1, 2경추)간의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을 때

6) 경도의 운동장애

척추체에 골절 등으로 척추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3/4이하로 제한된 때

- 7) 고도의 추간반탈출증
추간반을 2마디 이상 수술 또는 하나의 추간반에 2번 이상 수술로 고도의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
- 8) 중등도의 추간반탈출증
추간반 1마디 수술로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척추신경근의 불안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 9) 경도의 추간반탈출증
의학적으로 추간반 병변이 확인되고 하지방사통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5. 팔, 다리의 1관절기능 장애

- 1)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완전강직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 2) 고도의 장애
관절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객관적 검사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 3) 중등도의 장애
관절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객관적 검사상 10mm 이상의 동요 관절이 있는 경우
- 4) 경도의 장애
관절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객관적 검사상 5mm 이상의 동요 관절이 있는 경우

6. 손 ·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을 때

첫째 손 · 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 · 발가락의 제2지관절로부터 상부 즉, 심장 에 가까운 쪽에서 손 · 발가락 뼈를 잃은 경우

7. 손 · 발가락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 1) 첫째 손 · 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 · 발가락의 제2지관절로부터 하부 즉, 선단에서 손 · 발가락뼈를 잃은 경우
- 2) 손 · 발가락의 관절운동범위(첫째 손 · 발가락 이외의 손 · 발가락은 제1, 제2지관절의 굴 신 운동범위의 합산)가 정상범위의 1/2이하가 되었을 때

8. 흉 · 복부장기의 장애

- 1) 기능에 극심한 장애가 남아 평생토록 항상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로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을 전적으로 타인의 돌봄에 의존하는 것
- 2) 기능에 심한 장애가 남아 평생토록 수시로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타인의 돌봄을 받아 식사, 배뇨 및 배변, 근거리 내의 보행 등 단시간 침상을 떠나는 것이 가능한 경우
- 3) 기능에 중등도의 장애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된 때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중 이동동작 제한으로 이동시 타인의 돌봄이나 보조수단(휠체어 등)이 필요한 경우
- 4) 기능에 장애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된 때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에 제한은 있으나 타인의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때
- 5) 기능에 장애가 남은 때
흉복부 장기의 기능장애가 명확하여 노동에 지장이 있는 때

- 6)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음경의 1/2이상 상실, 자궁전적출술, 흉터로 인한 질구의 협착 등으로 성교 불가능인때

7)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 ① 이동동작
- ② 음식물 섭취동작
- ③ 옷입고 벗기 동작
- ④ 대소변의 배설후 뒷처리
- ⑤ 목욕 및 세면

9. 사지, 반신 또는 하반신이 완전마비된 때

- 1) 사지의 완전마비
사지 기능의 전폐
- 2) 반신의 완전마비
동측(同側)의 상하지의 운동마비, 즉 같은 쪽의 1하지와 1상지의 기능전폐
- 3) 하반신의 완전마비
양측 하지기능 전폐, 방광기능 전폐, 직장조절불능, 성기능 등이 모두 전폐된 경우

〈별표 7〉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 7조, 8조 위반시 형사합의금 지원 특별약관의 적용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 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붙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관련)

1. 상해 구분별 한도금액

상해 급별	한도 금액	상해내용
1급	3천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양안 안구 파열로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3. 심장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 또는 스텐트그라프트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5. 척추 손상으로 완전 사지마비 또는 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6. 척수 손상을 동반한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 7. 척수 손상을 동반한 척추 신연손상 또는 전위성(회전성) 골절 8.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9. 상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주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10.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2. 대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골의 분절 소실로 유리생골 이식술 을 시행한 상해(근육, 근막 또는 피부 등 연부 조직을 포함한 경우에 해당한다) 14. 화상·좌창·괴사창 등 연부 조직의 심한 손상이 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인 상해 15.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급	1,5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2. 흉부 기관, 기관지 파열, 폐 손상 또는 식도 손상으로 절제술을 시행한 상해 3.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의 일부분이라도 적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신장 파열로 수술한 상해 5. 척추 손상으로 불안전 사지마비를 동반한 상해 6. 신경 손상 없는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로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또는 경추 골절(치통기 골절을 포함한다) 또는 탈구로 할로베스트나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7. 상완 신경총 상부간부 또는 하부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상해 급별	한도 금액	상해내용
2급	1,500 만원	8. 전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9.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10. 대퇴 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대퇴골 경부 분쇄 골절, 전자하부 분쇄 골절, 과부 분쇄 골절, 경골 과부 분쇄 골절 또는 경골 원위 관절내 분쇄 골절 12.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3. 하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4. 사지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15.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3급	1,200 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3. 단안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 내용 제거술과 외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절제술을 제외한 개흉 또는 흉강경 수술을 시행한 상해(진단적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4급에 해당한다) 6. 요도 파열로 요도 성형술 또는 요도 내시경을 이용한 요도 절개술을 시행한 상해 7.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 적출 없이 재건수술 또는 지혈수술 등을 시행한 상해(장간막 파열을 포함한다) 8. 척추 손상으로 불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9. 견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상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주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11.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대퇴골 또는 경골 골절(대퇴골 골두 골절은 제외한다) 14. 대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슬관절의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16.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7. 족근관절의 손상으로 족근골의 완전탈구가 동반된 상해 18.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9.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상해 급별	한도 금액	상해내용
4급	1천 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2.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3. 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유리체 출혈, 망막 박리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4. 흉부 또는 복부 손상으로 인공호흡기를 시행한 상해(기관절개술을 시행한 경우도 포함한다) 5. 진단적 목적으로 복부 또는 흉부 수술을 시행한 상해(복강경 또는 흉강경 수술도 포함한다) 6.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2개 이상의 주요 말초신경 장애를 보이는 손상에 해당한다) 8. 상완골 경부 골절 9. 상완골 간부 분쇄성 골절 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경과 골절, 과관 골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 등에 해당한다) 11. 요골 원위부 골절과 척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갈레아찌 골절을 말한다) 12. 척골 근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몬테지아 골절을 말한다) 13. 전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수근골간 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5. 수근골 골절 및 탈구가 동반된 상해 16.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7.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18.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전골 골절 및 미골 골절을 포함한다) 19.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0.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2. 하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3. 거골 또는 종골 골절 24.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5. 사지의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 피판술 또는 원거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상해 급별	한도 금액	상해내용
4급	1천 만원	26. 화상, 좌창, 과사창 등으로 연부 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27.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5급	900 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2. 안와 골절에 의한 복시로 안와 골절 재건술과 사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 복강내 출혈 또는 장기 파열 등으로 중재적 방사선학적 수술을 통하여 지혈술을 시행하거나 경피적 배액술 등을 시행하여 보존적으로 치료한 상해 4. 안정성 추체 골절 5. 상완 신경총 상부 간부 또는 하부 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6. 상완골 간부 골절 7.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요골과 척골의 간부 골절이 동반된 상해 9. 요골 경상돌기 골절 10. 요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 11. 수근 주상골 골절 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4.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15.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대퇴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대퇴골 또는 근위 경골의 견열골절 18.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슬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20. 슬개골 골절 21. 족관절의 양과 골절 또는 삼과 골절(내과, 외과, 후과를 말한다) 22.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그 밖의 족근골 골절(거골 및 종골은 제외한다) 24. 중족족근관절 손상(리프프랑 관절을 말한다) 25.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상해 급별	한도 금액	상해내용
5급	900 만원	27.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8.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9.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6개 이상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30. 다발성 사지의 주요 혈관 손상으로 봉합술 또는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3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2. 23치 이상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6급	700 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3. 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외상성 백내장, 녹내장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4. 심장 타박 5. 폐좌상(일측 폐의 50퍼센트 이상 면적을 흉부 CT 등에서 확인한 경우에 한한다) 6. 요도 파열로 유치 카테타, 부지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7.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성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한 상해 8.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9. 외상성 상부관절외손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2. 상완골 대결절 견열 골절 13. 상완골 원위부 견열골절(외상과 골절, 내상과 골절 등에 해당한다) 14.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7. 요골간부 또는 원위부 관절외 골절 18. 요골 경부 골절 19. 척골 주두부 골절 20. 척골 간부 골절(근위부 골절은 제외한다) 21. 다발성 수근중수골 관절 탈구 또는 다발성 골절탈구

상해 급별	한도 금액	상해내용
6급	700 만원	22.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3.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슬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5. 반월상 연골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족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의 파열 또는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원위 경비골 이개
		28. 2개 이하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9.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30.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3~5개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31.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2.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7급
2. 복시를 동반한 마비 또는 제한 사시로 사시수술을 시행한 상해		
3. 안와 골절로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4.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		
5. 쇄골 골절		
6. 견갑골 골절(견갑골극, 체부, 흉곽내 탈구, 경부, 과부, 견봉돌기, 오구돌기를 포함한다)		
7.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 완전 파열		
8.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척골 경상돌기 기저부 골절		
11.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12. 요수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3.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4. 주상골 외 수근골 골절		
15. 수근부 주상골·월상골간 인대 파열		
16. 수근중수골 관절의 탈구 또는 골절탈구		
17. 다발성 중수골 골절		
18. 중수수지관절의 골절 및 탈구		

상해 급별	한도 금액	상해내용		
7급	500 만원	19.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0.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2. 비골 간부 골절 또는 골두 골절		
		23.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족관절 내과, 외과 또는 후과 골절		
		25.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6. 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7.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8급	300 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2.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등의 안면 두개골 골절
				3. 외상성 시신경병증
				4. 외상성 안검하수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복합 고막 파열
				6.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3개 이상의 다발성 늑골 골절				
8. 각종 돌기 골절(극돌기, 횡돌기) 또는 후궁 골절				
9.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 등을 말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1.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2. 중수골 골절				
13. 수지골의 근위지간 또는 원위지간 골절 탈구				
14. 다발성 수지골 골절				
15. 무지 중수지관절 측부인대 파열				
16.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천골 골절 및 미골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슬관절 십자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8.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수족지골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0. 사지의 근 또는 건 파열로 1 ~ 2개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상해 급별	한도 금액	상해내용
8급	300 만원	22. 사지의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사지의 다발성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24. 사지의 연부 조직 손상으로 피부 이식술이나 국소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25. 1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9급	240 만원	1.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 2개 이하의 단순 늑골골절 3. 고환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음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흉골 골절 6. 추간판 탈출증 7. 흉쇄관절 탈구 8.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요수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0. 수지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수지관절 탈구 12. 슬관절 측부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2개 이하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수족지골 골절 또는 수족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5. 그 밖에 견열골절 등 제불완전골절 16.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수족지 신전건 1개의 파열로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18. 사지의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19.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0.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0급	200 만원	1. 3cm 이상 안면부 열상 2. 안검과 누소관 열상으로 봉합술과 누소관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3. 각막, 공막 등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만 시행한 상해 4. 견관절부위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외상성 상부관절외손 파열 중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6. 수족지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하지 3대 관절의 혈관절증

상해 급별	한도 금액	상해내용
10급	200 만원	8. 연부조직 또는 피부 결손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10.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1급	160 만원	1. 뇌진탕 2.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3. 수지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4. 수족지골 골절 또는 수족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6.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2급	120 만원	1.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2. 3cm 미만 안면부 열상 3. 척추 염좌 4. 사지 관절의 근 또는 건의 단순 염좌 5. 사지의 열상으로 창상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길이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6. 사지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8. 그 밖에 1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3급	80 만원	1. 결막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 단순 고막 파열 3. 흉부 타박상으로 늑골 골절 없이 흉부의 동통을 동반한 상해 4.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4급	50 만원	1. 방광, 요도, 고환, 음경, 신장, 간, 지라 등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 수족지 관절 염좌 3. 사지의 단순 타박 4. 1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 영역별 세부지침

영역	내용
관통	<p>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로부터 하위 3등급(예 : 상해내용이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이하 "병급"이라 한다)</p> <p>나. 일반 외상과 치료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의 상해 등급별 금액을 배상하되 그 합산액이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한다.</p> <p>다. 1개의 상해에서 2개 이상의 상항 또는 하항 조정의 요인이 있을 때 등급 상항 또는 하항 조정은 1회만 큰 목의 조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항 조정 요인과 하항 조정 요인이 여러 개가 함께 있을 때는 큰 목의 상항 또는 큰 목의 하항 조정 요인을 각각 선택하여 함께 반영한다.</p> <p>라. 재해 발생 시 만 13세 미만일 때 소아로 인정한다.</p> <p>마.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피판술, 유경 피판술, 원거리 피판술, 국소피판술이나 피부이식술을 시행할 경우, 안면부는 1등급 상위등급을 적용하고 수부, 족부에 국한된 손상에 대하여는 한 등급 아래의 등급을 적용한다.</p>
두부	<p>가. 뇌손상이란 국소성 뇌손상인 외상성 두개강안의 출혈(경막상·하출혈, 뇌실 내 및 뇌실질 내 출혈, 거미막하 출혈 등을 말한다) 또는 경막하 수혈액낭종, 거미막 낭종, 두개골 골절(두개 기저부 골절 포함한다) 등과 미만성 축삭손상을 포함한 뇌좌상을 말한다.</p> <p>나. 4급 이하에서 의식 이외에 뇌신경 손상이나(국소)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한 등급 상항조정 가능하다.</p> <p>다. 신경학적 증상은 글라스고우 혼수척도(Glasgow coma scale)로 구분하며, 고도는 8점 이하, 중등도는 9~12점, 경도는 13~15점을 말한다.</p> <p>라. 글라스고우 혼수척도는 진정치료 전에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마. 글라스고우 혼수척도 평가 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기관지 삽관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p> <p>바. 의무기록 상 의식상태가 혼수(coma)와 반혼수(semicomma)는 고도, 혼미(stupor)는 중등도, 기면(drowsy)은 경도로 준용한다.</p> <p>사. 두피 좌상, 열창은 14급에 준용한다.</p> <p>아. 만성 경막하 혈종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6급 2호에 준용한다.</p> <p>자. 외상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 다른 진단이 전혀 없이 단독 상병으로 외상 후 1개월 이내 발병된 경우만 적용한다.</p>
흉·복부	<p>심장타박(6급)의 경우, ①심전도에서 Tachyarrhythmia 또는 ST변화 또는 부정맥, ②심초음파에서 심낭액증가소견이 있거나 심장벽운동저하, ③심장효소치증가(CPK-MB, and Troponin T) 세가지 요구 충족 시 인정한다.</p>
척추	<p>가. 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3 이하인 경우이며, 불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4인 경우로 정한다.</p> <p>나. 척추관 협착증이나 추간판 탈출증이 외상으로 증상이 발생한 경우나 악화된 경우는 9급에 준용한다.</p>

영역	내용
척추	<p>다. 척추 손상으로 인하여 신경근증이나 감각이상을 호소하는 경우는 9급에 준용한다.</p> <p>라. 마미중후근은 척추손상에 준용한다.</p>
관통	<p>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내용 중 사지 골절에서 별도로 상해 등급이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골절은 해당 등급에서 2급 낮은 등급을 적용하며, 도수 정복 및 경피적 핀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서 1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p> <p>나.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 거스틸로 2형 이상(개방창의 길이가 1cm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의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만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p> <p>다.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이라고 명기되지 않은 각 등급 손상 내용은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를 말하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가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두 등급 하항 조정을 원칙으로 한다.</p> <p>라. 양측 또는 단측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병합하지 않으나, 별도 규정이 없는 양측 손상의 경우에는 병합한다.</p> <p>마. 골절에 주요 말초신경의 손상 동반 시 해당 골절보다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p> <p>바. 재접합술을 시행한 절단소실의 경우 해당부위의 절단보다 2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p> <p>사. 아절단은 완전 절단에 준한다.</p> <p>아. 관절 이단의 경우 상위부 절단을 준용한다.</p> <p>자. 골절 치료로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할 경우 해당부위의 골절과 동일한 등급을 준용한다.</p> <p>차. 사지 근 또는 건의 부분 파열로 보존적으로 치료한 경우 근 또는 건의 단순 염좌(12급)를 준용한다.</p> <p>카. 사지 관절의 인공관절 재치환 시 해당 부위 골절보다 1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p> <p>타. 보존적으로 치료한 사지 주요관절 골절 및 탈구는 해당관절의 골절 및 탈구보다 3등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p> <p>파. 수술을 시행한 사지 주요 관절 탈구는 해당 관절의 보존적으로 치료한 탈구보다 2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p> <p>하. 동일 관절 혹은 동일 골의 손상은 병합하지 않으며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p> <p>거. 분쇄 골절을 형성하는 골절선은 선상 골절이 아닌 골절선으로 판단한다.</p> <p>너. 수족지 절단 시 절단부위에 따른 차이는 두지 않는다.</p>
상·하지	<p>가. 상부관절손 파열은 외상성 파열만 인정한다.</p> <p>나. 회전근개 파열 개수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다.</p> <p>다. 근, 건, 인대 파열이라 함은 완전 파열을 의미하며, 부분 파열은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완전 파열로 준용한다.</p> <p>라. 사지골 골절 중 불명확한 상해등급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사지골 골절(견열골절을 포함한다)은 제불완전골절에 준용한다. 다만,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경우는 해당 부위 골절 항에 적용한다.</p>

영역	내용
상·하지	<p>마. 사지골 골절 시 시행한 외고정술도 수술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p> <p>바. 소아의 경우, 성인의 동일 부위 골절보다 1급 낮게 적용한다. 다만, 성장판 손상이 동반된 경우와 연부조직 손상은 성인과 동일한 등급을 적용한다.</p> <p>사. 6급의 견관절 탈구에서 재발성 탈구를 초래할 수 있는 해부학적 병변이 병발된 경우는 수술 여부에 상관없이 6급을 적용한다.</p> <p>아. 견봉 쇄골간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견봉 쇄골간 인대 파열은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의 완전 파열에 포함되고,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의 완전 파열로 수술한 경우 7급을 적용하며, 부분 파열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 9급을 적용하고, 단순 염좌의 경우 12급을 적용한다.</p> <p>자. 주요 동맥 또는 정맥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의 경우,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이란 수술을 통한 혈행의 확보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다발성 혈관 손상이란 2부위 이상의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의 손상을 의미한다.</p>
	<p>가. 양측 치골지 골절, 치골 상하지 골절 등에서는 병급하지 않는다.</p> <p>나. 천골 골절, 미골 골절도 골반골 골절로 준용한다.</p> <p>다. 슬관절 십자인대 파열은 전후방 십자인대의 동시 파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병급하지 않으나 내외측 측부인대 동시 파열, 십자인대와 측부인대 파열,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은 병급한다.</p> <p>라. 후경골건 및 전경골건 파열은 족관절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의 등급을 준용한다.</p> <p>마. 대퇴골 또는 경비골의 건열성 골절의 경우, 동일 관절의 인대 손상에 대해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는 인대 손상 등급을 준용한다.</p> <p>바. 경골 후과의 단독 골절 시 족관절 내과 또는 외과의 골절에 준용한다.</p> <p>사. 고관절이란 대퇴골두와 골반골의 비구를 포함하며, 골절 탈구란 골절과 동시에 관절의 탈구가 발생한 상태를 말한다.</p> <p>아. 불안정성 골반 골절은 골반환을 이루는 골간의 골절 탈구를 포함한다.</p> <p>자. 하지의 3대 관절이란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을 말한다.</p> <p>차. 슬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은 인대 복원수술을 시행하거나 완전 파열에 준하는 파열에 적용한다.</p> <p>카.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의 수술을 시행한 골절은 치골 골절로 수술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p>

(붙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

후유장애의 구분과 보험금 등의 한도금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관련)

장애 급별	한도 금액	신 체 장애 내 용
1급	1억 5천 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반신불수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2급	1억 3,500 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3급	1억 2천 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자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4급	1억 500 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전부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족근중족(Lisfranc)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장애 급별	한도 금액	신 체 장애 내 용
5급	9천 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6급	7,500 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대부분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손의 5개 손가락을 잃거나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급	6천 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 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발을 족근중족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0.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장애 급별	한도 금액	신 체 장애 내 용
7급	6천 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8급	4,500 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쪽 눈이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주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9급	3,800 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장애 급별	한도 금액	신 체 장애 내 용
9급	3,800 만원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0급	2,700 만원	1. 한쪽 눈이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듣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 6.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 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급	2,300 만원	1.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눈의 눈꺼풀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 7.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1.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12급	1,900 만원	1. 한쪽 눈의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장애 급별	한도 금액	신 체 장애 내 용
12급	1,900 만원	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귓바퀴가 대부분 결손된 사람 5.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이나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13급	1,500 만원	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쪽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이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3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급	1천 만원	1. 한쪽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있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3.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6.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장애 구분	한도 금액	신 체 장 애 내 용
14급	1천 만원	8.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주의사항(비고) ◆

- 신체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로 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은 지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제1지관절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 끝부분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중수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은 끝관절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끝관절 이상을 잃거나 중족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한 후에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등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 “항상보호 또는 수시보호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력상실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정한다.
- “제대로 못 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한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종사할 수 있는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경우
 - 나. 전간(癲癇) 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타각적(他覺的)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다. 사지에 경도(輕度)의 단마비(單痲痺)가 인정되는 사람

-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중등도(中等度)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중등도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한화 개인용자동차보험

법규 해설집

법규 해설집

약관에서 자동차보험과 관련하여 인용된 법규 조문입니다. 해당 법령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관련 법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법규는 법령명 내림차순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법령의 개정으로 조문이 변경된 경우 약관의 조문은 개정된 법령을 따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 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

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5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및 제24조제1항 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2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및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 및 제5항에 따른 최소한의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 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

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방법의 제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제①항 제2호

-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정의)

-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 5. "부양의무자"란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 6.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을 말한다.
- 7.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8. "소득인정액"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9.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이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

우 소득평가액은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소 등을 반영하여야 하고, 실제소득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소득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10.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의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재산범위·재산가액의 산정기준 및 소득환산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11.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5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검사 대상 기관) 제3호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名義改書代行會社)
-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 6. 「여성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성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성업자(兼營與信業者)
- 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 9.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 10. 그 밖에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51조(분쟁조정기구)

제38조 각 호의 기관, 예금자 등 금융 수요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 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3조(분쟁의 조정)

- ① 제38조 각 호의 기관, 예금자 등 금융 수요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금융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때에는 원장에게 분쟁의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관계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의권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에의 회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이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한 후 소송을 제기한 경우
 - 2. 신청한 내용이 분쟁조정 대상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3. 신청한 내용이 관련 법령 또는 객관적인 증빙(證憑) 등으로 비추어 볼 때 합의권고 절차 및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 원장은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이를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 ④ 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조정의 회부를 받으면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⑤ 원장은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면 신청인과 관계 당사자에게 이를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제55조(조정 효력)

당사자가 제53조제5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그 조정안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56조(조정 중지)

원장은 조정신청사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양쪽 당사자 모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제2호

2.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농업인: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나. 어업인: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염을 제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 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4조(사고발생시의 조치) 제1항

-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치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8조의2(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 ②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③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 1. 8촌 이내의 혈족
- 2. 4촌 이내의 인척
- 3. 배우자

제1000조(상속의 순위)

-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1조(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보험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 "전문보험계약자"란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보험계약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보험계약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보험회사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계약자는 일반보험계약자로 본다.

- 가. 국가
- 나. 한국은행
-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 라. 주권상장법인
-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사업장에서 발생된 근로자의 산업 재해 등 근로자의 업무 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된 법입니다.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0조(근로소득)

-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1항

-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대출, 보증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인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서면
 2.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意的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후 고지절차를 거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2항, 제4항

- ②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동의 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외한다)의 정보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 ④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유무선 통신을 통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고시하는 방법으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등록기준)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자동차 대수, 보유 차고 면적, 영업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이상운송 금지)

-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이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1.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2.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
- ② 제1항제2호의 이상운송 허가의 대상 및 기간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84조(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제2항

-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 등록, 증차 또는 대폐차(대폐차: 차령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령 등을 다른 차령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에 충당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하 "차령충당연한"이라 한다)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보유 차량으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범위에서 업종 변경을 위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대폐차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자동차보다 차령이 낮은 자동차로서 그 차령이 6년 이내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 충당하는 경우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도난으로 말소등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 다만, 차령을 초과한 자동차는 제외한다.

제103조(자가용자동차의 이상운송 등의 허가요건)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경우(제4호 및 제4호의2의 경우에는 이상운송으로 한정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수송력 공급의 증가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2. 사업용자동차 및 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 불가능하여 이를 일시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수송력 공급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3. 휴일이 연속되는 경우 등 수송수요가 수송력 공급을 크게 초과하여 일시적으로 수송력 공급의 증가가 필요한 경우
4. 학생의 등·하교나 그 밖의 교육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와 「고등교

- 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교에서 직접 소유하여 운영하는 2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일 것
-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의 통학버스일 것
- 다. 제103조의2에 따른 차령(처음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4의2.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의 통학이나 시설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이라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어린이집"이라 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이하 이 조에서 "학원"이라 한다)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이하 이 조에서 "체육시설"이라 한다)에서 직접 소유(공동소유를 포함한다)하여 운영하는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일 것. 다만,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로 출고되었으나 장애아동의 승·하차 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차량구조 변경이 승인된 차량의 경우에는 9인승 이하의 자동차를 포함한다.
- 나.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통학이나 시설이용에 이용되는 자동차일 것.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부설된 체육시설의 이용자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 다. 제103조의2에 따른 차령(처음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로서 장애인 등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합니다.) 시행령 제 3조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금을 담보하는 대인배상 1 및 자배법 시행령 제 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1사고당 2천만원의 보상한도 금액을 말하며, 이하 "대물의무보험금액"이라 합니다)을 담보하는 대물배상을 말합니다. 다만, 대물의무보험금액 이상을 담보하는 대물배상의 경우 대물의무보험금액 한도만을 말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옹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옹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1의 2. "원동기"란 자동차의 구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내연기관이나 전동기 등

동력발생장치를 말한다.

2. "운행"이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用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동차사용자"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4. "형식"이란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에 관한 형상, 규격 및 성능 등을 말한다.
- 4의 2. "내압용기"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용기로서 고압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장착하거나 장착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기(용기밸브와 용기안전장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폐차"란 자동차를 해체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파쇄(破碎) 또는 절단하거나 자동차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축·파쇄하는 것을 말한다.
6.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7. "자동차매매업"이란 자동차(신조차(新造車)와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8.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9.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란 폐차 요청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인수(引受),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0. "사고기록장치"란 자동차의 충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고 전후 일정한 시간 동안 자동차의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또는 기능을 말한다.
11. "자동차의 튜닝"이란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12. "표준정비시간"이란 자동차정비사업자 단체가 정하여 공개하고 사용하는 정비작업별 평균 정비시간을 말한다.

제8조(신규등록)

- ① 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규자동차등록(이하 "신규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신규등록 신청을 받으면 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라 한다)가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지체 없이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제1항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를 산 사람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운전자"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전을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책임보험"이란 자동차보유자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6. "책임공제(責任共濟)"란 사업용 자동차의 보유자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제사업자"라 한다)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공제를 말한다.
7. "자동차보험진료수가(診療酬價)"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고를 당한 자(이하 "교통사고환자"라 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적용되는 금액을 말한다.
 - 가. 보험회사(공제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의 보험금(공제금을 포함한다. 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으로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 나.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보상금으로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 다.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배상(제30조에 따른 보상을 포함한다)이 종결된 후 해당 교통사고로 발생한 치료비를 교통사고환자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8.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이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 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제3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피해를 보상하는 사업
 - 나.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 제30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을 지원하는 사업
 - 다. 자동차사고 피해자 가족 등 지원사업: 제30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가족을 지원하는 사업
 - 라.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재활지원사업: 제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는 사업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는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애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②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등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대여사업자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4.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대여업자
- ④ 제1항 및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 제1항의 책임보험등과 제2항 및 제3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는 각 자동차별로 가입하여야 한다.

제5조의2(보험 등의 가입 의무면제)

- ① 자동차보유자는 보유한 자동차(제5조제3항 각 호의 자가 면허 등을 받은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해의체류 등으로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자동차의 등록업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그 운행중지기간에 한하여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보유자는 해당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시·도지사에게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은 자는 면제기간 중에는 해당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승인 기준 및 신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보험금등의 청구)

- ① 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상법」 제724조제2항에 따라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보험가입자등은 보험회사등이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에게 보험금등의 보상한도에서 그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제2호, 제3호 및 제 10호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2.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 3.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 다. 전자서명이 있는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 라. 전자서명이 있는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 10. 공인인증기관이라 함은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를 말한다.

통계법

제3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통계”란 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업·물가·인구·주택·문화·환경 등 특정의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에 위임·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다만, 통계작성기관이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적 정보를 제외한다.
 - 2. “지정통계”란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고시하는 통계를 말한다.
 - 3. “통계작성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제15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을 말한다.
 - 4. “통계자료”란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5.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다.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종 학교
 - 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6. “통계조사자”란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의 작성 또는 보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7. “행정자료”란 통계자료를 제외한 것으로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대장 및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말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차량충당조건)

-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신규등록, 증차 또는 대폐차(대폐차: 차량이 만료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차량이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이내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차량충당조건을 달리 할 수 있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 등)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에 대한 품질·성능평가와 공장심사를 거쳐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다만, 품질인증을 할 때에 다른 법률에서 재제조 제품에 대한 품질기준 및 인증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로 정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설비와 재제조 제품을 구매하는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환경설비와 재제조 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성능평가와 공장심사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대행기관 또는 단체에 품질·성능평가 및 공장심사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용정보 제공 활용에 대한 고객권리 안내문

1. 금융서비스의 이용

고객의 신용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이용목적만으로 사용되며, 보험관련 금융서비스는 제후회사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제 3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활용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제휴·부가서비스, 신상품서비스 등은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화손해보험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님의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등에 따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고객 신용정보의 제공·활용 중단 신청

가. 고객은 가입신청 시 동의한 본인정보의 제 3자에 대한 제공 또는 당사의 보험·금융상품(서비스) 소개 등 영업목적 사용에 대하여 전체 또는 사안별로 제공·활용을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정보 인프라를 해하거나, 신용정보 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업무위탁회사 등에 대한 정보를 제한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업무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동의철회는 제한됩니다.

▶ 본인정보의 활용 제한중단을 원하시는 고객은 아래의 연락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1566-8000

홈페이지 <http://www.hwgeneralins.com>

※ 단, 신규거래고객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나. 위의 신청과 관련한 불분과 애로가 있으신 경우에는 당사의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인 또는 대한손해보험협회 및 금융감독원 정보보호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인

1566-8000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한화금융센터(여의도)
준법감시파트

대한손해보험협회
정보보호담당자

(02) 3702-8679
서울 중로구 수송동 80
코리안리 B/D 기획조사부

금융감독원
정보보호담당자

(02) 3145-5422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금융감독원
정보화전략실

3.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요구 및 오류정보 정정 요구

가.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에 따라 아래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동 권리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한화손해보험 홈페이지(www.hwgeneralins.com)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게시되어 있으며, 동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사 고객센터팀 및 지점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요구권(법 제35조)

고객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한 주요정보 내용 등을 통보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요구권(법 제38조)

고객은 신용정보업자 등이 보유하는 본인정보의 열람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이의 정정 요구 및 정정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금감위에 시정 요청 가능

나. 고객은 본인 신용정보를 신용평가회사(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 등)를 통하여 연간 일정범위 내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평가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한국신용정보(주) ☎ 02-2122-4000 인터넷 <http://www.nice.co.kr>
한국신용평가정보(주) ☎ 02-3771-1000 인터넷 <http://www.kisinfo.com>
서울신용평가정보(주) ☎ 02-3445-5000 인터넷 <http://www.sci.co.kr>
코리아크레딧뷰(주) ☎ 02-708-1000 인터넷 <http://www.koreacb.com>